

현안분석 2006-

스포츠 에이전트 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장 재 옥

스포츠 에이전트 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Introduction of Sports Agent System

연구자: 장재옥 (중앙대 법대 교수)
Chang, Jae-Ok

2006. 9. 30.

국문 요약

이 연구는 스포츠 산업 비전 2010(문화관광부 2005년 7월 발표) 계획 중 하나인 “프로 스포츠 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의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프로 스포츠 마케팅 능력의 제고를 위한 스포츠 에이전트 양성”의 제도적 구축을 위하여 수행하였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스포츠 산업’에 있어 스포츠 선수를 지원, 관리하여 스포츠 선수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스포츠 마케터로서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유도하여 질 좋은 경기를 진흥하는 등 스포츠 산업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도적 역량을 가진 자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스포츠 에이전트는 직업인으로서 활동하는 데에 있어 스포츠 자치법의 규제로 인한 한계와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의 독과점적 영업으로 인한 한계로 인하여 업무 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자격 제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 연구는 스포츠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전문 영역이 되어 가고 있으나 전문 직업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의 규제 완화와 직업으로서의 인정을 위하여 외국 관련 법제를 소개하여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한 뒤 제2장에서는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의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의 국내 연구현황과 위치,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 범위,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의 한계점을 정확히 짚어보기 위함이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현황을 검토한 후 국내의 스포츠 에이전트와 유사한 제도 및 선수 에이전트, 경기 에이전트와 관련한 미국의 법률, FIFA 규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 제정시 참고할 수 있는 점을 검토

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 제정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한 뒤 제5장에서 맺음말로 마무리하도록 구성하였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함께 선수와 경기를 보증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그 업무 범위의 확장은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비례하게 될 것이다. 향후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 제정 시 본 연구 내용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 키워드 : 스포츠에이전트, 선수에이전트, 스포츠산업, 스포츠법,

Abstract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the study of ensuring sports agents system for its operation effective and efficient to professional sports marketing. The project is based on the plan of “The Establishing Basement for Developing Pro-sports Biz,” which is one of the projects published by The Vision of the SPO-BIZ 2010(released from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July, 2005).

In sports business, sports agent means a person who is able to support and manage the field of athlete directly or indirectly. The purpose of the agent is to maximize the athlete's ability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sports inducing the interests of a company related to sports.

However, there are a lot of regulations for sports agent, especially in current domestic system. Activities in professional sports agent are limited by the regulations of sports autonomous law. Furthermore, the scope of service system is reduced by sports marketing company based upon a monopoly of business. As a result, the sports agent is not capable of attaining a professional recognition because they lack of establishing any certificated system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sports business, the area has become a field of more profession or specialization. Thus, in the article, the author mainly insists that it sh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or enact the law of sports agent. The activity can be possible if they introduce the legislation from other countries and understand the real recognition of the sports agent as a professional field that the society requires.

Part I in this article will set up the object of a research and the scope of a study plan. Part II describes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domestic sports agent, the scope of sports agent service, and the limitations of the domestic sports agent in order to inspect the present situation of domestic study. Part III focuses on existing domestic systems similar to sports agent, athlete agent, and match agent in America, as well as on the regulations of FIFA. Those are the guidance or the guidelines to establish the law of sports agent. Part IV summarizes the contents as a form of taking note on the law related sports agent. Finally, this article concludes with suggestions on how they can effectively make sports agent.

Sports agent as profession can give assurance to the players and games. The scope of the service can expand and develop in proportion to the sports business. The article is a guidance or a guideline for further steps in sports agents present as well as future.

※ Keyword : Sports Agent, Athlete Agent, Sports Industry, Sports Law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14
제 2 장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현황 개관	17
제 1 절 서 설	17
제 2 절 선행 연구의 현황	17
1. 학위논문	17
2. 학회지 논문	19
제 3 절 스포츠 에이전트의 의의와 업무	22
1. 스포츠 에이전트의 의의	22
2.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	27
제 4 절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의 한계	35
1. 국내 프로 스포츠의 역사와 스포츠 에이전트의 필요성	35
2.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비활성 원인	37
제 3 장 스포츠 에이전트 입법모델 연구	55
제 1 절 서 설	55

제 2 절 국내 에이전트 유사 제도 분석	57
1. 『중개사』 제도	57
2. 스포츠 경영관리사와 스포츠 마케터 제도	62
3. 검 토	70
제 3 절 미국과 FIFA의 선수 에이전트 제도	72
1. 미국 통일선수 에이전트 법	72
2. 캘리포니아 선수 에이전트 법	86
3.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	95
제 4 절 FIFA의 경기 에이전트 제도	102
1. FIFA 경기 에이전트 규정	102
2. 검 토	106
제 4 장 스포츠 에이전트 법의 제정방향	107
제 1 절 스포츠 에이전트 법의 의의	107
1. 스포츠 에이전트 법의 의의	107
2. 스포츠 에이전트 법의 목적과 효력	107
제 2 절 스포츠 에이전트 법 제정시의 주의점	108
1.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지위	108
2. 스포츠 에이전트 법 제정시 필수 포함 내용	110
3.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의 분류	111
4. 기타 고려하여야 할 사항	113
제 5 장 결 론	117

◆ 부 록 1 - [표] 차례	Ⅱ
◆ 부 록 2 미국 「통일 선수 에이전트 법」	123
◆ 부 록 3 캘리포니아 주 “스포츠 에이전트 법”	137
◆ 부 록 4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	153
◆ 부 록 5 FIFA “경기 에이전트 규정”	173
참 고 문 헌	18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스포츠 산업 비전 2010(문화관광부 2005년 7월 발표)’ 계획은 스포츠 산업을 21세기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으로 인정하고 그 핵심 추진과제로서 ① 스포츠산업 진흥 추진기반 구축, ②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 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 ③ 레저스포츠산업 기반 확대 ④ 프로 스포츠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의 4대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그 중 “프로스포츠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서 “프로 스포츠 마케팅 능력의 제고” 정책을 제시하고, 이는 □□스�포츠 에이전시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내 프로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스포츠 에이전시”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에이전트의 활성화는 프로 스포츠 산업의 발전만을 위한 과제는 아니다. 아마추어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역시 경기를 중개해 주고 부자격자들을 선별해주어 원활하게 경기가 진행될 수 있는 경기 에이전트의 역할도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스포츠 에이전트는 언제나 프로 스포츠 산업에서의 “선수 에이전트”의 역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경기 에이전트”의 역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제도 도입에 있어 국내의 그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법제화할 때 유념하여야 할 것들을 미리 살펴보는 기초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영역이 확보되고 스포츠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이들의 직업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에이전트가 스포츠 산업에 있어 그 막중한 역할, 예를 들어 선수의 권리 확보, 계약법적 질서 확립, 스포츠 산업의 성장 등을 해 나가려면 국가가 일정한 자격의 인정, 전문 영역을 확보하고 에이전트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여 스포츠 산업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¹⁾. 또한 국가는 전문 스포츠 인력을 분야별로 양성하여 고용 창출에 기여하여야 할 뿐 아니라 선진법제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절한 스포츠 법제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에 있어 스포츠 산업의 육성과 성장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은 물론 건강한 여가 실현과 복지증진, 스포츠 부문의 자생력 증대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 때 스포츠 관련 산업이 가져오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통하여서만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스포츠 에이전트의 창출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신규 직종의 생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는 그동안 ‘선수 에이전트’에 대한 영역의 업무만이 강조되어 왔다. 프로 스포츠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스포츠 선수의 대리인으로서 선수 에이전트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여 스포츠 선수가 그라운드 안에서는 자신의 경기에 몰두하여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밖에서는 선수의 복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선수의 지지자로서 프로 스포츠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선수 에이전트의 업무영역조차도) 한국 야구규약 제30조, 프로축구연맹 선수단관리규칙 제5조 등과 같은 스포츠 자치

1) 2005년 7월 발표된 스포츠 산업 비전 2010 제44면에서는 국내 프로스포츠의 전반적 시장 규모의 열악을 프로 스포츠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야구, 축구 등 프로 스포츠 매출액이 3,534억원, 지출 3,578억원(입장객 590만명으로 통계를 발표하였다. 좌석 점유율은 축구 25%(일본 70%), 야구 25%(미국 62%), 농구 61%(미국 87%)등 국내 프로스포츠 전반적 시장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법 분야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를 인정하지 않는 명시적 조문을 보유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실제 국내 프로 스포츠 산업에서 활동상의 계약을 받아왔다. 즉, 스포츠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야구규약 또는 축구선수단 관리규칙과 같은 경우, 구단과 선수가 직접 계약하는 “대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변호사”(야구) 또는 “변호사와 부모 형제”(축구)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전문 에이전트가 들어설 자리는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연봉대행계약의 이러한 계약뿐만 아니라, 선수 마케팅에 있어서도 선수 에이전트는 선수가치를 활용하여 이를 마케팅하는 인도스먼트 계약 교섭을 함에 있어 큰 계약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선수 마케팅의 대표적인 상품 광고 등과 같은 경우 선수 에이전트가 스폰서 기업과 직접적인 접촉과 계약을 통하여 체결되는 직접적인 계약방식 대신 선수는 규약상 스폰서 기업과의 접촉이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권리를 구단에게 양도하여 구단이 단체 스폰서를 받는 방식,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선수 에이전트가 참여할 부분이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단체 역시 관측 또는 마케팅을 통해 스폰서 기업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 광고회사가 직접 이를 선정하고 단체인 구단이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스폰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선수 에이전트의 인도스먼트 계약 체결의 활동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선수 에이전트 업무 외에 경기 에이전트의 활용도는 국내에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에 있어 에이전트의 업무는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국내에서 에이전트의 역할은 선수 에이전트 업무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선수 에이전트 업무중에서도 국내 선수의 해외 진출시 이를 미리 탐방하고 사전 조사하여 소개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범위에 있어 제한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일정한 전문 영역으로서 스포츠 에이전트의 활동범

위를 확대하여 스포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스포츠 에이전트가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제적 기반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활동범위를 제약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이를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공신력 있는 자격을 지닌 스포츠 에이전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 가지 범위 내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첫째,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의 활동범위를 제약하는 “스포츠 고유법” 분야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해서이다.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고유법”에 있어 스포츠 에이전트의 비활성에 기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스포츠 에이전트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스포츠 고유법”과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국가법”간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는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와 관련하여 유사한 다른 자격증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異名同役의 자격증이 남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스포츠경영관리사가 있고 이미 이 자격증 취득자가 나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적 자원과의 적절한 조화가 문제될 수 있다. 스포츠 경영관리사 외에도 ‘스포츠 비전 2010’은 스포츠 마케터

자격화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사 자격증과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증은 어떠한 관계에 있게 되는지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가 “중개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국내 중개 제도 중 대표적인 제도인 “공인 중개사”제도(등록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제도)와 “통신판매중개인” 제도(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대표적인 제도)를 함께 비교해 보며 스포츠 에이전트의 역할과 법적 성질을 검토하였다. 이는 스포츠 에이전트의 자격 제도가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스포츠 산업에 있어 적당한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스포츠 에이전트의 지위를 찾고자 함이다.

셋째,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제도에서 고려되어야 할 에이전트의 역할과 분류를 위하여 프로 스포츠 역사가 깊은 뿐 아니라 선수 에이전트라는 직업이 최초로 생겨난 미국의 선수 에이전트 법제를 입법 모델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즉, 미국 연방 통일 선수 에이전트법 (Uniform Athlete Agents Act, 2000)을 살펴보고 스포츠 에이전트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주법 (Miller-Ayala Athlete Agent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 18895, 2005)의 선수 에이전트법과 FIFA의 선수 에이전트 규정을 살펴보아 ‘선수 에이전트’ 자격 도입시에 고려해야 할 점 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포츠 에이전트에 있어 선수 에이전트만큼 중요한 위치로 부각되고 있는 경기 에이전트에 관한 법제와 관련하여 FIFA의 경기 에이전트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경기 에이전트’ 자격 도입시에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다.

위의 세 가지 범위 내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제” 도입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그 방향과 필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제2장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현황 개관

제1절 서설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현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스포츠 에이전트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 내용과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연구자와 실무자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2절에서는 우선 스포츠 에이전트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보고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주요 관심사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개괄적인 검토를 스포츠 에이전트와 관련되는 공통적 요소를 이끌어 내는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한 근거 자료로서 학위 논문과 학회지 논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며, 연구년도는 순차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다.

제3절에서는 선행 연구의 논문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스포츠 에이전트의 의의와 역할”을 살펴보고, 그 한계, 즉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중요한 요소인 “스포츠 고유법” 분야(야구, 축구, 농구의 순)에서 스포츠 에이전트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 연구의 현황

1. 학위논문

그동안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연구는 1999년 이후로 꾸준히 있어왔다. “스포츠 에이전트의 현황과 전망 (중앙대 교육대학원)”이란 제목으로 1999년 석사학위를 받은 한필수의 논문 이후로 2003년에 박용주의 “한국 프로 스포츠 에이전트활성화 방안 (한국체육대 대학원)”이

란 제목의 박사논문이 있었다.

그러나 15개의 학위논문이 대개 경영학, 또는 체육교육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때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제시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다만 2004년도의 장진수의 논문만이 야구계약의 문제점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적하였을 뿐이며 제도적 해결방안의 제시는 이 역시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 스포츠 에이전트 관련 학위논문

(2006.9. 국회보고 학위논문자료, 검색질의어:스포츠 에이전트, 선수 에이전트)

	저 자	논 문 명	학위	년도	대 학
1	한필수	스포츠 에이전트의 현황과 전망	석사	1999	중앙대 교육대학원
2	박찬혁	선수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선수에이전트 활용방안	석사	2000	고려대 대학원
3	김호준	선수에이전트사업과 기업홍보에 관한 연구	석사	2000	한양대 교육대학원
4	이석용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에이전트에 대한 인식과 선수마케팅 전략 : 축구, 야구, 농구 선수를 중심으로	석사	2001	고려대 교육대학원
5	김정훈	스포츠 에이전트 인식과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	석사	2002	부산대 대학원
6	김세웅	국내 프로 스포츠시장의 선수 에이전트 제도에 관한 고찰	석사	2002	경희대 체육대학원
7	박용주	한국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	박사	2003	한국체육대 대학원
8	박남희	스포츠 에이전트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2003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9	김남현	골프선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스폰서십 활용방안	석사	2003	관동대 교육대학원
10	최환석	프로축구 선수들의 에이전트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방안	석사	2003	계명대 대학원

	저 자	논 문 명	학위	년도	대 학
11	이재현	프로야구선수들의 선수에이전트에 관한 인식조사연구	석사	2003	국민대 스포츠산업 대학원
12	김현식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선수 에이전트 활용방안	석사	2004	건국대 교육대학원
13	전미양	스포츠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석사	2004	경희대 체육대학원
14	김은영	프로축구선수세분집단에 따른 에이전트관련기대가 에이전트고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	2004	한국체육대 사회체육대학원
15	장진수	전속계약에 관한 연구: 프로야구 선수계약을 중심으로	석사	2004	연세대 대학원

2. 학회지 논문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학회의 연구는 학위 논문보다는 1년 앞서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제도적 연구로는 미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12월 17일 “스포츠 법학회2)”의 창립으로 인하여 스포츠에 있어서도 제도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중 에이전트와 관련하여서는 2편의 주목할 만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먼저 김동훈의 “스포츠 에이전트계약의 법적 고찰”(스포츠와 법 2권에 수록)의 경우 에이전트 계약의 기초 법리 뿐 아니라 에이전트 계약시 쟁점이 될 만한 세부 내용을 매우 상세히 검토하고 있고 여러 분쟁 유형 등이 수록되어 에이전트 계약에 대한 논리적 구성을 체계화하였다. 이는 민사법의 관점에서 검토되어 계약적 고찰로서 그 범위가 한정되었으며 에이전트 자격에 대한 법제적 논의는 끌어내지 못하였다.

2) (구)한국스포츠법학회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로 확장되었으나 학회지명은 그대로 “스포츠와 법”을 유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asel.or.kr>

이후 이러한 연구에 고무되어 김용섭의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과제”(스포츠와 법 6권에 수록)에 와서야 “스포츠 에이전트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선수를 대리하여 정당한 계약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하는 스포츠 에이전트의 사회적 역할의 인식과 함께 에이전트의 기본요건으로 “법적 지식”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노영태/박병주가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발표한 “스포츠 에이전트 인식과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2002)를 통한 결론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김용섭의 논문은 김동훈의 논문에서 논의하는 계약적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데에서 나아가 미국의 에이전트 자격을 논의하고 이를 소개하면서 법제적 구축을 촉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미국의 에이전트 자격을 소개하면서 “선수 한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라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에이전트 자격이 가능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³⁾. 그밖에도 김용섭의 논문에는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화의 당연성과 법제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하겠다.

[표 2] 스포츠 에이전트 관련 학회지 논문

(2006.9. 인터넷데이터베이스, 검색질의어: 스포츠 에이전트, 선수 에이전트)

	저자명	제 목	수록지명	발행자	연도
1	최재원, 김중	스포츠 에이전트와 인도스먼트 유형 및 현황 연구	스포츠사회학회지10권	한국 스포츠사회학회	1998
2	김 중	한국 스포츠마케팅 현황과 발전과제	체육과학연구 40호	국민체육진흥공단	1999

3) 김용섭,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과제, 스포츠와 법 6권(한국스포츠법학회, 2005), 413면.

	저자명	제 목	수록지명	발행자	연도
3	김동훈	스포츠 에이전트계약의 법적 고찰	스포츠와 법 2권	한국스포츠법학회	2001
4	김동훈	스포츠 에이전트계약의 법적 고찰	정보와 법 연구 3권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2001
5	노영태 박병주	스포츠 에이전트 인식과 역할 기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8호 상권	한국사회체육학회	2002
6	이석인 박미정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체육연구 제17집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2002
7	장영철 변현명	새로운 달러 박스... 축구선수를 수출하는 사람들 : 월드컵 개최 이후 스포츠 에이전트 시장 '급팽창'	이코노미스트 통권674호	중앙일보 J&P	2003
8	이정학	스포츠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골프경영과정정보 통권 제22호	GMI골프디자인	2004
9	이정학 전미양 이재돈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구 한국스포츠행정경영학회) 2004	2004
10	김인재 이재현	프로야구선수들의 선수에이전트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구 한국스포츠행정경영학회)	2004
11	김용섭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과제	스포츠와 법 6권	한국스포츠법학회	2005
12	김수진 김은영	프로축구 선수의 에이전트관련 기대와 에이전트 고용의도의 관계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구 한국스포츠행정경영학회)	2005
13	한필수 이석인	스포츠 에이전트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고찰-프로농구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리서치	한국스포츠리서치	2005
14	한필수	미국의 스포츠 에이전트의 산업 현황	코칭능력개발지 7권 1호	한국코칭능력개발원	2005
15	김세용	국내 프로야구의 에이전트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한국스포츠리서치	2006

제 3 절 스포츠 에이전트의 의의와 업무

1. 스포츠 에이전트의 의의

(1) 스포츠 에이전트의 정의

에이전트(Agent)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업무나 교섭을 대행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프로 스포츠가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끌면서부터 그들 중에서 뛰어난 스타가 탄생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스포츠 선수는 이제 단순히 운동만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 때 스포츠 선수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스포츠 선수를 대신하여 스포츠 선수의 업무나 교섭을 대행할 자가 요구되었는데 이것이 스포츠 영역에 있어 에이전트, 스포츠 에이전트인 것이다.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개념의 인식은 미국의 아마추어 리그들이 프로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 관계를 대행해주는 일을 맡았던 사람에게 의해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스포츠 에이전트로 일컬어지는 찰스 파일(Charles C. Pyle)은 1900년대 초기부터 에이전트 활동을 하였으며, 당시 풋볼계의 전설적 스타였던 해롤드 그랜지(Harold Grange)와 1919년부터 1923년까지 워블던 대회 단식 챔피언이었던 수잔 령글렌(Suzanne Lenglen) 등의 에이전트를 맡았었다. 그 후 1960년대 Bob Woolf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투수인 Earl Wilson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문을 해주다가 윌슨의 야구선수계약의 협상을 대행하면서 근대 에이전트의 시조로 불리고 있으며, IMG(International Management Group)⁴⁾의

4) IMG는 스포츠 스타는 물론이고 배우, 텔런트, 음악인까지 관리하며 25개국 60개 지사에 연간 매출액 1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마케팅회사로 성장하였으며, 최근 (2004. 10. 1) 뉴욕의 투자기업 포스트 맨 리틀에 인수되었다.

창업자 마크 매코맥(Mark McComack)은 기업의 차원으로 조직화된 기업형 에이전시 산업을 이끈 것으로 유명하다.⁵⁾

그러므로 스포츠 에이전트란 스포츠 영역에 있어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 프로 스포츠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신하여 연봉 협상, 광고 출연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오늘날은 더 나아가 선수의 훈련프로그램이나 의료혜택, 법률 서비스 등일 지원하고 선수의 재산관리, 팬과의 교류, 주거의 알선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수가 은퇴한 뒤에 대비책을 마련해 주는 등 포괄적인 개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⁶⁾로 정의되는 선수 에이전트로서의 역할만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프로 스포츠 영역에서 에이전트의 역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즉, 프로 스포츠에 있어서 스포츠를 하면서 스포츠 이외에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쓸 수 없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복잡한 연봉협상은 물론 시간 관리, 광고 출연 등 여러 가지 일을 대신해 줌으로써 매우 능률적으로 경기에 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의 복리 차원에 있어서도 스포츠 에이전트의 사회적 역할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므로 스포츠 에이전트의 역할은 선수 에이전트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 영역에 있어 경기를 가운데에서 주선하고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경기 에이전트도 아마추어 스포츠 영역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에이전트가 곧 선수 에이전트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스포츠 영역에서 대리권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 모두를 일컬어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5) Michael E. Jones, 『Sports Law』, Prentice Hall, 1999, p.80 참조; 한필수, 미국의 스포츠에이전트의 산업현황, 코칭능력개발지, 제7권, 제1호 (2005), 133면 참조.

6) 김동훈, 스포츠에이전트계약의 법적고찰, 스포츠와 법 제2권 (한국스포츠법학회, 2001), 452면

(2)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정의

그러나 스포츠 에이전트는 현재 선수 에이전트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는 “선수 에이전트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리계약, 인도스먼트 계약⁷⁾, 금융서비스 계약, 또는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선수를 모집하거나 권유하는 자 또는 어떤 자의 구직을 위하여 프로 스포츠 팀 또는 단체와의 사이에 스포츠 선수로서 보수(급료)에 대한 주선, 신청, 약속, 시도, 또는 교섭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8895조의 2(b)(1)). 그리고 이때의 선수 에이전트에는 통상의 사전적 개념으로 에이전트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상인, 금융 입안자, 보험 에이전트, 부동산 브로커, 판매 에이전트 또는 세무사, 그 밖의 전문직의 자격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의미는 아님을 밝히고 있다(동법 제18895조의 2(b)(2)(A)).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Player's Agents Regulation, Spielervermittler Reglement)에서도 에이전트에 대한 규정을 두어 “선수 에이전트란 다음 규정과의 합치하에 규칙적으로 그리고 보상하에 선수가 어떤 클럽과 노동 계약관계를 맺도록 하거나 두 개의 클럽이 선수 이적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연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동규정 제1조 제1항 제3문) 용어상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인다.

요컨대, 선수 에이전트 또는 스포츠 에이전트란 “선수를 대신하여 연봉 협상, 광고 출연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인데, 오늘날은 더 나아가 선수의 훈련프로그램이나 의료 혜택,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선수의 재산관리, 팬과의 교류, 주거의 알선뿐만 아니라 심지어

7)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 제18895조의 2(c)는 “인도스먼트 계약은 경기 기량 또는 성취로 인한 퍼블리시티, 평판, 명성 등의 획득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어떠한 가치 또는 유용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고용에 대한 계약 또는 합의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선수가 은퇴한 뒤에 대비책을 마련해 주는 등 포괄적인 개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다.⁸⁾ 그러나 FIFA의 에이전트 규정을 살펴보면 스포츠 에이전트와 선수 에이전트를 혼용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스포츠 에이전트에 있어 선수 에이전트와 경기 에이전트를 나누고 그 용어를 각각 분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 영역은 선수 에이전트, 경기 에이전트의 업무 외에도 다양할 수가 있다.

미국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를 선수 에이전트와 혼용하여 규정하는 것은 미국 프로 스포츠 산업에 있어 스포츠 에이전트의 역할이 선수 에이전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스포츠 에이전트를 반드시 선수 에이전트의 범주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 에이전트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스포츠 선수를 대신하여 스포츠 선수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각종 계약, 에이전트 계약, 인도스먼트 계약, 파이낸셜 서비스 계약 등 스포츠영역에서 있는 모든 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요청하여 이를 성사시키는 등의 업무를 통하여 보수를 얻는 자”로서 정의함이 적절하다. 그리고 선수 에이전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수를 어떤 단체에 규칙적으로 또는 일정 보수 아래 노동 계약 관례를 체결하게 하거나 단체와 단체간의 경기를 알선하고 교섭하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자연인”으로 정의하여 이해하면 될 것이다.

(3)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

에이전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매니저(manager)가 있다.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예능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알려져 있는데, 관례는 이러한 매니저를 “연주활동의 주선이나 연주에 관하여 공연장

8) 김동훈, 스포츠에이전트계약의 법적고찰, 스포츠와 법 제2권 (한국스포츠법학회, 2001), 452면

확보, 공연 비용 또는 출연료 결정, 연주 일정의 확정 등에 관한 대리권이 있을 뿐이지 공연 계약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⁹⁾ 그러나 현재의 매니저는 거래의 성사여부를 떠나 선수들의 재산 관리라든가 일정을 관리하는 활동 전반을 하고 있다. 즉 스포츠 에이전트는 스포츠 영역에서 존재하는 용어이고 매니저는 연예 영역에서 존재한다고 분류하지 않는 이상 사실적 기능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¹⁰⁾ 특히 스포츠 에이전트 중 선수 에이전트의 업무 내용의 대다수가 매니저 일이라는 점을 미루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매니저 외에 스포츠 에이전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브로커(broker)도 있다. 브로커는 일정한 거래를 중개하고 쌍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중개자이다. 브로커가 스포츠 에이전트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은 브로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선수와의 관계가 보통은 1회에만 그친다고 한다면 스포츠 에이전트는 지속적으로 선수를 관리하고 선수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수 연봉 협상이나 이적협상을 주로 다루는 FIFA 에이전트가 그러하듯이 이 역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업무나 교섭을 대행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계약의 성사와 수수료가 반대 급부에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기능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¹¹⁾. 우리나라의 경우 브로커에 대해 등록과 규제는 부동산중개업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이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의 제한 및 업무 범위가 명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9)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618, 4625 판결

10) Kretschmer/Karakaya, Der Sportler und sein Manager: Eine sittendridrige Rechtsbeziehung? SpuRt, 2/2004, S. 45; Urs Scherrer(Hrsg.), Sportlervermittlung und Sportlermanagement, 2. Aufl., 2003, S. 24; 김용섭,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과제”, 스포츠와 법 제 6권(2005), 411면.

11) 에이전트에 관한 FIFA규정의 영문표기는 Player's Agents Regulation인데 반하여 독일어 표기는 중개자 규정을 뜻하는 Spielervermittler-Reglement로 되어 있다.

2.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

(1) 선수 에이전트의 업무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 중 선수 에이전트의 업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주요 업무인 연봉계약 대행 서비스, 인도스먼트 계약 대행 서비스, 자문 서비스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연봉 계약 대행 서비스

스포츠 에이전트가 선수를 대신하여 하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리그(League)를 선택하여 선수의 기량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단체와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다. 즉, 연봉 계약 대행 서비스는 연봉, 계약금, 성과급 보너스, 출전료 등 선수가 스포츠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는 재화에 대해 사전 조사하여 선수에게 이를 소개하고 선수의 이익을 대신하여 협상을 대신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참가하여 이를 검토하는 전반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 때 선수가 직접 이에 대한 사전 조사와 협상, 계약 체결을 할 경우 선수는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상대방은 선수를 낮게 평가하여 원만한 계약 체결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선수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평가받고 이에 대해 재화로 변환하기 위한 사전 조사와 협상, 부주의한 계약체결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포츠 에이전트는 선수의 이익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협상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인도스먼트 계약 서비스

방송매체의 발달 등으로 프로 스포츠가 상업적으로 성공함에 따라 선수는 경기 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즉, 방송매체의 등

장으로 스포츠 활동과 이에 참여하는 운동 선수들의 인기가 상승하자 광고와 기타 관련 상업적 활동들이 스포츠 산업으로 전이되어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프로 선수들도 연봉 계약 외에 가수나 배우 등의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미디어에 편승하여 다양한 상업적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제 선수들은 프로 스포츠 선수로써의 계약금이나 연봉이라는 보상 체계와는 별도로 자신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이에 대한 금전적 수입과 명예를 높이길 원하게 된 것이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선수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라면 첫째는 슬럼프나 부상 없이 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최고의 기량을 내는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선수생활을 하는 동안 되도록 많은 수입을 올리며, 이미지 관리를 통하여 명예를 획득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개인 경기뿐만 아니라 단체 경기를 하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단체가(구단이) 언제나 한 선수만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선수 개인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에이전트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가 발달하고 선수들의 인지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경기 내·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수를 대리할 수 있는 전문 에이전트의 출현은 필연적이며 이는 선수들의 상업적 이익을 확대하여 선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스포츠 산업의 원동력이 되게 할 것이다.

사실 인도스먼트(endorsement) 계약과 선수 스폰서십(sponsorship) 계약을 분리하여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인도스먼트 계약은 스폰서십 계약의 한 부분으로서 기업이 선수에게 일정한 금부를 제공하고 선수는 기업의 광고, 홍보 등 기업의 이익 촉진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인 인도스먼트 계약은 제품광고나 기업홍보를 목적으로 운동 선수 개인에게 용품을 지원하거나 성과에 따른 상금의 지급을 약속하

게 된다.

반면 스폰서 계약은 후원 계약으로서 기업과 선수간에 이루어지는 인도스먼트 계약의 범위보다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과 선수 뿐만 아니라 팀과 기업, 경기주최자와 기업 등 스폰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당사자는 선수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도스먼트 계약은 광고모델로 자주 등장하는 텔런트나 영화배우에게는 없는 운동선수만의 독특한 매력을 높이 사는 기업들과 스포츠 선수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의 활성화는 스포츠 선수로 하여금 자신의 상업적 가치가 높아지도록 경기 기량과 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하므로 스포츠 산업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선수는 찬조 출연, 암시형, 공개형, 명령형 등¹²⁾의 기업 마케팅 방식에 부응함으로써 기업의 후원에 보답한다. 기업은 운동선수 특유의 신뢰감과 순수성에 대가를 지불하고 위의 네 가지 방식을 요구하는데 위험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수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계약 선수가 음주 운전이나 폭력 사고로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거나 세련되지 못한 말투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와 같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지적인 자질을 갖춘 선수만 고르거나 그런 위험이 아예 없는 여성선수를 선호하는 기업도 있다¹³⁾. 선수 에이전트는 선수의 이러한 부가 가치를 설명하고 기업에게 접근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데에 대한 협상 및 계약체결에 이르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도스먼트 계약 대행 서비스인 것이다.

12) 기업이 개최하는 행사에 얼굴을 비치는 방식으로 ‘내가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방식이 찬조출연, 암시형이라면 공개형과 명령형은 ‘이 제품을 추천한다’거나 ‘이 제품을 꼭 사용하십시오’라고 보다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다.

13) 인도스먼트로 재미를 본 대표적인 기업인 나이키는 가능성만 보고 타이거우즈가 프로에 데뷔할 때 5년간 4,0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1997년 나이키의 골프관련 매출은 전년대비 105%가 증가한 1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

기업은 인도스먼트 계약의 성사로 기업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면 높은 광고, 홍보, 이미지 향상 등의 이익이 생겨날 수도 있으나 위험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약 체결의 당위성을 가지고 싶어한다. 그러나 선수의 스포츠 경기능력에 대한 증명만으로는 이러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부족하고 전문적으로 마케팅 해줄 수 있는 수완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계약한 유명 선수가 부상이나 부진 그리고 예기치 못할 사고를 당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스포츠 에이전트가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수 자신이 나서는 것보다 신뢰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경기 외의 활동이 늘어나고 선수와 기업의 인도스먼트 계약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선수들의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량이나 이미지 등의 상품성을 부각시켜 기업과 계약을 교섭하고 체결하여 주는 선수 에이전트의 역할은 나날이 중대해 지고 있다. 선수 에이전트의 주된 업무인 연봉 계약 대행 서비스만큼 인도스먼트 계약 대행 서비스의 업무도 선수 에이전트의 업무 내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3) 자문 서비스

스포츠 선수가 스포츠 활동에 전념하게 되면 실제 자신의 수입을 노년을 위해 투자하고 세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운동과 병행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선수가 문제 있을 때마다 별도의 전문가를 찾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스포츠 선수의 입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히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선수에게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문 서비스 역시 선수 에이전트의 주된 업무로 떠오르고 있다. 즉, 선수 에이전트는 자신의 고객인 선수가 리그나 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

거나 규약 및 규칙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항변하며 소송을 의뢰할 수 있어야 하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면 선수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 자문 외에 선수의 기량 향상과 건강 등을 위한 자문, 예를 들어 체력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훈련 일정 및 여행의 관리, 의료 및 건강관리에 대한 자문, 각종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자문 서비스 역시 선수 에이전트의 업무의 내용 중 나날이 중대한 영역을 차지해 가고 있으며 에이전트의 역량에 있어 우열이 판가름되는 중요한 업무영역이라고 하겠다.

(2) 경기 에이전트의 업무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 중 경기 에이전트의 업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주요 업무인 출전계약 대행 서비스, 스폰서 계약 대행 서비스, 자문 서비스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출전계약 대행 서비스

프로 스포츠의 영역 외에 스포츠 참가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아마추어 스포츠, 특히 생활 체육인들 간에 자신들의 경기 기량을 향상하고 여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아마추어 경기도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각 아마추어 팀간에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고 이에 대해 적정한 출전금이 배당될 수 있도록 경기에 출전하는 계약을 대행해줄 수 있는 에이전트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 에이전트이다. FIFA 경기 에이전트 제1조에서는 이러한 경기 에이전트에 대해 경기를 조율하는 서비스를 하는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지역의 축구팀과 B 지역의 축구팀이 기량을 겨루기 위하여 경기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A 지역 팀의 구성원과 B 지역 팀의 구성원이 균등한 기량을 가진 팀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것은 구성원의 참가적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인데 만일 A 지역 팀의 구성원은 이전 프로 스포츠 축구팀의 출신이 대다수이고 B 지역 팀의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기에서 경기 구성원들이 원활한 경기를 수행하기는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만일 B 지역의 축구팀이 A 지역의 축구팀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한 지도 축구 경기였다면 이 경기는 성사될 것이지만 A 지역의 축구팀의 구성원들이 이전에 프로 스포츠 축구팀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인 경우도 있게 된다. 이를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중개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경기 에이전트의 주요 업무인 출전계약을 교섭하고 체결하는 업무의 대행 서비스라고 할 것이다.

현재 아마추어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어 생활 체육과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서 생활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방체육, 직장체육, 여가체육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생활 체육의 활성화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스포츠 정책의 단면으로 볼 때 아마추어 스포츠의 지역 리그 및 체전 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기량을 키워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전 계약은 아마추어 스포츠에 있어서 경기 참가자가 경기 주최자에게 일정한 참가비를 내고 선수로 등록하여 스포츠 규칙에 따라 경기에 참가하고 경기 주최자는 참가비(출전비)를 받고 참가자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를 관리, 감독한다. 그런데 이때에도 일정한 출전비를 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리그의 최종 승자가 상금을 가져가는 데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

부자격자의 기준에 대한 합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검증해 내는 중개인의 부족으로 경기 에이전트의 필요성이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2) 스폰서 계약 대행 서비스

경기 에이전트는 자신이 책임지게 된 해당 경기에 대해 스폰서 계약을 교섭하고 이를 체결하는 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즉, 경기 참가자가 소모하는 소모품뿐만 아니라 출전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정적 부분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폰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프로 스포츠에서 흔히 체결하는 인도스먼트 계약으로 선수를 통한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일 외에도 아마추어 스포츠의 경기에 있어 스폰서가 되어 자기 기업의 용품을 직접 스포츠 경기에 활용하게 하거나 관람 스포츠 인구에게 광고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기 에이전트의 스폰서 계약 대행 업무는 나날이 그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3) 자문 서비스

경기 에이전트는 경기를 하고자 하는 자 간의 경기 계약, 즉 출전 계약을 성사시키고 출전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 스폰서 계약을 대행하는 업무 외에도 경기가 원활히 성사될 수 있도록 경기 이전에서부터 경기 이후까지의 전반적인 자문 서비스 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경기 참가자와 경기 관람자가 안전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기장에 시설자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이 들어있는지 여부, 경기 관람자의 건강 및 위생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경기의 원활한 진행이 불가피하게 어려워진 경우에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중재 서비스 등에 대해 노하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3) 소 결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는 스포츠 영역에 있어 대리인으로서 교섭 및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자연인의 업무로서 그 내용이 다양하겠지만 현재 자주 사용되고 있는 영역은 선수 에이전트와 경기 에이전트의 업무 영역 정도이다. 프로 스포츠의 보는 스포츠의 만족을 넘어서 아마추어 스포츠의 하는 스포츠의 만족을 위하여 스포츠 에이전트는 스포츠 영역에서의 그 역할이 나날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프로 스포츠에 있어서 선수 에이전트는 이제 불가피한 필수적 내용으로서 보다 많은 연봉과 대우를 받고자 하는 선수들에게 전문적인 협상능력을 지닌 에이전트가 선수를 스포츠에만 전념하게 하여 기량을 향상하고 양질의 스포츠 경기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선수들의 소득수준의 급속한 성장으로 세무 조언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구단과의 중재, 소송 등의 법률적인 문제들은 선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여 선수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상황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1976년 미국 하원에서 열린 프로스포츠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위원회는 “선수 에이전트는 스포츠계의 노사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에이전트를 통해 협상을 진행함은 물론 법률이나 재정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한바 있다. 그밖에 아마추어 스포츠 영역에서도 스포츠 참가인구가 급증하고 생활체육에 있어 기량을 겨루어보고자 하는 자가 늘어남으로써 경기를 중재하고 이에 대한 관련 계약을 전문적으로 체결하고 자문하는 경기 에이전트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스포츠 영역에 있어 스포츠 에이전트는 그 업무의 영역이 증가되고 역할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제 4 절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의 한계

1. 국내 프로 스포츠의 역사와 스포츠 에이전트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가 선수 에이전트의 업무로 인식될 정도로 스포츠 에이전트는 선수 에이전트의 업무가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프로 스포츠 영역에 있어 선수 에이전트는 선수의 대리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과 실업팀을 중심으로 한 아마추어 스포츠가 스포츠의 주축이 되어 왔으나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관람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프로 스포츠는 점차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후반 프로 레슬링 연맹이 창설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82년 프로야구, 1983년 프로축구와 프로 씨름이 출범하면서 프로 스포츠에 있어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1997년 프로농구가 창설되었고 1997년 이후 야구, 축구, 농구를 중심으로 한 프로 스포츠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프로 스포츠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권익 등 선수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미비하였다. 다만 2000년 1월 프로야구에 있어서만 프로야구 선수협의회가 발족하여 긴 투쟁 끝에 선수들의 권익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 프로야구 선수 협의회 의 파동 일지

일 시	경 과 내 용
2000년 1월 22일	송진우 회장 등 발기인 75명 선수협 창립총회
2000년 2월 17일	선수협, 구단대표와 첫 면담, 제도개선위 구성 제안
2000년 3월 10일	선수협-KBO-문화부 3자 회동서 각구단 대표로 집행부 구성하되 시즌 종료후 결성에 합의
2000년 3월 12일	선수협, 제도개선위 참여 선언

제 2 장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현황 개관

일 시	경 과 내 용
2000년 3월 15일	선수협 가입 선수 전원 팀 복귀
2000년 4월 3일	프로야구 제도개선위, 자문기구로 공식 출범
2000년 7월 24일	선수협, KBO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2000년 12월 15일	8개구단 주장회의 선수협 구성안 논의, 총회참석 선수자율에 맡겨
2000년 12월 18일	올림픽파크텔서 선수 23명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개최 송진우 회장 등 새 집행부 구성
2000년 12월 20일	각구단, 송진우 등 선수협 주동자 6명 방출 선언
2000년 12월 21일	LG 선수 38명 가입
2000년 12월 22일	해태 15명, SK 31명 가입
2000년 12월 23일	롯데 27명, 한화 40명 가입
2000년 12월 24일	두산 30명 가입
2000년 12월 26일	8개구단 사장단, 긴급 이사회서 선수협 활동 계속시 야구활동 중지선언. 선수협, 1박2일 워크숍
2000년 12월 27일	선수협, 방출철회 없을 경우 1월말까지 모든 단체훈련 거부 선언.단 장단, 선수협 집행부 사퇴 않을 시 구단업무 중단 선언
2001년 1월 4일	삼성 이승엽, 선수협 가입
2001년 1월 13일	김한길 문화부장관 중재의사 표명
2001년 1월 16일	선수협 실체인정, 주동선수 방출철회 등 조건부로 사단법인화 유보가능 공식선언
2001년 1월 19일	문화부 이홍석 차관보 양측 중재안 마련
2001년 1월 20일	문화부 중재로 선수협, 사장단 방출 철회 및 불이익 방지, 선수협 새 집행부 구성, 사무국 운영 새집행부에 일임 등 합의안 서명

그러나 프로야구를 제외하고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 선수 노조는 현재 없는 실정이며 선수 개개인이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위해 교섭활동을 하는 업무를 스포츠 에이전트가 하고 있다. 오히려 스포츠 에이전트의 활성화로 구단이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어렵게 되자 구단 경영자의 이익을 대신하는 커미셔너¹⁴⁾ 제도가 생겨나

14) 프로야구에서 품위와 질서유지를 위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관리자로서

스포츠 산업에 있어 양자 균형을 유지하려고까지 한다.

한편 국내 프로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는 스포츠 에이전트의 역할은 미미하기 때문에 노동자인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다.

2.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비활성 원인

최근 들어 국내에도 스포츠 에이전트가 스타급 선수들의 대리인, 카운슬러 등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표3]과 같은 선수 협의회 파동 당시 선수 측의 주요 요구 중 하나였던 스포츠 에이전트의 인정도 당시 KBO(한국야구위원회)와 구단주들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다만 2001년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 선수 자신만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있는 대리인도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약의 일부 내용이 2002년 야구규약부터는 변경되었다. 또한 프로축구는 FIFA의 에이전트 규정을 용인하여 축구 선수의 이적을 중개하는 대리인으로서 스포츠 에이전트를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프로 농구 역시 일정한 등록을 거치면 스포츠 에이전트로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경기 에이전트에 관한 스포츠 고유법이 별로 없는 국내 실정을 감안, 선수 에이전트의 비활성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봉 계약 대행 서비스 업무의 제한

1) 프로 야구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82년 프로야구의 출범과 함께 발족하여 프로 야구선수들은 모두 한국야구위원회의 자치법규를 제정

초대 커미셔너로 취임한 K.렌디스 판사는 매수에 관련된 선수들을 야구계에서 추방하고 야구계의 정화를 이룩하였다. 한국의 경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해당되며, 한국시리즈·올스타전·선수의 부정이나 비행을 관리한다.

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국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 올스타제전,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를 주최하며, 야구경기기록 및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분석·연구한다. 또 아마추어 야구의 발전을 위한 제반활동을 지원하는 일도 수행하지 않는바는 아니지만 프로 야구에 관한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2006년 현재 한국야구위원회에 소속된 구단은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SK 와이번스,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한화 이글스, 기아 타이거즈, 현대 유니콘스 8개의 구단이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서 8개 구단을 회원으로 두고 야구 규약, 야구선수계약서, 감독 및 코치계약서, 외국인 선수 고용, 야구규칙위원회 규정, 상벌위원회 규정, 야구공 공인규정, 야구배트 공인규정, KBO 연금규정, 프로 아마 협정서뿐만 아니라 한 미 선수계약협정, 한 일 선수계약협정, 한 대만 선수계약협정 등 야구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정관 제4조).

그런데 2006야구규약 제30조 “대면계약¹⁵⁾” 이하를 살펴보면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구단과 해당선수가 직접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수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하여야 하며, 변호사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계약협약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 선수계약에 관여하는 변호사는 2명 이상의 선수를 위하여 선수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 선수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변호사인 선수 에이전트만을 대리인으로 계약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이전에는 변호사조차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선수협의회 파동 당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15) 대면계약이란 구단의 임원이나 구단직원이 선수와 직접 대면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선수의 대리인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심결¹⁶⁾을 통해 변경을 강제하여 이로 인해 개정된 규칙이다.¹⁷⁾ 즉, 구단과 선수 사이의 계약체결에 있어 구단 임원 또는 피심인 사무처에 등록된 구단 직원과 선수가 직접 대면해서 하도록 규정 (야구 계약 제30조) 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 교섭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야구계약 제30조는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단임원 또는 위원회 사무처에 등록된 구단직원과 선수가 대면해서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구단과 선수가 대면계약 이외의 절차와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실제로 위 규정을 근거로 구단과 야구 위원회는 선수에게 대리권을 수여 받은 변호사를 포함하여 모든 대리인의 계약 교섭 및 체결을 제한하여 선수는 단체와 언제나 대면하여 계약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적 자치의 범위를 상당 부분 제한해 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프로 축구의 경우

프로 축구의 경우 11개 구단, 부천 SK F.C (SK주식회사), 울산 현대 호랑이 (현대중공업), 수원 삼성 블루윙스 (삼성전자), 성남 일화 천마 (통일스포츠), 부산 아이kons (부산 아이kons), 안양 LG치타스 (LG 스포츠), 전북 현대 모터스 (현대자동차), 전남 드래곤즈 (전남드래곤즈 프로 축구단), 포항스틸러스 (포항프로축구), 대전 시티즌 (대전프로축구), 대구 F.C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이 ‘한국 프로 축구 연맹(The Korean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KPFL)¹⁸⁾의 관할 아래 있다. 한국 프로 축구

16) 공정위 2001. 3. 9. 의결 제2001-30호 200단체1406

17) 그러나 개정된 야구규약은 대리인제도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로 정한다고 하여 동 규약 제174조에서 “대리인제도는 한국프로야구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제도 시행결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협의회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에 있어서는 2003년 11월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시행축구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제도는 별다른 논의의 진척이 없이 아직까지 그 현실적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8)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대한축구협회의 산하연맹기관으로 대한축구협회의 관할 아

연맹은 “프로 축구연맹 선수단 관리규칙” 에서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선수단 관리규칙 제2장은 선수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는 “계약 방법 및 계약서 보관” 이라는 제명 아래 「 1. 구단과 선수 간의 입단 계약 또는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담당자)와 해당 선수 및 대리인이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수가 민법상 미성년자(호적 기준)일 경우 법정대리인(또는 법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 법정대리인은 부(父)·모(母) 양자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1) 선수대리인이라 함은 부모, 형제, 변호사, FIFA Agent만으로 제한하며, 이들만이 선수대리인 자격으로 구단과 계약을 위한 협상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2) 선수대리인에 대한 시행규정(규칙)은 FIFA 및 대한축구협회 규정(규칙)에 의한다.」고 하고 있어 대한축구협회와 FIFA의 규정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 축구의 경우 프로 야구와 달리 FIFA가 선수에이전트규정(Players' Agents Regulations), 경기에이전트규정(Match Agents Regulations)을 통하여 공식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선수를 대리하는 에이전트와 관련하여서는 FIFA는 1995년에 처음으로 선수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 12월에는 이를 개정하고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선수에이전트 규정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여 FIFA 선수에이전트를 양성하고 있다.¹⁹⁾

래에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1920년 조선 체육회에서 출발하여 1945년 11월 26일 대한 체육회로 이름을 바꾸고 1948년 2월 국제축구연맹(FIFA)에 가입하였다. 그 후 1954년 2월에 아시아 축구연맹에 가입하였고 1989년 한국프로축구위원회를 통합하여 대한축구협회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산하에 한국여자축구연맹, 한국초등축구연맹, 한국중등축구연맹, 한국고등축구연맹, 한국대학축구연맹, 한국실업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 7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다.

19) FIFA 선수에이전트 시험은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실시하며 시험에 합격하면 분쟁해결을 담보하는 전문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10만 스위스 프랑을 은행에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FIFA 선수에이전트규정 제6조, 제7조).

그러나 FIFA는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공식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예외 조항을 두어 선수의 부모, 형제, 그리고 배우자, 나아가 해당국가의 변호사도 선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²⁰⁾,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 조문을 수용하여 대면계약 조문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프로 농구의 경우

프로 농구의 경우 프로 야구와 프로 축구에 비해 스포츠 에이전트의 활동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 농구는 남녀 협회가 분리되어 있는데 (사)한국농구연맹과 (사)한국여자농구연맹이 그것이다. (사)한국농구연맹은 서울 삼성 썬더스(삼성전자), 서울 SK 나이츠(SK텔레콤), 인천 SK 빅스 (SK텔레콤), 대구 동양 오리온스(동양제과), 부산 모비스 오토몬스(현대 모비스), 원주 삼보 액세스(TG컴퓨터), 안양 SBS스타즈(서울방송 SBS), 전주 KCC이지스 (KCC금강고려화학), 여수 코리아텐더 푸르미 (코리아텐더), 창원 LG 세이커즈(LG전자) 10개의 구단을 가지고 있으며 (사)한국여자농구연맹은 광주 신세계 쿨캣(신세계), 청주 현대하이패리온(현대), 수원 삼성생명비추미(삼성생명), 천안 국민은행 세이버스(국민은행), 춘천 우리은행 한새(우리은행), 인천 금호생명펠컨스(금호생명) 6개 구단을 가지고 있다.

KBL 규약 제76조에 따르면 “에이전트” 라는 제명 아래 「① 구단의 선수 계약에 관하여는 선수로부터 위임받은 에이전트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으며 직·간접적으로 선수계약 협회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에이전트는 총재가 정한 바에 따라 KBL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수가 행위 능력에 제한을 받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관하여 제77조에서 「선수가 계약 체결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있어 법정 대리인의

20) FIFA 선수에이전트규정 제1조 제3항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프로 야구와 프로 축구에 비해 프로 농구는 스포츠 에이전트의 자격에 대한 제한 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치면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수 에이전트 활동에 대한 제약이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4) 검토(스포츠 고유법으로 인한 직업의 자유 제한)

가. 의 의

프로 스포츠에 있어서 에이전트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선수 에이전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 스포츠에 있어 선수 에이전트의 주된 업무가 연봉계약 대행 서비스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구단과의 계약교섭 및 체결권이 없는 선수 에이전트는 아예 직업으로 인정받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프로 야구의 경우에는 에이전트 자격을 가진 자를 “변호사” 만으로 규정하여 스포츠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가장 좁혀 놓고 있다. 프로 축구의 경우에는 “부모, 형제, 변호사, FIFA Agent”로 에이전트 자격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선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은 FIFA의 국제 자격증을 전제하게 된다. 다만 프로 농구의 경우에만 “선수에게 위임을 받은 자로서 KBL에 등록할 것” 이라고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 농구의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 축구, 프로 야구의 스포츠 규약, 즉 스포츠 자치법이 스포츠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자를 지나치게 한정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수 없다. 스포츠 에이전트가 선수의 위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일정 하게 업무의 영역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다.

구단 또는 스포츠 선수를 영입하려는 단체들은 프로 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에이전트를 사용할 경우 관련 비용이 구단 또는 단체에게 전가되어 구단의 운영 경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나 선수의 연봉을 수수료로 나누어 가지는 에이전트 시장이 선수의 몫을 현저히 줄어든게 할 염려는 없는지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그러한 대안방안 없이 민법 제114조의 일반 대리인의 효과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프로 야구의 경우 에이전트의 자격을 오직 변호사로만 한정할 때, 스포츠 현실에 어두운 법률 전문가가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계약 성사에만 중점을 둔다면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될 것이다. 특히 선수 연봉의 몇 % 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만 변호사가 스포츠 에이전트로서 활동하기 위해 스포츠 산업 시장을 연구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누구나 스포츠 선수의 수권행위만 있는 경우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일반법대로 해석한다면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에이전트들이 난무하면서 선수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직업의 자유의 의미

우리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오늘날 생활환경의 변화는 단순한 직업선택의 자유만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고 국민의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은 불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²¹⁾. 헌법 재판소는 직업 개념을 상대적으로 넓게 보고 있으며 직업은 인간다운 생활과 개인의 생활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생활을 위한 과제로서 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 있어 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시작하여 직업 활동의 자유, 직업 활동을 위한 직업교육과 장소의 자유, 직장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그리고 직업 활동의 종료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²²⁾. 그 중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행사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업을 타인의 의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스포츠 에이전트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을 때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만일 이것을 제한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직업 행사의 자유는 선택된 직업에서 사회적, 경제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사회적, 경제적 생활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를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제약할 경우 이는 스포츠 에이전트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즉,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고 싶은 자에게 직장 진입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일반 법률 유보조항

21) 헌재 1993.5.13. 선고 92헌마80판결

22) 헌재 1997.3.27. 선고 94헌마196, 94헌마225, 97헌마83(병합)판결

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포츠 에이전트는 직업 선택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직업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그러한 제한이 스포츠 단체의 자치권, 즉 스포츠 고유법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1항 스포츠 단체의 결사의 자유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 고유법의 측면에서 스포츠 규약 제정권자인 구단은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면 선수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 외에 에이전트들의 수수료를 생각해서 몸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발생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스포츠 에이전트가 그러한 역기능만을 가지고 있는지 프로 스포츠 산업에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스포츠 에이전트가 구단의 이익을 언제나 해하는 것인지 선수들 역시 이러한 스포츠 에이전트의 자격 제한에 대해 구단과 입장을 동일하게 인식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프로 스포츠에 있어서 스포츠 에이전트는 선수의 역량을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 스포츠 관람자들에게 좋은 역량의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스포츠 에이전트에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업무 수행능력의 역량을 위한 부분으로서 공공복리로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특히 구단 또는 스포츠 단체, 기업 등과 계약 교섭 및 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선수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고 프로 스포츠 산업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일정한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 교육 및 관련 지식을 요구하는 일, 예를 들어 전문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 위하여

일정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요구한다거나 필요에 따른 교육이수를 요구하는 것은 전문적 지식이 없으므로 생겨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인도스먼트 계약 서비스 업무의 제한

1) 스포츠 자치법으로 인한 업무 범위의 제한

가. 관련 규정

스포츠 에이전트의 주된 업무 중 연봉계약 대행 서비스 외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인도스먼트 계약의 체결이다. 야구규약 제24조는 “방송 허가권”이라는 제목 아래 「구단은 각기 연도선수권대회중 홈 게임에 대해서는 라디오 방송 또는 TV방송(재생방송 및 유선방송 포함)을 자유로이 허가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구 선수의 경우 선수 계약기간이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즌 중 선수 초상권이 구단에 있다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즌 후 다음 시즌 계약일 시점까지의 선수 초상권은 선수에게 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수 계약서 제8조 (용구) 에서는 “야구 경기에 필요한 모든 용구는 구단이 부담하고 훈련에 필요한 배트, 글러브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인도스먼트 계약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업들은 자신들의 용구가 훈련용이 아닌 경기용을 원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선수계약서 제16조는 “선수의 초상권은 일체 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선수를 광고에 출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구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일본 프로야구 선수계약서 제8조 (용구) “야구경기 및 트레이닝에 필요로 하는 야구 용구 가운데 구단은 야구공을 부담하며 언제나 두 종의 유니폼(점

퍼를 포함한 스파이크는 제외)을 선수에게 대여한다. 선수는 그 외에 필요한 모든 용구를 자급자족한다” 는 규정과는 매우 상이한 규정이다. 우리나라 프로 야구와 관련된 문서의 대부분이 일본의 규약 등을 수용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에서 일본보다 선수의 인도스먼트를 더욱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 야구뿐만 아니라 프로 농구의 경우에도 KBL 규약 제78조는 “선수 초상 등의 사용” 이라는 제목 아래 「① 선수는 농구 활동 중의 사진, 이름, 서명, 초상, 영상, 캐릭터 등이 방송, 보도에 사용되는데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또한 KBL 사업에 사용하는 선수의 사진, 이름, 서명, 초상, 영상, 캐릭터 등의 소유권은 선수계약기간 중 KBL에 귀속된다. 단, KBL의 사업보호를 위해 계약 종료 후 1년간 KBL은 선수 초상 등이 부착된 재고상품의 판매 권리를 갖는다. ② 선수는 KBL 또는 구단의 지시가 있을 경우 농구의 보급 및 광고 선전에 사용될 소재 제작(사진 촬영, 필름, VIDEO 촬영, 인터뷰, 녹음 등)에 무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③ 선수는 대가를 지급받는 방송 및 각종 행사의 출연과 신문, 잡지, 인터넷의 기사 게재 그리고 모든 광고 활동에 대하여 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활동의 경우 구단은 그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출연, 기사게재 및 광고 활동은 KBL 또는 구단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⑤ 제1항의 KBL 사업과 제3항의 출연, 기사게재 및 광고 활동 등으로 발생한 대가의 분배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목별로 살펴볼 때 프로 농구의 경우는 자신의 초상권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프로 야구보다 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 프로 축구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프로 축구 선수계약서 제8조 (용구) 에서는 “구단은 경기에 필요한 용, 기구를 부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14조 (선수의 광고행위에 대한 처리) 초상권과 관

련한 내용에서는 “선수가 광고, 선전에 출연하는 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구단이 소유한다”고 명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수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나. 검토

스폰서 계약은 선수와 직접 체결하기도 하고 구단 또는 스포츠 단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 스포츠에 있어 선수는 구단이 제시한 스포츠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원천적으로 직접 인도스먼트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오늘날 선수가 갖는 고객흡인력을 생각할 때 선수들의 상품 가치를 기업의 광고,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인도스먼트계약에 있어 선수 에이전트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²³⁾ 그런데 자신의 초상, 성명, 이미지, 캐릭터 등에 관한 권리와 같이 개인의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는 권리의 법적 성격과 그 권리가 양도가능한 것인지의 여부가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right of publicity)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개인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에 대한 보호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²⁴⁾ 독일은 이를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 보호하고 있다.²⁵⁾ 재산권

23) 그 예로 2000년 박찬호 선수의 에이전트인 스티브 킴이 나이키와의 최종협상을 통해 7개월간 31만불의 광고 및 용품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례(국민일보 2000년 7월 5일자보도)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 에이전트는 연봉협상이나 대회출전일정 조정 등의 업무 외에 90%이상은 선수를 위한 인도스먼트 협상과 계약 등의 마케팅과 자문 활동에 보낸다고 한다. 1997년 미국 상위 20위 프로 선수들의 총 수입은 3억 6290만 달러로서 이중 인도스먼트 수입이 2억 5130만 달러에 달해 연봉수입 1억 1160만 달러보다 2배이상 높다. 특히 Tiger Woods 선수는 연봉이 21만 달러인데 비해 인도스먼트 수입은 24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김중/최재원, 스포츠 에이전트와 인도스먼트 유형 및 현황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0호(1998), 17-18면 참조).

24) 미국의 현황에 관하여는 장재욱, 연예인의 성명·초상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손해배상법의 역할, 법학논문집 제27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04면 참조.

25) Götting, Persönlichkeitsrechte als Vermögensrechte, J.C.B.Mohr, (1995) 참조.

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미국에서는 양도가 가능하지만, 독일의 경우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가 불가능하고 이용허락이라는 방식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²⁶⁾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동일성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으로 다루고 있다. 인격권은 원칙적으로 讓渡不可能한 권리이다.²⁷⁾ 자신의 초상·성명을 모두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선수는...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거나 따라서 “선수의 광고나 사진 출연등에 관한

26)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고법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판결:이른바 제임스 딘 사건);그러나 최근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 판매한 사안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양도 및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원고들과 같은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성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원고들이 자신의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원고들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에 관한 것인 이상 원고들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및 성명사용금지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서울지법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27)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2005), 44면; Bucher, Natürliche Personen und Persönlichkeitsschutz, 2. Aufl. (1995), N. 508.

모든 권리가 구단에 속하고 구단이 이를 관리한다”고 하는 규약이나 계약조항은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²⁸⁾ 이처럼 초상 등에 관한 권리가 선수 자신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야구규약에서 플레이 오프기간에까지 인도스먼트 계약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KBL은 구단의 지시가 있는 경우, 모든 초상의 사용에 대해 무상으로 응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미리 약정하는 것과 다른 인도스먼트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구단과 사전 협의하고 총재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해 생기는 수익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에이전트가 선수를 통한 인도스먼트 계약 협상 및 체결대행 서비스 업무를 거의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선수의 대외활동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는 한 선수들이 연봉 외에도 부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없게 한다. 이는 프로 스포츠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며 이러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에이전트는 업무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막는 것이라 하겠다.

2) 스포츠 마케팅 대기업으로 인한 제약

그밖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선수 에이전트가 인도스먼트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광고 전문 에이전시 시장의 독과점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한 마케팅은 금강기획, 제일기획, LG애드를 비롯한 대기업 광고회사가 중심이 되어 선수에 대한 인도스먼트 계약을 하되 광고주가 지정하여 광고계약이 체결되

28) Hauser, Der Sponsoring-Vertrag im schweizerischen Recht, Diss., Zürich, 1991, 186 ff; 공정거래위원회 2001. 4. 6.의 결 제 2001 - 056호에서 구단에 포괄적으로 선수의 사진출연 등의 권리를 귀속시키는 프로야구선수통일계약서 제16조 규정이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약관규제법 제 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 한 바 있다.

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포츠 에이전트가 선수를 홍보하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예는 국내에서 별로 없다. 특히 이러한 대기업 광고행사는 스포츠 관련 스폰서십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그리하여 인도스먼트·스폰서십과 같은 광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에이전트의 업무라기보다 마케팅 대행사의 업무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우리나라 스포츠 에이전트는 현재 프로 스포츠의 종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한 정보를 대행하여 알아봐 주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스포츠 선수 마케팅 차원에서는 초기 단계에 진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권자로서 공신력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스포츠 광고 산업 시장에서 인도스먼트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스포츠 에이전트의 활동영역은 매우 좁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표 4] 국내 주요 회사의 스포츠 마케팅 사업 현황

회 사	주요 사업 내용
금강기획	HMC 2002 월드컵 공식 스폰서십 마케팅 사업 HMC EURO 2000 대회 공식 스폰서십 마케팅 사업 국제 유도연맹 IJF 포괄 마케팅 사업 대한축구협회 KFA 마케팅 사업 한국 야구위원회 KBO 마케팅 사업 1999-2000 애니콜배 KBL 타이틀 스폰서십 마케팅 사업 삼성전자 2000 시드니 하계올림픽 스폰서십 마케팅 사업
제일기획	대한 체육회 마케팅 사업 삼성 월드챔피언십 여자골프 마케팅 사업 세계 태권도 연맹 WTF 마케팅 사업 한국 프로농구리그 KBL 상품화 사업
LG애드	LG 전자 LG 컵 축구대회 스폰서십 마케팅 사업 LG 전자 호주 축구국가대표팀 스폰서십 사업 한국 프로축구연맹 마케팅 사업
IMG 코리아	TV 프로그램 판매 사업 선수 매니지먼트 사업

(3) 자문 서비스 업무의 제한

스포츠 에이전트의 자문 서비스의 대다수는 세무, 노후관리, 분쟁조정 등 법률 서비스 제공의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증이 없는 이상 민간인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라는 제명 아래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그 업무범위를 밝히고 있고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또는 판사,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변호사법 제4조).

그리하여 선수 에이전트의 업무에 속하는 이러한 관련 서비스 대부분인 계약 체결 및 소송 대리등의 사무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선수 에이전트가 그러한 업무를 수행했을 때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 중 선수 에이전트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포츠 국가법으로 인한 일정한 제한과 선수 에이전트의 라이선스 결여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로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수 에이전트의 라이선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고유법 규정(선수에게 불공정한 자치법 규정)에 대해 불공정한 경우 시정을 촉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고유법 규정의 개선에 있어서 선수 에이전트의 업무인

연봉계약대행서비스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대면계약 규정의 시정을 촉구하고 일정한 라이선스 있는 에이전트가 선수를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선수 에이전트 업무 중 인도스먼트 계약대행서비스의 경우 에이전트가 직접 선수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수가 스포츠 용품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 플레이오프 시즌에는 일정하게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고 선수의 인도스먼트 내용을 구단에게 양도하는 등 자치 규약 중 상업화 규칙과 관련하여서는 연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²⁹⁾. 선수 에이전트는 선수의 건강 등 선수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2000년 4월 18일 야구경기도중 쓰러져 뇌사상태로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임수혁 선수 사건³⁰⁾은 당시 우리 경기장에 응급처치 및 의료서비스 등 선수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할 그 어느 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으나 현재도 전혀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³¹⁾.

이 때 선수 에이전트가 있어 선수를 보호하는 의료 서비스 등 선수의 신변을 위한 점검조치를 사전에 하였다면 이러한 사고는 사전에

29) 선수의 인도스먼트계약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선수가 스포츠 규약에 합의하여 프로 스포츠 선수로 활동함으로써 규약의 내용 중 인도스먼트와 관련한 상업화 규칙에도 전면 합의하여 인도스먼트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즉 선수와 인도스먼트를 원하는 자 사이에 구단 또는 스포츠 단체가 제시하는 규약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간접적 인도스먼트 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선수 에이전트 또는 선수가 직접 자신의 인도스먼트를 원하는 자와의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직접적 인도스먼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30) 연합뉴스 2006-04-17, <의식불명 6년째 임수혁 '아빠는 휴식중'>(종합)

31) 한겨레 2003-07-16, 부상선수 10여분간 방치 한심한 경기장 응급처치, 2003년 7월 13일 우리은행과 금호생명의 여자프로농구 경기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렸다. 경기 시작 후 3쿼터 중반, 우리은행 선수와 부딪쳐 넘어진 금호생명 강현미 선수가 코트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 계속해서 10분 가까이 선수를 그대로 코트에 방치한 채 어찌할 바 모르며 찢찢 매다가 들것이 없어서 수건과 테이בל보, 대형 탁자를 차례로 가져와 선수를 옮기려 시도한 것이다.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수 에이전트가 있음으로써 선수가 스포츠의 특성상 가지게 되는 위험 등에 대해 스포츠 단체 또는 구단에 이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국제 환경상 선수 에이전트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 용병 선수가 대부분 에이전트가 있는 것과 미루어볼 때 우리나라 선수와 외국 선수간의 권리 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대부분의 외국 용병 선수는 선수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선수는 우리나라 리그에서 뛰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수 에이전트 없이 직접 구단 또는 스포츠 단체와 계약에 임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선수 에이전트는 스포츠 산업의 국제화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으로서 국내의 스포츠 에이전트 비활성화 원인을 조속히 해결하여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 3 장 스포츠 에이전트 입법모델 연구

제 1 절 서 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에이전트는 변호사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아닌 경우가 많다. 법적인 지식이 충분하다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고 선수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법적인 지식 외에도 협상 기술, 스포츠 관련 지식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선수들의 투자를 관리하고 은퇴 후의 계획을 세우며 일반인들에게는 선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세우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상당 부분노하우를 축적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Mark McCormack's International Management Group 과 Donald Dell's competing Pro Serve가 이러한 업무를 하는 전문가들이 각각 모여 풀 서비스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국내의 경우 프로 스포츠 시장이 미국과 같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비스 전반에 대해 스포츠 에이전트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스포츠 에이전트가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스포츠 산업에 있어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요청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³²⁾. 이는 프로 스포츠 산업의 확대와 국제 진출 등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전문 에이전트를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스포츠 에이전트 에 대한 스포츠 국가법제의 구축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32) 한 의식조사에 의하면 스포츠 선수들은 에이전트와 계약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고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밖에 i)에이전트가 뭔지 몰라서, ii)전문에이전트가 필요 없어서, iii)구단마찰이 두려워서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김인재, 이재현, 프로야구선수들의 선수에이전트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9권 제4호 (2004), 142면).

이 장에서는 스포츠 에이전트 법제의 입법방식,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외국 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스포츠 에이전트와 관련한 국가법을 제정함에 있어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과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두는 것이 적절한 입법인지, 스포츠 산업진흥법 또는 스포츠 기본법상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은 후 구체적 위임하에 행정기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나라의 입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를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스포츠 산업에 있어 스포츠 에이전트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스포츠 에이전트와 관련한 국가법이 담아야 할 내용 중 스포츠 에이전트의 지위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에이전트와 같은 직업에 있어 특별법을 두는 규정으로는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 직업의 전문영역을 법제화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중개인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그밖에도 고려하여야 할 내용들은 많은 것이 있다. 스포츠 산업 발전 계획을 위해 2005년 후반부터 시행되어 2005년도에 1회 합격자가 배출된 스포츠 경영관리사와 향후 마케팅 전문가 양성 계획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배출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인증되고 있는 직업의 업무 영역과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 영역이 충돌되지 않는지 검토되어야만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고찰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스포츠 에이전트와 관련하여 외국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수내용 발견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수 에이전트와 경기 에이전트가 구분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각

각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선수 에이전트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이 최초로 생겨난 미국 통일 선수 에이전트법(Uniform Athlete Agent Act, 2000)과 이를 수용하여 입법화한 주법 중 캘리포니아주의 선수 에이전트 법(Miller-Ayala Athlete Agent Act, 2005), FIFA의 선수 에이전트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난 뒤 경기 에이전트에 있어서는 FIFA의 경기 에이전트 규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제 2 절 국내 에이전트 유사 제도 분석

1. 『중개사』 제도

(1)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지위

스포츠 에이전트는 계약 성사 전반에 있어 이를 중개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는 매니지먼트, 드래프트, 경기향상 프로그램의 소개, 연봉협상, 개인 스케줄 관리, 이적 추진 및 재정 법률자문, 은퇴 후 진로모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결국 이는 선수에게 유리한 계약 체결 또는 출전자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여 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포츠 에이전트와 선수 또는 경기를 희망하는 자가 체결하게 되는 계약의 성질은 중개계약³³⁾³⁴⁾이

33) 민법은 그동안 중개계약을 전형계약으로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 상에서 중개자의 권리와 의무가 개별적으로 열거되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위임계약의 다음 절인 제13절에 중개계약을 독자적인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재산법 개정 공청회 자료(법무부 2001년 12월), 179면에 따르면 리스계약은 아직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새로 여행계약과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개정공청회에서 발표한 입법취지에 따르면 상법 등에서는 중개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중개계약을 전형계약으로 구성하는 형태로 입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중개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칙을 민법에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34) 민법 개정안 제692조의2는 “중개의 의의”라는 제명 아래 “중개는 당사자 일방이 상

라고 할 수 있는데, 중개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체결의 교섭을 피하여 이를 성사시키고 그 목적인 중개완성에 대하여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를 말한다. 이러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의 업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는 법률로서 이를 보호하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에 있어 공인 중개사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상의 통신판매 중개인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물론 그밖에도 혼인중개인, 보험중개인 등 중개자의 지위에서 활동하는 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공인중개사 직무의 등록 및 일정한 의무를 특별법에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과 관련 산업 법률 중 중개인의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부동산 중개업 직무 관련 특별법 입법방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에서의 지위

국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직무 영역을 확보하고 일정한 등록과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는 부동산 중개업 영역의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다. 이 법은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 국가에 등록한 뒤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76호 “부동산중개업법”으로 제정되어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다가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7638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법명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대방에 대하여 계약체결의 소개 또는 주선을 의뢰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중개자는 계약체결을 소개하거나 주선을 의뢰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 제692조의 3에서 무상인 중개계약과 유상인 중개계약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임계약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민법 개정안 제692조의 3 (중개료 청구권 등) “①중개에 관하여 보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중개인은 그 소개 또는 주선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중개인이 중개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로 변경되었고 그 후 일부 개정된 2005.12.7 법률 제7710호로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만일 스포츠 에이전트에 있어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일정한 등록과 규제를 하여 스포츠 산업시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국내의 동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목적 아래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이 직업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스포츠 에이전트가 공인중개사와 같은 지위를 확보하려면 스포츠 산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포츠 산업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 있어 “중개”의 의미는 제2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한다(동법 제3조).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은 부동산으로서 부동산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스포츠 에이전트 역시 이러한 명확한 정의의 확립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선수의 용역을 거래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선수의 용역 및 스포츠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할 수 있는 자가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공인중개사의 의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시자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제2항).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시·도 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게 되고(동법 제5조),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으며(동법 제7조),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동법 제8조).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때는 관할 지역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할 뿐 아니라(동법 제9조 제1항), 이중등록이 금지된다(동법 제12조). 또한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이해가 상충되는 내용의 겸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동법 제14조) 사용인을 신고하고(동법 제15조) 인장도 등록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그리고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고(동법 제25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동법 제26조), 부동산거래를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그밖에 일정한 때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동법 제34조) 각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 에이전트도 이러한 일정한 국가적 제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제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일정한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관련 산업내의 중개인의 의무규정을 두는 입법방식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통신판매중개자의 통신판매업에서의 지위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제를 따로 제정하지 않고 스포츠 기본법 또는 스포츠 산업 관련법의 한 부분으로 입법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어 “통신판매중개인의 의무” 규정을 참고할 만하다. 이는 일정한 당해 산업에 있어서 중개인의

의무규정을 두어 국가가 행위규범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해당산업의 질서와 중개자의 직무 영역을 넓게 확보해주고 일부 행위만을 규제하는 입법방식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있어서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다른 입점업체가 해당 인터넷주소의 사이트 공간을 빌려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경매 사이트 역시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으로서, 자신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전혀 판매하지 않고 오직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통신판매의 중개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정한 산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넓게 보호하고 직무의 일부 행위만을 규제하는 입법방식은 해당 직업을 가진 자의 직업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통신판매중개인의 의무

통신판매중개자는 부동산 중개업의 공인중개사와 같이 등록 및 각종 행정관리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 역시 소비자의 권익과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전자상거래법 제1조) 일정한 의무를 져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 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전

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자가(통신판매중개자) 책임을 진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3항). 그밖에도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4항).

그러므로 스포츠 에이전트의 경우에도 일정한 중개자로서 제재할 행위를 정리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입법하여 업무 관할에 있어서의 자유를 확보할 수도 있다. 그것은 해당 산업에 있어 스포츠 에이전트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2. 스포츠 경영관리사와 스포츠 마케터 제도

(1)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의 스포츠 전문 인력에 대한 인식

2005년 6월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포츠 산업진흥법안”을 검토한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보고서는 스포츠 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과 관련하여서 안 제6조35), 제8조36), 제19조37)를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 제정안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단체 및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
- 35) 제6조 (경쟁력강화 조치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5조의 스포츠산업의 진흥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단체 및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파견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 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
 2. 스포츠산업관련 국제대회 유치 및 시설의 설치
 3. 스포츠산업의 기술개발, 도입 및 기반조성사업
 4.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제품, 프로그램 등의 인증
 5.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사업
 6. 그밖에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36) 제8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EK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밖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7) 제19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①국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프로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유의 시설, 물품 그밖에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은 시민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견하거나 창단자본금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 출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단, 공사 및 공단이 출연, 출자할 경우는 전체 창단자본금의 30%를 넘지 못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프로구단이 사용하는 경기시설이 프로경기 운영 및 관람에 적합할 시설로써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그밖에 프로스포츠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다(안 제6조). 이에 대해 위원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단체 및 스포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공무원 파견은 국가와 공공기관, 단체, 사업자간의 스포츠산업 진흥, 육성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상호협력 체계의 구축이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자칫 민간 사업자에 대한 통제와 간섭 및 행정조직의 확대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 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대학 등의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8조). 이에 대해 위원회는 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스포츠산업의 핵심적인 산업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과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과학연구원 소속의 스포츠산업연구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³⁸⁾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영 관련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대학원이 협소한 것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연구소 및 대학 등의 연구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에 필

38)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황 : 체육과학연구원 315백만원(국고) 예산액,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서비스업의 실무인력 및 신규인력의 경영능력을 제고하여 스포츠산업의 발전 도모 목적, 전문인력 양성 R&D 사업추진(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준비), 전문인력 양성 연수사업 시행(스포츠마케터 실무과정 외 7개 과정), 인력개발 지원사업(전문인력 및 스포츠마케팅 정보개발 및 서비스확대)을 주 내용으로 함

요한 경비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끝으로 동 법안은 프로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구단에 대한 행정, 재정상의 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은 시민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시민구단에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 인력을 파견하거나 창단자본금의 50%(공사 및 공단이 출연, 출자할 경우에는 창단 자본금의 30%)까지 출연,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19조). 이에 대하여 위원회 검토의견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선수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발맞추어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내수경기의 활성화 등 여타 산업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스포츠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동 법안 제19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은 시민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 인력을 시민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과 시민구단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를 위한 취지의 입법조치로 보여지나, 근본적으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프로구단에 대한 공공기관의 전문인력 파견을 동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 산업진흥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아래에서는 스포츠 전문 인력 중 스포츠 에이전트와 유사한 영역과 관련한 직무인 ‘스포츠 경영관리사’와 ‘스포츠 마케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직무를 인정하는 범위에 있어 스포츠 에이전트의 입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검토하고자 한다.

[표 5] 스포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 현황³⁹⁾

*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중인 스포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현황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합계
스포츠 마케터 과정	40	129	171	199	180	719
스포츠시설업 경영관리자 과정	30	82	107	106	120	445
공공체육시설관리자 과정	50	63	46	53	50	262
합 계	120	274	324	358	350	1426

*06년은 목표치임

[표 6] 스포츠 경영 관련 대학 현황

구 분	대 학 교	대 학 (학부)	학 과(전공)
대 학	경기대학교	체육학부	스포츠경영학전공
	경동대학교	경영학부	스포츠마케팅학전공
	관동대학교	체육학부	스포츠경영학전공
	남서울대학교	스포츠산업학부	스포츠경영학전공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경영학전공
	아주대학교	스포츠마케팅학부	
	중앙대학교	사회체육학부	스포츠산업학전공
	홍익대학교		산업스포츠학전공

[표 7] 스포츠 경영 관련 대학원 현황

구 분	대 학 교	대 학	학 과
대학원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레저 스포츠컨설팅전공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스포츠레저산업전공
	계명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스포츠경영전공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스포츠경영학전공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스포츠마케팅학과

39) 김성용,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스포츠비즈니스 통권 제63호(2006, 10 · 11), 46면표에서 재인용.

구분	대학교	대학	학과
대학원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레저스포츠산업학과
	목포대학교	레저스포츠산업학과	레저스포츠기획 및 운영전공
	서울스포츠산업대학원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스포츠경영전공
	성균관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스포츠산업학전공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스포츠경영전공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스포츠마케팅학과

(2) 스포츠 마케터

[표5]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는 스포츠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육과학연구원에서 프로 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스포츠 마케터 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2005년 당시 이미 529명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 산업 비전 2010”에서 살펴보면 스포츠 마케터 전문 인력은 2010년까지 1,0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⁴⁰⁾. 또한 전문 스포츠 마케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0년까지 150명은 전문 스포츠 마케터 인력으로 하여 1년 과정을 체육과학연구원이 담당하고 국내기관 인턴십 2개월 및 해외연수 2개월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해 다양한 서비스 창출과 효율적인 마케팅 한계로 스포츠 산업 성장기반이 취약하다는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선진국은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의 창조성, 재능, 의지를 스포츠산업발전의 동력

40) 스포츠 산업 비전 2010은 스포츠 마케터 1,000명, 스포츠시설업경영관리자 750명, 공공체육시설관리자 750명 등 2010년까지 총 2,500명 양성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에 대한 인식 저조 및 양성교육의 예산부족으로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래밍 등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저조할 뿐 아니라, 체육과학연구원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단기과정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제 경기를 유치하고 선수를 수급하는 등에 대한 업무 전반을 해외의 마케팅 전문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포츠 마케터는 스포츠 영역에 있어 전문적인 마케팅의 필요성으로 인해 생겨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에이전트와는 선수 에이전트에 있어 인도스먼트 계약 대행 서비스 업무, 경기 에이전트에 있어서는 스폰서 계약 대행 서비스 업무 등에서 일부 중복된다. 그러므로 스포츠 마케터는 스포츠 에이전트에 있어 마케팅 서비스의 일부에 흡수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스포츠 경영관리사

스포츠경영관리사란 스포츠이론, 산업, 시설, 이벤트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문화관광부는 레저 스포츠분야 육성정책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스포츠 경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스포츠 마케터와 같이 단순한 과정 이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스포츠경영관리사를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고 이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기본교육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2월 14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5년 하반기부터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⁴¹⁾.

4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제1항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1에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회 시험에 이어 올해 2006년에도 2회 시험이 치루어졌으며 연간 합격자는 100명에서 200명 내로 배출하고 있다.

스포츠경영관리사는 스포츠이벤트의 기획 및 운영, 스포츠 스폰서 및 광고주 유치,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구단 스포츠 마케팅 기획 및 운영, 스포츠 콘텐츠 확보 및 상품화, 스포츠 선수대리인 사업의 시행, 스포츠 시설의 회원모집/관리 등 회원 서비스, 스포츠시설 설치 및 경영 컨설팅과 공공, 민간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의 업무수행 등의 업무에서 활용되어 실제 스포츠 에이전트 업무의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스포츠산업론, 스포츠경영론, 스포츠마케팅론, 스포츠시설론 등의 필기시험과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시설경영실무 등의 실기시험을 치루게 된다.

그러나 스포츠경영관리사가 스포츠 마케터,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 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련 전문가로서 생겨난 자격증이다 보니 스포츠 관련 업무 수행 대부분을 그 직무로 하고 있어 직무내용의 복잡성으로 전문성을 잃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 경영관리사 자격 취득 후 실무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적절한 연수과정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⁴²⁾.

[표 8]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구 분	내 용
직무내용	스포츠 이벤트의 기획 및 운영, 스포츠 스폰서 및 광고주 유치,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구단 스포츠 마케팅 기획 및 운영, 스포츠 콘텐츠 확보 및 상품화, 스포츠 선수대리인 사업의 시행, 스포츠 시설 회원모집, 관리 등 회원서비스, 스포츠시설 설치 및 경영 컨설팅,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의 업무수행
응시자격	1.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2)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제1항은 (국가 등의 책무)라는 제명 아래 ①국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3.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시험과목	필기시험 : 스포츠 산업론, 스포츠 경영론, 스포츠 마케팅론, 스포츠 시설론 실기시험 :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시설 경영 실무

3. 검토

스포츠 에이전트의 종류에는 선수 에이전트와 경기 에이전트가 있다고 할 때 에이전트 업무의 주된 내용은 스포츠 영역에 있어 일정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을 성사시키는 중개자의 지위에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 에이전트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스포츠 선수를 대신하여 스포츠 선수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각종 계약, 에이전트 계약, 인도스먼트 계약, 파이낸셜 서비스 계약 등 스포츠영역에서 있는 모든 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요청하여 이를 성사시키는 등의 업무를 통하여 보수를 얻는 자”로서 정의함이 적절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스포츠 에이전트의 중개자적 지위를 확보하고 국가가 입법을 하고자 할 때에 두 가지 입법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그러한 직무에 대한 특별법을 두는 입법방식(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일정한 산업에 있어 중개자의 의무를 일부 규정에 두는 입법방식(예: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중개인의 의무)이 그것이다.

직무에 대해 특별법을 두는 입법방식은 해당 직무가 해당 산업에서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등록에서 규제까지 상세하게 직무의 범위를 규율하고 이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해당 산업 영역에 있어 일반법의 일부 규정으로 입법화하는 입법방식은 해당 직무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일정한 경우에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규정의 마련으로 입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스포츠 에이전트가 현재 또는 장래에 스포츠 산업에서의 일부분이 아니라 선수의 권익을 확보하고 경기를 중개하는 막중한 업무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보면 직무를 중심으로 특별법을 두는 입법방식(예: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즉, 스포츠 에이전트의 직무의 범위와 제재에 대해 상세히 입법하는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가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유의할 것은 스포츠 에이전트의 직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른 스포츠 관련 직무와 중복되지는 않는가이다. 만일 중복된다면 이는 해당 직업에 흡수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될 필요가 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고 있는 스포츠 경영 관리사나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스포츠 전문인력으로 배출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터와 같은 경우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와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으므로 해당 자격증을 통합하거나 분류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스포츠 마케터는 스포츠 에이전트의 마케팅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스포츠 에이전트에 흡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 경영관리사는 스포츠와 관련된 계약 뿐 아니라 스포츠 영역 전반의 업무를 관할하는 자로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스포츠 에이전트를 스포츠경영관리사에 편입시킬 것인지 스포츠 경영관리사와 스포츠 에이전트를 이분화하되 스포츠 에이전트의 계약 교섭 및 체결권을 스포츠 경영관리사에서 제외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에 나가기 이전에는 반드시 스포츠 에이전트

실무과정을 연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앞서 살펴본 대학 등 교육 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미리 검토되어야 한다.

제 3 절 미국과 FIFA의 선수 에이전트 제도

1. 미국 통일선수 에이전트 법 (Uniform Athlete Agents Act, 2000)

(1) 서 설

3,000여개의 스포츠 에이전트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전문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제도가 시행되어 에이전트 사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에 맞게 양질의 에이전트를 배출하고 있고 선수 노조가 인정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공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야구선수 협의회가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고, 스포츠 에이전트의 필요성이 스포츠 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선수, 구단, 에이전트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공생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인증제도와 선수 에이전트 통합 관리기구가 설치되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에이전트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과 같이 해당 종목의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각 종목의 경기단체 협회 차원에서 에이전트에 대한 인증을 제도화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규제하며 에이전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선수 측의 통합 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에이전트와 선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도 조율하여야 하는 것이다.

[표 9]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에이전트 규정 관련 단체

관련 단체	내 용
선수 노조:PA(Player's Association)	MLB(미국프로야구)PA, NBA(미국프로농구)PA, NFL(미국풋볼리그)PA 모두 에이전트 허가제를 실시

관련 단체	내 용
에이전트 협회:ARPA(Association of Representative of Professional Athletes)	자체적인 윤리규정으로 자율규제 규칙 지침(다만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없음)
법조인 협회: ABA(American Bar Association)	변호사의 직업 윤리 준수
주정부 통제	선수 에이전트 관련 법 제시 - 대부분 주정부는 에이전트 등록시 보증금 공탁을 요구함 - 주로 대학생 선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로 보유 함(교육관련 법)

미국은 선수노조가 에이전트에 대한 공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프로 야구 외에는 실제 노조가 없는 실정이며 노조가 되기 위한 근로자성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실정이다.⁴³⁾ 그러나 스포츠 산업의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스포츠 에이전트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스포츠 에이전트의 윤리, 강령의 존재와 정보 교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은 주법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Uniform Law를 제정하고 있는데 통일 선수 에이전트 법(Uniform Athlete Agents Act: UAAA)⁴⁴⁾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에서 제정되었다.

(2) 법 제정의 취지

미국 통일 선수 에이전트 법 제정의 취지는 서문에 제시되어 있다. 서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43) 프로선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로 김영문, 프로선수의 법적 지위, 스포츠와 법 제 2권(한국스포츠법학회, 2001), 417면 이하 참조.

44) 통일주법위원회 전국회의가 기초한 초안을 플로리다, 세인트 아우구스틴에서 2000년 6월 28일-8월 4일에 개최된 109번째 연례회에서 미국 “통일 선수 에이전트 법”(Uniform Athlete Agents Act, 2000)으로 하여 각 주에서의 제정을 위해 승인하고 권고한 것임.

다수의 프로 선수들이 고액 보수를 받는 시대에, 그들의 에이전트는 많은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자신의 에이전트들에게 많은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선수를 대리할 권한을 획득한 소수의 에이전트 또는 장래에 에이전트가 될 자의 관행은 학생선수 및 교육기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소수의 에이전트의 책략은 선수에게 은밀하게 금전 또는 물건을 주거나, 선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신분에서 있는 친구 및 친척들에게 비밀리에 금전 또는 물건을 주거나, 허위 약속 및 상당한 강요를 포함한다.

이러한 관행은 뉴스의 주요 제목으로 올라온다. 선수들은 자격을 잃고, 유망한 프로 경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대학과 전문대학은 제재를 받는다. 이 제재는 매우 심각할 수 있고, 포스트 시즌 경기 참가에 대한 많은 수입을 잃게 되거나, 반환할 의무가 있다. 종종, 오랜 기간동안 비재산적 제재를 받고, 체육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준다. 다른 효과로서 중요하게, 높이 평가되는 교육기관의 평판이 떨어지고 그 기관의 경영진의 활동에 심한 분열이 생기게 한다. 전술한 결과로서, 적어도 28개 주는 선수 또는 스포츠 에이전트를 규율하는 입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입법들은 상당히 다르다. 그 법률의 3분의2는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 절차, 요구되는 명세 및 기록 유지, 기록 보고, 기록 갱신, 기록 통지, 주의 및 담보와 관련한 필요조건들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 등록기간에 대하여 13개주에서는 1년, 4개의 주에서는 2년, 그리고 2개의 주에서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주들은 특정 문제에 대하여 주 또는 교육기관 및 선수들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폭넓게 변화한다. 한 개 주 이상에서 활동하는 성실한 에이전트들은 현행 법률들의 통일성의 결여, 승낙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위반으로 부과되는 제재의 가혹함을 이유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3) 법의 구성

현행 법률의 통일성 및 호혜규정의 결여 때문에, NCAA 및 몇 개의 대학은 통일법의 입안에 착수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의사일정의 사정, 입안 노력의 결과에 대한 확립된 기준에 적합하게 법의 영역에 통일법의 불확실성 및 예산의 고려로 인한 초기의 어려움 후에, 위원회는 입안하기로 승낙하였다. 입안 위원회는 3년의 기간 이상 회의를 하였고 선수 에이전트, 코치, 현재 법률을 집행하는 자 및 NFL, NHL, MLB, NCAA의 선수협회의 대표자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받았다.

UAAA 규정의 대부분은 현행 법률중의 몇 개에서 근거한 규정들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통일법은 선수에이트의 등록을 요구하는 대다수의 주들을 따랐다. 등록은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학생 선수와 처음 접촉하기 전에 필요로 한다. 학생 선수가 선수에이전트와 처음 접촉하는 경우, 선수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학생 선수를 권유하려고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법률은 등록 신청시에 작성된 명세표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관리관은 등록의 증명서를 발급 또는 정지, 취소 또는 등록 갱신의 거절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목록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에이전트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들, 에이전트 계약이 체결된 후 교육기관에 통지 요건, 서명 후, 14일 이내에 에이전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학생 선수의 권리, 그리고 선수 에이전트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는 기록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어떤 특정한 행위 금지규정 및 형벌 및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전문가 과오 보험의 형식으로 담보 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률에서 보증증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선수 에이전트에 대한 담보의 종류는 매우 넓게 이용되고 있지 않다. 보험은 대개 법률이 금지하는 유형중의 고의적 행위를 보상하지 않는다. 게다가, 현행 법률은 10,000달러에서 100,000달러의 범위에서의 금액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

다. 이 금액은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더 많은 담보의 요구는 이미 이용될 수 있는 제한적 시장을 축소하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이 법률은 통일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채택하는 주 사이에서의 호혜규정을 두고 있다. 호혜규정은 등록에 관련된 규정들에 근거한 것이다. 관리관은 이 통일법을 채택한 다른 주들에서 등재된 등록의 신청서의 부분을 받는 것을 허가하고 있고 이 통일법을 채택한 다른 주에 취해진 등록의 거절, 정지, 취소 또는 갱신의 거절에 관한 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통일 선수 에이전트 법은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문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표 10] 미국 통일 선수 에이전트 법의 구성

내 용	조 문	제 목
법률명	제1조	표제
각 용어의 정의	제2조	정의
에이전트의 업무	제3조	소송 업무
에이전트의 등록	제4조	선수에이전트; 요구되는 등록; 무효계약
	제5조	선수에이전트 등록 ; 양식 ; 요건
	제6조	등록증 ; 발급 또는 거절 ; 갱신
	제7조	등록의 정지, 폐지, 갱신의 거절
	제8조	임시 등록
	제9조	등록과 갱신의 수수료
계약의 방식	제10조	계약의 형식
교육기관과 학생선수에 대한 특별 규정	제11조	교육기관에의 통지
	제12조	학생선수의 철회권
에이전트의 의무	제13조	기록의 보관
벌칙	제14조	금지되는 행동
	제15조	형벌
	제16조	민사구제
	제17조	행정벌

내 용	조 문	제 목
법률해석의 원칙	제18조	적용과 해석의 일관성
전자서명	제19조	국제적 국가적 상행위에 있어서의 전자서명
법의 성격	제20조	독립성
	제21조	법률의 폐지
	제22조	시행일

(4) 주요내용

1) 서

이 법은 제1조에서 법의 제목을 “통일 선수 에이전트 법”이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에이전트 계약, 선수 에이전트, 선수 지도자, 접촉, 인도스먼트 계약, 대학 간 대항 스포츠, 인(人),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 기록, 등록, 주, 학생선수 등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18조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국제 상행위에 있어서의 전자서명(제19조)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의 일부조항이 실효가 되었더라도 기타조항의 계속적인 유효성은 조금도 침해되지 않는다는 부분실효 규정(제20조)이 있다.

2) 에이전트의 등록

선수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법은 일정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수 에이전트 업무를 하기 위해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즉 제4조⁴⁵⁾ (a)에서는 등록을 하게 되면 등

45) International Shoe Company v. Washington, 326 U.S. 310 (1945)에서의 최소 접촉

록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등록 증명서의 발급 없이 선수 에이전트로 활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에 ① 학생선수나 학생 선수를 대표하여 다른 누군가와 시도를 하고 있거나 ② 선수 에이전트로 처음 활동 후 7일 이내에 선수 에이전트 등록 신청을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목적에 대하여 선수에이전트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등록 자격증 없이 업무를 수행한 위의 두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에 하는 에이전트 계약은 모두 무효이며 선수 에이전트 계약으로 인해 받은 어떤 대가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을 할 때에는 주 국무장관이 규정한 양식의 지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1)-(12)에 해당하는 목록의 내용을 제출받아야 한다.

[표 11] 스포츠 에이전트가 주 국무장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⁴⁶⁾

번호	제 출 내 용
(1)	지원자(신청인)의 성명과 지원자의 주 영업지의 주소
(2)	신청인의 회사 또는 피용자의 성명
(3)	신청서 제출 날짜 직전 5년 동안 신청인과 관련된 사업 또는 직업
(4)	지원자에 대한 자기 소개서 (선수 에이전트로서의 정규교육, 선수 에이전트로서 실무 경력, 선수 에이전트로서 지원자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적 배경)
(5)	신원보증인이 되어 줄 수 있는 지원자와 친척이 아닌 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이론에 합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만큼 등록요구를 하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이다. 최소접촉을 확립한(제정한) 각 주에서 에이전트는 등록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B 주에 있는 학생 선수와 접촉한 A 주의 어떤 자는 양 주에서 선수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는 양 주에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Section 4 comment. (Uniform Athlete Agents Act(2000) with Prefatory Note and Comments).

46) Section 5 (a). 이 규정의 취지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선수의 등록과 관련하여 기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Section 5 comment. (Uniform Athlete Agents Act(2000) with Prefatory Note and Comments).

번호	제 출 내 용
(6)	신청서 제출일 직전의 5년 동안 개인을 위해 선수 에이전트로서 활동한 신청인이 일해 준 개인의 성명, 스포츠 마지막 소속 팀
(7)	(A) 선수에이전트 사업에 관하여는, 회사 법인이 아니라면 그 파트너, 멤버, 임원, 매니저, 공동경영자, 공동사업수익배분자 (B) 선수에이전트를 고용한 법인에 관하여는, 임원, 5% 또는 그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8)	신청인이나 (7)에서 정한 자가 이 주에서 부도덕한 행위 또는 중죄에 해당하거나 범죄와 동일시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형사적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
(9)	신청인이나 (7)에서 정한 자가 부실표시, 기만적 표시 또는 사기 표시가 있어서 행정적이거나 법적인 판단을 받았는지 여부
(10)	신청인이나 (7)에서 정한 자가 학교 대항 경기 등에 참여할 때나 학생선수나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대항간의 경기 이벤트를 제재, 중지하거나 그에 대한 부적격 선고가 있었는지 여부
(11)	신청인이나 (7)에서 정한 자가 직업적으로나 전문적 활동으로서 한 행동에 대해 있었던 제재, 중지, 징계조치
(12)	신청인이나 (7)에서 정한 자의 선수에이전트로서의 등록 또는 면허 신청에 대하여 거부, 중단 또는 취소, 갱신 거부가 어떤 주에선가 있었는지 여부

주 국무장관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등록 라이선스(자격증)를 부여하고, 다른 주에서 선수 에이전트로 등록되고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에게는 지원서의 복사본과 함께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제5조 (b)).

다른 주의 선수 에이전트의 경우 이 때 고려할 것은 첫째 이 주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6개월 내에 다른 주에서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최근의 것임을 확인하고, 둘째로 다른 주에서의 신청서가 이 주에서 제출한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정보를 기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로 위증죄의 벌을 받는다는 지원자의 서명이 있을 것을 요한다(제5조 (b)(1)(2)(3)⁴⁷⁾.

47) 제5조 (b)는 통일법을 채택한 주들에서의 신청의 상호효과를 규정(호혜규정)한

선수 에이전트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증 발급이 거부된다(제6조)⁴⁸⁾. 그러한 사유로는 다른 지원신청자들에게 선수 에이전트로서 해온 행동이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행동을 한 경우(제6조 (b))로서 7가지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다. 첫째, 이 주에서 선수 에이전트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심한 도덕적 타락이나 중죄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 지원에 있어 필수적으로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 사기 등 선수 에이전트로서는 해선 안 될 일을 한 경우, 셋째, 신탁 능력을 제공함에 있어 실격판정을 할 만한 행동을 한 경우, 넷째, 제14조 학생선수를 다룰 때 선수 에이전트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다섯째, 어떤 주에서라도 선수 에이전트로서 등록이나 라이선스를 갱신하는 일이 거절되거나 부정, 취소, 중단되었던 선례가 있는 경우, 여섯 번째, (중등)학교간 또는 대학간의 경기에 참가할 때 부적격자로 공시되었거나 제재 및 중단되었던 행동이 선수 에이전트나 교육기관에서 부여하는 결과가 있었던 경우, 일곱 번째, 지원자의 신용, 정직, 청렴에 대한 심히 거스르는 것을 초래한 행동이 있었던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도 주 국무장관은 제6조 (c)에서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며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① 얼마나 최근에 일어난 일인가? ②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전후 상황과 행동의 고의성 ③ 지원자의 다른 행동과의 연관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등록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도 역시 선수 에이전트는 주행정당국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며(이것은 공문서로 취급한다) 본래 등록시 요구되는 모든 문제의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관할권에서 사실상 다른 신청 절차에 따라야 할 에이전트의 필요를 제거한 것이다. 이 법에서 에이전트의 부담을 줄여줄 의도를 가진 이 법에서 규정한 다수의 호혜규정중의 첫 번째이다. 현재의 법률들에서 호혜규정의 부재는 이 통일법을 필요로 하는 주요한 이유이다. Section 5 Subsection (b) comment. (Uniform Athlete Agents Act(2000) with Prefatory Note and Comments).

48) 이 조항은 현재 법률에 의하여 선수에이전트를 등록시킬지의 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다수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게다가, 등록과 면허에 관하여, 통일법을 채택한 주에서 취해진 조치를 고려할 권한은 주 국무장관에게 있다. Section 6 comment. (Uniform Athlete Agents Act(2000) with Prefatory Note and Comments).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제6조 (d)). 또한 등록이나 라이선스 갱신에 대한 지원이 다른 주에 제출한 사람의 양식에 있어 갱신 지원서, 갱신지원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함께 철해두어야 하고 다른 주에서 갱신을 인정하는 지원이 있었다면 이를 수락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에도 다른 주에서 갱신을 인정받는 경우 지원서 제출 6개월 이전에 다른 주에도 복사본을 제출할 것, 그리고 지원자는 그 정보가 실제 다른 주에 보유되었는지를 보증할 것, 대체로 유사하거나 이 주에 제출한 지원서와 요구되는 것들의 내용을 그 지원서가 포함하고 있을 것, 위증일 경우 벌칙을 받겠다는 부분에 서명할 것이 요구된다(제6조 (e)(1)(2)(3)).

이 때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제6조 (f)). 그러므로 주 행정당국은 등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등록의 인정을 중단하고 취소, 거절하여야 하며(제7조 (a)) 이에 대해 선수 에이전트에게 반드시 알린 이후에 하여야 한다(제7조 (b)).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동안에는 일시 등록 증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제8조). 이러한 에이전트 업무를 하기 위해 등록하는 데에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한다. 수수료는 최초등록비용, 다른 주에서 발급한 라이선스 보유자가 자신의 자격증을 보증하여 등록을 할 때 등록신청비용, 갱신비용, 갱신에 대해 다른 주에서 발급한 라이선스 보유자가 자신의 자격증을 보증하여 등록을 할 때 갱신등록비용(제9조 (1)(2)(3)(4))에만 발생하게 된다.

3) 계약의 방식

선수 에이전트가 체결하는 계약의 방식에는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제10조)⁴⁹⁾. 에이전트 계약은 기록으로 하여야만 하며 서명하

49) 이 조항의 취지는 소비자 거래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과 유사한 에이전트 계약의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학생선수의 보호를 규정한 것이다. Section 10 comment. (Uniform Athlete Agents Act(2000) with Prefatory Note and Comments).

거나 또는 양 당사자가 진정한 것임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제10조 (a)). 또한 에이전트 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언급해야만 하거나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계약 그리고 특칙에 의해 선수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학생선수가 지불하여야 하는 수수료 등은 선수 에이전트가 해운 선례에 따르도록 하여 학생 선수만 특별히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제10조 (b)(1)). 둘째, 에이전트 계약에 서명한 선수 에이전트가 등록 또는 재갱신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제10조 (b)(2)). 또한 학생 선수가 상환하기로 한 부분(제10조 (b)(3)), 학생선수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의 내용(제10조 (b)(4)), 계약기간과(제10조 (b)(5)) 집행일(제10조 (b)(6))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볼드체 활자로 규격종이에 써야 하며 뚜렷하게 학생선수가 서명하는 곳에 필수기입 내용⁵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제10조 (c)). 이 조문을 따르지 않는 에이전트 계약은 학생 선수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voidable). 만일 학생선수가 에이전트 계약을 취소하면 학생 선수는 이 계약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불할 필요가 없고 계약체결을 하도록 학생선수를 권유한 선수에이전트로부터 받은 어떠한 대가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제10조 (d)). 선수 에이전트는 서명기록을 제공하거나 에이전트 계약의 진실성을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10조 (e)).

4) 교육기관과 학생선수에 대한 특별 규정

학생선수와 선수 에이전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것은 에이전트에 의해서 또는 학생선수에 의해서 교육기관에게 반드시 공지되어야

50) 학생선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고이다: “이 계약에 서명 한다면,

- (1) 귀하가 하는 스포츠에서 선수학생으로서 경기할 수 있는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 (2) 귀하의 선수 지도자가 있다면, 이 계약체결 후 72시간 내에 귀하와 귀하의 선수 에이전트는 선수지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귀하는 서명한 후 14일 내에 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계약체결의 철회는 선수로서의 적격성을 되찾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한다(제11조). 즉 에이전트 계약 체결 후 72시간 이내 또는 학생 선수가 참가하여야 하는 다음 계획된 경기 이전에 선수 에이전트는 학생 선수가 등록되어 있거나 선수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학생 선수가 소속되어 있다고 믿을 근거 있는 교육기관의 선수 지도자에게 계약의 존재에 대해 기록으로서 통지하여야만 한다(제11조 (a)). 에이전트 계약이 체결된 후 72시간 이내 또는 학생 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있게 되는 다음 경기 이전에, 학생 선수는 자신이 등록된 교육기관의 선수 지도자에게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 (b)). 또한 학생 선수는 에이전트 계약을 계약에 서명한 이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선수 에이전트에게 철회의 통지를 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다(제12조 (a)). 이는 학생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철회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계약할 수 없다(제12조 (b)). 학생 선수가 에이전트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학생 선수는 이 계약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불할 필요가 없고,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학생 선수를 권유한 선수 에이전트로부터 받은 어떠한 대가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제12조 (c)).

5) 에이전트의 의무

에이전트는 주 국무장관으로부터 일정한 기록을 5년동안 보관할 것을 요구받는다(제13조 (a)). 그것은 선수 에이전트에 대한 각각의 성명과 주소, 선수 에이전트가 행한 계약, 에이전트 계약으로 성립되는 학생 선수의 취업이나 고용으로 선수 에이전트에게 발생된 직접적 비용이 그것이다(제13조 (a)(1)(2)(3)). 이 관련기록은 일상적인 업무시간에는 해당관청의 요구에 의해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3조 (b)).

6) 벌칙

선수 에이전트에 대한 제재로는 형사제재, 민사구제, 행정적 처분이 있다(제15조 내지 제17조) 그리고 이 때 선수 에이전트로서 하지 말아

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제14조에 그 태양을 제시하고 있다. 선수 에이전트로서 규제하는 것은 (a) 학생선수와 에이전트 계약이 성립하도록 유도할 의도를 가지는 선수 에이전트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b) 선수 에이전트로서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것이다.

[표 12] 선수 에이전트에 대한 제재(미국 통일선수 에이전트법 제14조)

(a) 학생선수를 유도할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	(b) 선수에이전트로서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1) 물질적으로 거짓 또는 오해할 정보제공 및 거짓약속 등의 일을 하는 것	(1) 등록없이 에이전트 업무 시작하는 것
(2) 계약체결 이전에 학생 선수에게 대가물을 제공하는 것	(2) 제13조의 보관하여야 할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조사거부
(3) 학생 선수나 다른 등록된 선수 에이전트 이외의 어떤 개인에게 대가물을 제공하는 것	(3) 제4조의 등록을 하지 않는 것
	(4) 등록 또는 갱신등록시 정보를 잘못 제공하거나 오해하도록 제공한 경우
	(5) 에이전트 계약시점을 당기거나 늦추는 것
	(6) 학생선수가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때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

그리하여 [표12]와 같은 경우의 경범죄, 사기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선수 에이전트는 형사처벌(제15조)을 받을 수 있으며 \$25,000 이내에서 행정 처분인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제17조).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선수 에이전트의 행동의 결과로 국가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비용 등 교육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제16조 (a)(b)).

이러한 벌칙에 대해서 각 선수협회의 에이전트들은 준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13]은 미국 풋볼리그 선수회에서 선수 에이전트에게 제공한 내용이다.

[표 13] 미국 풋볼 리그 선수회(NFLPA) 에이전트 준수사항

* 자료: 스포츠 비즈니스 제2호 (1998). 미국 스포츠계는 에이전트들의 전쟁터

구 분	내 용
총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전트로서의 신분확인 요청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백히 밝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및 특수교육, 계약 체결 경력, 과거에 대행했던 선수, 프로구단과 관련된 사업 혹은 소속 여부를 ▷ NFL구단과의 개별 계약에서 최고의 성실함과 능력을 보여야 함. ▷ 리그의 경제적 구조와 NFL규약, 기본적인 협상기술, 스포츠관련 법규의 변천 및 기타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해야 함. ▷ 주와 연방 법률 및 에이전트 업무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본 준수사항과 개정안을 준수해야 함.
부 정 행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식으로든지 프로풋볼팀으로부터 재정적인 이익을 얻거나 추구해서는 안 됨. ▷ NFL구단 경영진을 위해 과거에 대행업무를 했거나 혹은 현재에 대행하고 있거나 협력관계에 있는 사실이 있다면, NFL 소속선수의 에이전트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그 경영진의 이름과 직위를 선수에게 문서상으로 알려주어야 함. ▷ 구단과의 협상과정에서 구단측의 기본방침 변화가 있거나 선수회에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거나 구단과 단체교섭 중인 안전에 관련된 선수가 있다면 선수회에 그 사실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함. ▷ 범법행위나 물질적인 부정직한 행위, 사기나 속임수, 대행 실수, 에이전트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 효과적인 대리인 역할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됨.

구 분	내 용
부 당 한 청 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선수의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 선수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그에 상당하는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됨. ▷ 선수에이전트로 추천받는 대가로 특정인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그에 상당하는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됨. ▷ 어떤 선수의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 누구에게라도 거짓 정보나 잘못을 유도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됨. ▷ 실제로는 없는 자격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어떤 이름이나 타이틀도 사용해서는 안 됨. ▷ 개인 용도나 이익을 위해 어떤 구단이나 NFL 사무국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주어서는 안 됨.

2. 캘리포니아 선수 에이전트 법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 2005)

(1) 법의 구성

이러한 통일선수 에이전트 법은 35개 주, 워싱턴 D.C. 그리고 U.S Virgin Islands에서 시행되고 있다.⁵¹⁾ 그러나 캘리포니아 및 몇 개의 다른 주는 선수 에이전트를 규정하기 위하여 UAAA를 채택하지 않고 각각의 에이전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의 선수 에이전트 법은 UAAA와는 많은 중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⁵²⁾ 그리고 캘리포니아 선수 에이전트 법은 UAAA보다는 선수에이전트를 통제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가혹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⁵³⁾ 이러한 이유로 캘리포니아에이전트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51) 2006년 6월 12일 현재. <http://www1.ncaa.org/membership/enforcement/agents/uaaa/history.html> (2006년 11월 방문)

52) Robert P. Baker,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 DEPRIVING STUDENT ATHLETES OF EFFECTIVE LEGAL REPRESENTATION, 12 UCLA Ent. L. Rev. 267(271).

53) id, 299.

캘리포니아 스포츠 에이전트 법은 The Miller-Ayala Athlete Act(2005)⁵⁴⁾라는 명칭 아래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선수 에이전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4]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2005)의 구성

조 문	구 분	내 용
18895조	표제	이 법의 명칭
18895조 2	정의	정의
18896조	선수에이전트 등록에 관한 사항	선수에이전트에 관한 정보 ; 국무장관에 제출서류, 내용
18896조 2		등록된 내용의 변경 방식
18896조 3		서식
18896조 4		공개외 제외 ; 선수에이전트의 다른 사업
18896조 6		선수 또는 가족과 접촉한 선수에이전트의 서면 통지
18896조 8		신고 수수료
18897조	선수 에이전트의 일반적 의무	에이전트 계약 ; 형식과 내용
18897조 1		에이전트 계약 ;
18897조 2		선수의 급료의 수령인으로서 선수 에이전트 ; 신탁계좌 개설 ; 공탁요건
18897조 23		기록 보유 의무
18897조 27		동종 스포츠에서 관련한 단체에서의 소유 또는 재정적 이익 ; 금지
18897조 3		금융서비스 또는 투자 권고 ; 공개요건
18897조 33		불법 계약 조항 또는 조건 ; 피용자가 되도록 하는 불법적 시도
18897조 37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18897조 4		선수에이전트가 이용하는 모든 광고 ; 이름과 영업지
18897조 43		과업관련 정보 제공 의무
18897조 5		사후(事後)계약

54) Cal. Bus. & Prof. Code §§ 18895 - 18897.97(2005). 이 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 문	구 분	내 용
18897조 6	학생 선수와의 계약에 있어 특칙	학생 선수에게 금품 제공 ; 금지
18897조 63		학생 선수와의 계약시 의무(1)
18897조 67		금품제공 ; 금지
18897조 7		학생 선수와 계약시 의무(2)
18897조 73		학생 선수와 계약시 계약의 방식
18897조 77		학생 선수의 계약 취소의 효력
18897조 8	제재와 벌칙	민사소송
18897조 83		소송절차
18897조 87		분쟁시 담보액
18897조 9		이 법률에 따르지 않은 에이전트계약의 효력
18897조 93		형벌
18897조 97	규칙과 규정	적용, 증보, 및 폐지

(2) 주요내용

1) 서

캘리포니아 스포츠 에이전트 법인 The Miller-Ayala Athlete Act(2005)는 캘리포니아 비지니스와 직업에 관한 법률 부분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스포츠 에이전트 관련 부분은 18895조 이하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우선 법의 제목을 “The Miller-Ayala Athlete Act(2005)”라고 명명한 뒤 정의를 내리고 있다.⁵⁵⁾

이 법은 UAAA와는 중요 부분에서 많이 다르지만,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대부분 내용은 미국 통일선수 에이전트법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

미국의 법제는 대륙법의 체계와 같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확연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법률에 등록과 같은 행정법, 형·민사상 책임 등이 동시에 규정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 참고할 경우 완전

55) Cal. Bus. & Prof. Code § 18895-18895.2 (2005).

한 母法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2) 에이전트의 등록

캘리포니아에서 선수에이전트로 활동하기에 앞서, 어느 누구도(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의 활동하고 있는 회원조차도), 주 국무장관에 등록을 하여야하고, 이 법 제18896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⁵⁶⁾

먼저 등록시에 일정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a) 성명, 주소, 사회 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b) 선수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전부, (c) 캘리포니아에서 선수 에이전트 업무를 하는 사업자의 주소와 선수 에이전트의 성명, (d) 지원서 제출시로부터 2년 동안 수행했던 관련 사업과 업무 내용들, (e) 사기, 경범죄 등에서 유죄판결, (f) 선수 에이전트가 제공할 보험명과 수령액 또는 선수 에이전트 업무 안정성을 담보하는 재정능력, (g) 이전에 분쟁이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해 참작할 만한 다른 사유들, (h) 학교 대항전 또는 학교 대항 이벤트 참가시 발생한 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 (i) 선수 에이전트나 경기 에이전트로서 일해 온 당시 고객의 성명 (j) 선수 에이전트와 관련 있는 선수의 성명 (k) 적어도 세 명의 참고인 (l) 선서 또는 자격증명, 모든 형식적 훈련 완성이나 특별영역에서의 업무 수행 절차 방식 : 계약, 계약 협상, 불이행시 방식, 중재나 계약 분쟁에 대한 민사적 해결 (m) 고용, 파트너, 투자자, 유관기관 또는 수익배분자나 다른 방식에 있어 최종적으로 선수 에이전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이익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성명과 주소, (n) 선수 에이전트 사업을 수행할 때 들거나 모아야 하는 자금 계획 등이 그것이다.

이 때 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7일 이내에 해당 정보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이 제출될 때까지 효력이 없다.⁵⁷⁾ 이 때 등

56) Cal. Bus. & Prof. Code § 18896 (2005).

록시 주 국무장관은 “위증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데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선수 에이전트에게 다짐을 받아야 하며, 독점적이고 단독적인 선수 에이전트의 정보를 공개를 요구하지는 말아야 한다.⁵⁸⁾

또한 주 국무장관은 등록된 선수 에이전트와 관련된 자의 정보를 주 국무장관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선수 에이전트는 이러한 등록 행정 업무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주 국무장관에게 지불해야 한다.⁵⁹⁾

3) 계약의 방식

미국 통일 선수 에이전트법과 마찬가지로 선수 에이전트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이전트와 선수 사이에서의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행하여야 할 서비스를 규정하고 부담하여야 할 비용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⁶⁰⁾이 조항은 현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수수료에 대한 계약을 규율하는 규정 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이다.⁶¹⁾

이 원칙에서는 아래 첫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보다 폰트를 2포인트 키워서 볼드체 활자로 잘 보이게 프린트 하여야 하며 그 곳에 “이 선수 에이전트는 영업 및 직업법 제8부 제2.5장(제18895조부터 시작)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자료에 있는 공표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선수를 위한 다른 보호들도 포함한다. 필요한 정보의 수집은 이 에이전트계약상의 용어나 조건에 관하여 또는 선수에이전트의 권

57) Cal. Bus. & Prof. Code § 18896.2 (2005)

58) Cal. Bus. & Prof. Code §§ 18896.3 -제18896.4 (2005)

59) Cal. Bus. & Prof. Code §§ 제18896.6, 18896.8 (2005)

60) Cal. Bus. & Prof. Code § 18897 (2005).

61) Cal. Bus. & Prof. Code §§ 6147-6148 (2005) ; Rule 4-200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of the State Bar of California (2005).

한에 관하여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 의한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로 기술하여야 한다.

4) 선수 에이전트의 의무

선수 에이전트의 의무에 대해서는 학생 선수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때와 일반 선수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선수인 경우 5)에서 다루기로 하고 4)에서는 8개 조문에 걸친(18897조 23 내지 18897조 5)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기록보관의 의무

먼저 The Miller-Ayala Athlete Act(2005)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기록은 선수 에이전트에 고용되어 있는 각 사람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고 있는 수수료이다. 그리고 이 정보는 7년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⁶²⁾

나. 뇌물 수수의 제한

선수 에이전트는 동종의 스포츠와 연관되어 있는 타인에게서 재정적 이익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선수 에이전트는 오직 고객인 선수를 위해 인도스먼트 계약, 재정적 서비스 계약, 전문적 스포츠 서비스 계약 협상을 시도하거나 잠재적이고 사실적인 고용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⁶³⁾ 동조를 규정함으로써 선수 에이전트는 결코 자신의 고객인 선수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익에 대한 공시의무

선수 에이전트가 선수가 재정적 투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에 대해 투자하게 되는 경우 선수 에이전트는 수수료로 투자의

62) Cal. Bus. & Prof. Code § 18897.23 (2005)

63) Cal. Bus. & Prof. Code § 18897.27 (2005).

이익 중 일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⁶⁴⁾

라. 법률 준수 의무

선수 에이전트는 법을 위반하는 일을 한다거나, 법을 위반하여 고용을 해주겠다는 조항 또는 조건을 담은 계약을 고의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⁶⁵⁾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 적절한 서비스 제공 의무

선수 에이전트, 선수 에이전시의 대표, 기업의 피용자는 어떤 과오, 부당이득, 오신할 만한 정보, 설명, 공지, 광고를 공표하거나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나 고용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거나 그릇된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⁶⁶⁾

바.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선수 에이전트는 자신을 광고할 때 선수 에이전트의 이름과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하여야 하며⁶⁷⁾ 파업, 축출 또는 다른 노동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지 없이 업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⁶⁸⁾

사. 선수 이익 상반 금지 의무

선수 에이전트는 자신의 고객의 동종 스포츠와 연결된 전문 스포츠 리그, 팀, 다른 기관, 대표자, 피용자, 노조나 선수 기구에게 수수료를 분할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⁶⁹⁾ 이는 선수의 이익상반이 될 수 있는

64) Cal. Bus. & Prof. Code § 18897.3 (2005).

65) Cal. Bus. & Prof. Code § 18897.33 (2005).

66) Cal. Bus. & Prof. Code § 18897.37 (2005).

67) Cal. Bus. & Prof. Code § 18897.4 (2005).

68) Cal. Bus. & Prof. Code § 18897.43 (2005).

69) Cal. Bus. & Prof. Code § 18897.47 (2005).

대리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 예정 계약의 금지

선수 에이전트는 계약 체결 이후에 오는 동종의 에이전트 계약, 인도스먼트 계약 또는 전문 스포츠 서비스 계약이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미래에 효력을 주는 에이전트 계약, 인도스먼트 계약, 또는 전문 스포츠 서비스계약을 성립하게 하거나 체결할 수 없다.⁷⁰⁾

5) 학생선수가 고객인 경우의 특칙

선수 에이전트 또는 선수 에이전시의 대표나 피용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돈이나 유사한 선물 등을 학생 선수에게 제공하거나 수여 하여서는 안 된다(제18897조 6). 마찬가지로 학생 선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⁷¹⁾에게도 이러한 금품 등이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 선수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 또는 학생 선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등 선수가 허가되었거나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의 주요 행정담당자에게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만일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선수 에이전트, 선수 에이전시의 대표나 피용자에게 접촉하고자 한다면 그때서야 선수 에이전트, 선수 에이전시의 대표나 피용자는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

처음으로 학생 선수와 관련하여 접촉이 시작되면 이러한 사실을 담임, 교장, 학생이 소속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행정담당자에게 그러한 접촉 사실을 알려야 한다.⁷²⁾ 이 때 서면의 내용이나 필요한 공지 등은 18896.6 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

70) Cal. Bus. & Prof. Code § 18897.5 (2005).

71) 학생선수의 배우자, 부모, 양부모, 후견인,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숙모, 삼촌 또는 가까운 사촌 또는 결혼으로 구성하여 관계를 가진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선수와 같은 장소에 사는 룸메이트 등 선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

72) Cal. Bus. & Prof. Code § 18897.63 (a),(b),(c) (2005).

학, 대학 또는 학생 선수가 관련되어 있는 교육기관이 각각 단독적인 범위가 있는 경우 이 때 계약은 그 범위 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⁷³⁾ 이때에도 학생 선수 등 관련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⁷⁴⁾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도 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⁷⁵⁾ 계약서는 알아보기 쉽게 볼드체로 10포인트 정도의 글씨 크기로 서명 가까이에는 “학생 선수에게의 경고” 조문을 삽입하여야 한다.⁷⁶⁾ 학생 선수는 15일 이내로 철회 의사가 있다면 이를 철회하여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⁷⁷⁾

6) 제재와 벌칙(Enforcement)

이 법은 손해배상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선수에이전트가 이 법을 위반하면 최소한 50,000달러의 과징금을 받는다. 그러나 더 많은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⁷⁸⁾. 선수 또는 교육기관은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해를 선수에이전트에게 청구할 수 있다.⁷⁹⁾ 예를 들면, 대학이 이 법을 위반한 에이전트의 행위로 인하여 부적격자가 되어 대학 풋볼 경기의 출연비 750,000달러의 손해를 입은 경우, 대학은 에이전트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⁸⁰⁾ 선수 에이전트는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⁸¹⁾ 이 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에이전트 계약은 무효이다.⁸²⁾ 그리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

73) Cal. Bus. & Prof. Code § 18897.63 (d),(e) (2005).

74) Cal. Bus. & Prof. Code § 18897.67 (2005).

75) Cal. Bus. & Prof. Code § 18897.7 (2005).

76) Cal. Bus. & Prof. Code § 18897.73 (2005).

77) Cal. Bus. & Prof. Code § 18897.77 (2005).

78) Cal. Bus. & Prof. Code § 18897.8 (2005).

79) Cal. Bus. & Prof. Code § 18897.8 (2005).

80) Robert P. Baker,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 DEPRIVING STUDENT ATHLETES OF EFFECTIVE LEGAL REPRESENTATION, 12 UCLA Ent. L. Rev. 267(277).

81) Cal. Bus. & Prof. Code § 18897.87 (2005).

82) Cal. Bus. & Prof. Code § 18897.9 (2005).

우 5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1년의 징역 또는 병과 된다. 법원은 이 법의 위반으로 유죄가 선언된 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에이전트의 업무집행을 정지 하여야 한다.⁸³⁾

3.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

(1) 서 설

FIFA(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국제 축구 연맹)는 국제기구로서 축구라는 특정 종목에 있어 선수 에이전트 규정을 제정하여 배타적인 선수 에이전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FIFA에 2002년 당시 204개국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47년 6월에 가입하여 있고 축구라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FIFA의 규정은 범세계적인 규정이 아닐 수 없다. FIFA는 축구라는 특정 종목에 대한 국제기구로서 축구 경기에 있어 선수 에이전트 규정과 경기 에이전트 규정을 두고 있다. FIFA의 에이전트는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여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예와 재정능력을 중시하는 특징을 뚜렷이 나타낸다.

(2) 규정의 취지

이 규정은 서문에 앞서 “FIFA 집행위원회는 2000년 12월 10일 회의를 통해 이 규정을 통과” 시킨다고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취지를 서문에서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이 규정은 한 국가 협회 내에서도 국가 협회간의 선수의 이적을 담당하는 선수 에이전트 활동에 관한 것이다.

둘째, 각국 협회는 다음의 지침에 기초하여 선수 에이전트에 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FIFA 선수 위원회의

83) Cal. Bus. & Prof. Code § 18897.93 (2005).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의 규정들에 부합하여야 한다.

셋째, 이러한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각국 협회의 자국법(自國法)이나 국제조약뿐만 아니라 FIFA 정관과 규정도 참조하여야 한다.』가 그것이다.

(3) 구성내용

1) 서 설

이 규정은 일반원칙, 라이선스의 발급, 선수 에이전트 자격자의 권리와 의무, 선수의 의무, 클럽의 의무, 특별조항, 분쟁, 경과 규정, 부칙으로 하여 총 28조로 구성되어 있다. 축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행적인 규정일 뿐 아니라 엄격하게 품위 유지, 재정능력 등의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법제를 제정하기 위해 특정 종목의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표 15]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의 구성

조 문	내 용	항 목
제1조	선수 에이전트의 일반원칙	일반 원칙
제2조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지원자격	라이선스의 발급
제3조	지원신청자의 독립성	
제4조	국가협회의 지원자격 확인 조사의무, 지원시험	
제5조	국가협회의 시험제출 절차	
제6조	지원자의 보험가입의무	
제7조	보험 미가입시 은행예치의무	
제8조	행동규범 준수 의무	
제9조	공동 보험 가입 자격	
제10조	라이선스 양도 금지	

조 문	내 용	항 목
제11조	선수 에이전트의 권리	선수 에이전트 자격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선수 에이전트 계약의 방식	
제13조	선수 에이전트의 법인 운영	
제14조	선수 에이전트 자격자의 준수사항	
제15조	선수 에이전트에 대한 제재	
제16조	선수의 의무(유자격자 이용의 의무)	선수의 의무
제17조	선수의 의무(무자격자 이용시의 제재)	
제18조	클럽의 의무	클럽의 의무
제19조	클럽의 제재	
제20조	선수 에이전트의 활동 종료	특별규정
제21조	국가 협회의 관리의무	
제22조	분쟁시 해결	분쟁
제23조	이전 라이선스의 경과 규정	경과규정
제24조	보험의 경과 규정	
제25조	분쟁에 대한 경과 규정	
제26조	집행위원회의 권한	부칙
제27조	영어판 우선	
제28조	시행일	

2) 일반 원칙

선수와 클럽은 다른 선수와 클럽과의 협상시에 FIFA 선수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소지한 선수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제1조 제1항). 선수 에이전트는 대가를 받으며 선수가 어떤 클럽과 노동 계약관계를 맺도록 하거나 두 개의 클럽이 선수이적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자연인이다(제1조 제2항). 그러므로 선수와 클럽은 라이선스없는 무자격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선수 에이전트 무자격자라고 할지라도 선수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주거국의 변호사인 경우에는 에이전트활동을 할 수 있다(제1조 제3항).

3) 라이선스의 발급

라이선스의 발급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우선 선수 에이전트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 협회에 서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지원자는 평판이 훌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될 수도 있다. 또한 자연인만이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한 지원자가 FIFA, 연맹, 국제협회, 클럽이나 이런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직책을 가진 자여서는 안 된다(제3조). 국가협회는 지원자의 지원서를 제출받으면 제2조와 제3조의 전제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조사하고(형식적 심사) 이것이 통과되면 필기시험을 치른다(제4조 제2항). 시험은 1년에 두 번, 전세계적으로 같은 날짜에 3월과 9월에 치루어진다(제5조 제1항, 제2항).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규정 부록 A에 의하고 응시료를 수수할 수 있다(제5조 5항).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국 내 보험사에 전문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의 내용을 국가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국가협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100,000 스위스 프랑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되(제7조 제1항) 이 금액이 부족할 경우 다시 예치될 때까지 자격은 정지된다(제7조 제3항).

그 밖에도 선수 에이전트는 행동 규범에 대해 서명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제8조 제1항, 제2항) 국가협회로부터 공식인가를 받고 직업알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선수 협회는 선수 에이전트와 공동으로 국외 보험사에 공동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 라이선스 소지자는 해당 선수 협회의 소속된 국민이어야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제2항). 국가협회는 지원자가 시험에 합격하고 전문책임보험 또는 은행예치보증금에 대한 조건이 만족되었고 행동규범에도 서명하였다면 라이선스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FIFA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이 자격은 유효기간이 없으며 축구에 한하여 세계 어디서나 활동이 가능하다(제10조 제2항). FIFA는 세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에이전트의 리스트를 공식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며(제10조 제3항) 협회 공인 선수 에이전트라는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4항).

4) 선수 에이전트 자격자의 권리와 의무

선수 에이전트 자격자는 a) 클럽과 계약이 없거나 계약이 종료된 모든 선수들과 접촉할 수 있는 권리(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대한 FIFA 규칙 제12조, 제13조 참고), b) 협상이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선수나 클럽의 이익을 대표할 권리, c) 권리를 위임한 선수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 d) 권리를 위임한 클럽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 그리고 에이전트 서비스를 사용할 때 계약서에 일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수나 클럽과는 서면계약을 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계약체결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제12조 제2항). 또한 에이전트 비용은 직접 지불하여야 하며(제12조 제3항) 에이전트에 대한 보상금은 선수 고용계약 당시 체결한 연간 총 기본수입을 근거로 산출한다(제12조 제4항). 지불의 시기에 대해서도 일시불로 할 것인지 계약년도 말에 할 것인지 기술하여야 하며(제12조 제5항) 만일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선수 에이전트가 같은 등급 안에 기술되는 선수의 기본 수입 합계 5%를 받을 수 있다(제12조 제7항). 다만 클럽에 대해서는 언제나 일시불로 지급받아야 하며(제12조 제8항) 표준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2조 제9항). 또한 보조규정을 삽입할 수는 있으나 계약서는 4통이 작성되고 양자가 모두 공식서명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 외에도 자국 협회나 선수 또는 클럽이 속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 제10항). 그밖에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후견인의 동의하에서만 계약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제12조 제11항). 선수 에이전트는 법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제13조) a) 해당 협회, 연맹, FIFA의 정관과 규정에 맞게 활동할 것, b) 에이전트의 활동의 결과에 따라 모든 거래는 전에 사용한 정관과 규정에 부합할 것, c) 선수의 계약 만료 전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포기하도록 선수를 설득할 목적을 가지고 다른 클럽과 계약 하에 있는 선수 접촉의 금지, d) 이적 협상이 일방만을 대리할 것, e) 협회는 FIFA의 해당 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 모든 필요 정보와 서류를 제출할 것, f) 에이전트가 관련된 모든 계약서에 그의 성명, 사인, 고객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g) 해당국가의 고용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제14조). 만일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조치⁸⁴⁾를 받을 수 있다(제15조).

5) 선수와 클럽의 의무

선수는 라이선스가 발급된 선수 에이전트 서비스만을 이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계약서에 이를 정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국가 내 이적이거나 국가간 이적일 경우 무자격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협회의 재량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결과로 생겨나는 분쟁에 있어서 선수는 제재조치⁸⁵⁾를 받을 수 있다.

클럽은 선수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른 클럽에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클럽은 금전을 해당 클럽에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에이전트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되며 제재조치⁸⁶⁾가 취해질 수 있다.

84) a) 견책, 주의, 경고, b) 벌금, c) 자격정지, d) 자격취소 제재 조치는 병합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

85) 견책, 주의, 경고, 최소 일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최대 12개월 자격정지 제재 조치는 병합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

86) a) 견책, 주의, 경고, b) 해당 이사회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자격정지 c) 최소 이만 스위스 프랑(CHF 20,000)의 벌금 d) 최소 3개월의 국내나 국제간 선수이적 업무 정지

6) 특별규정 및 분쟁처리

에이전트업무를 종료하고 싶은 경우 라이선스를 반납할 수 있으며 (제20조) 행동 규범에 대해서는 선수 지위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할하도록 한다(제21조). 분쟁이 생긴 경우 해당 국가협회는 이를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에이전트 활동에 대한 이의 제기의 내용인 경우 사건 발생 2년 내에 또는 에이전트가 활동을 종료한지 6개월 이내에 FIFA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22조).

7) 기 타

1995년 12월 11일자 이후로 발급된 FIFA 라이선스 소지자는 새로운 라이선스로 갱신하여야 하고(제23조 제1항) 이러한 라이선스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6개월의 과도기를 넘긴 경우에는 시험을 통해 새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한다(제23조 제2항). 또한 그동안 스위스 은행에 보증금을 예치하는 규정밖에 없었으나 전문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가입한 경우 해당 은행보증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FIFA 집행위원회는 모든 사항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제26조)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판에 불일치 내용이 있을 경우 영어판이 우선한다(제27조) 그리고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제28조).

4. 검 토

선수 에이전트와 관련한 입법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수 에이전트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등록절차와 규제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선수 에이전트 관련 법규에서는 ‘학생 선수’에 대한 특칙과 선수 에이전트 등록시에 요구되는 내용 및 계약 체결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반면, FIFA 선수 에이전트

e) 국내나 국제간의 축구 활동 정지, 제재 조치는 병합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

는 일정한 보증금을 예치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재정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의 능력과 명예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프로 스포츠 산업에 있어 선수 에이전트와 관련하여 위 입법례는 스포츠 산업의 공정질서를 위한 윤리 및 등록에 관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각 내용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FIFA의 경기 에이전트 제도

1. FIFA 경기 에이전트 규정

(1) 규정의 취지와 구성

경기 에이전트는 경기를 주선하는 전문가로서, FIFA의 경기에이전트규정은다른 국가간 또는 클럽 팀 등과의 경기를 주선하는 에이전트의 업무를 관할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 경기에이전트규정은 원칙, FIFA 라이선스, FIFA 라이선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분쟁, 활동의 종료, 경과, 부칙 등 총 2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6] FIFA 경기 에이전트 규정의 구성

조 문	내 용	내 용
제 1 조	경기 에이전트의 일반원칙	원칙
제 2 조	경기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라이선스 보유 의무	
제 3 조	연맹과 경기 에이전트	
제 4 조	라이선스의 신청	FIFA 라이선스
제 5 조	국가협회의 책임	
제 6 조	선언 의무	
제 7 조	지원서 제출	
제 8 조	보험가입의무	

조 문	내 용	내 용
제 9 조	보험 미가입시 은행예치의무	FIFA 라이선스
제10조	FIFA의 라이선스 발급	
제11조	라이선스의 귀속	
제12조	라이선스 양도 금지	
제13조	경기 주선의 독점적 권한	FIFA 라이선스에 따른 본래의 권리와 의무
제14조	클럽의 경기주선 동의획득	
제15조	경기 에이전트의 권한	
제16조	위임의 확인	
제17조	계약의 방식	
제18조	계약의 필수 내용	
제19조	수수료의 제한	
제20조	FIFA의 개입권한	
제21조	FIFA 선수지위위원회의 역할	
제22조	분쟁시 해결	
제23조	활동의 종료	활동의 종료
제24조	보험의 경과 규정	경과규정
제25조	분쟁에 대한 경과 규정	
제26조	집행위원회의 권한	부칙
제27조	시행일	

(2) 내 용

1) 원 칙

경기를 주선하기 위한 에이전트 고용은 허가 되며, 이 때 반드시 FIFA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한다(제1조, 제2조). 동일한 연맹에 속하는 팀 사이의 경기를 주선하는 에이전트는 당해 연맹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연맹은 독자의 라이선스를 발급할 권한을 갖는다.

연맹이 이러한 라이선스 발급을 하는 경우, 그 연맹 내에 주소지나 사무실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기 에이전트는 당해 연맹으로부터 라이

센스를 이미 취득하고 있지 않은 한 FIFA 경기 에이전트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맹이 위의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기 에이전트는 FIFA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제3조).

경기를 주선하기 위하여 FIFA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FIFA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신청은 자연인만이 할 수 있으며 클럽은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없다(제4조).

장래 경기 에이전트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의 주소지 또는 사무실소재지가 있는 국가협회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후보자가 훌륭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 ‘지원자가 에이전트로 활동하는데에 대하여 반대가 없다’는 확인을 서면으로 하여 동봉하여야 한다(제5조).

경기에이전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서에 FIFA의 경기 에이전트 규정 및 FIFA 정관의 관련 규정들을 신뢰하고 준수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제6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야 FIFA 사무국은 FIFA 선수 지위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제 7조). FIFA의 경기에이전트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선수에이전트와 마찬가지로 전문(직업)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FIFA사무국에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험은 경기에이전트가 자신의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에게 끼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증서는 경기에이전트의 업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때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액은 최소 200,000 스위스프랑(CHF)이며 다른 통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각 경기 에이전트는 그의 총매출에 따라 보다 높은 액수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이 전문책임보험은 보험의 존속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보험의 종료 후에 제기된 청구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전문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스위스은행에 100,000 CHF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다른 조건을 충족하고 전문책임보험증서를 제시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은행에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는 한 라이선스를 발급하여야 한다(제10조). 그러나 라이선스는 양도할 수 없다. 유통,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상업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제12조).

2) FIFA 경기 에이전트 자격자의 권리와 의무

FIFA 라이선스 소지자는 여러 연맹에 속하는 클럽팀이나 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 또는 선수권 경기를 주선하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제13조). 여러 국가협회에 속하는 클럽들 사이에서 경기를 주선하고자 하는 클럽은 당해 국가협회로부터 동의를 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제14조). 클럽들 사이 또는 국가협회 사이 혹은 클럽과 국가협회간에 직접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최종적으로는 권한 있는 에이전트에 의하여 주선된 경기만이 원칙적으로 공식 경기로 인정된다(제15조). 경기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2통의 계약서를 남겨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경기 에이전트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8조). a) 계약당사자의 기초생활비와 여행비, 숙박비용 b) 계약당사자들에게 발생한 순수배상금(모든 비용, 수수료, 세금의 공제 후) c) 경기가 불가항력으로 취소된 경우 적용하여야 할 합의 d) 계약에 따라 경기에 참가하여야 할 선수가 팀에 출정하지 않는 경우(불가항력의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할 합의 e) 관련 당사자들이 이 에이전트 규정의 조항에 대하여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 사실

이 때 경기 에이전트가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는 협상이 성사되는 금액의 25%가 최대한이며(제19조 제1항), 만일 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협상이 성사된 금액의 10%를 그 보상으로 한다(제19조 제2항).

3) 분 쟁

만일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FIFA선수지위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하고 (제22조 제1항) 각 경기 에이전트의 분쟁은 등록되어 있는 협회에도 책임이 있으며(제22조 제2항) 만일 사건이 종료 후 2년이 경과하거나 경기 에이전트 활동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FIFA선수지위 위원회는 더 이상 분쟁에 대해고려하지 않는다(제22조 제3항).

4) 활동의 종료

활동을 종료한 경기 에이전트는 그의 라이선스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의 일이 완전히 종료할 때까지는 전문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제23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경기 에이전트는 업무 종료 이후에 생겨나고 경기 에이전트로서 활동한 일로부터 야기된 어떤 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3조 제3항).

2. 검 토

경기 에이전트는 경기를 주선하고 해당 경기와 관련된 계약을 교섭, 체결하고 경기상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전문 영역을 가진 스포츠 에이전트의 직무라고 할 수 있다.

경기 에이전트와 관련하여서는 FIFA의 경기 에이전트 이외에 다른 입법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FIFA 경기 에이전트 규정을 살펴보면 FIFA의 선수 에이전트 규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업무 영역에 대한 배타성과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경기에이전트는 선수 에이전트의 업무를 중심으로 이해되던 스포츠 에이전트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스포츠 고유법의 규정을 선례로 삼을만하다 하겠다.

제 4 장 스포츠 에이전트 법의 제정방향

제 1 절 스포츠 에이전트 법의 의의

1. 스포츠 에이전트 법의 의의

스포츠 에이전트는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또는 스포츠 경기업과 스포츠 마케팅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세계적으로 프로 스포츠가 활성화됨에 따라 스포츠 경기업의 규모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고 그로 인한 스포츠 마케팅이 활성화되어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 이러한 스포츠 산업의 주역이 되어야 할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스포츠 선수들은 자신의 경기 역량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수들은 구단이 승인한 협회의 자치법규에 매여 스포츠 선수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스포츠 선수의 대리인으로서 스포츠 선수가 프로 리그에 있어서 그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산업에서 일어나는 마케팅 효과를 중점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관중에게는 질 좋은 경기를 제공하고 스포츠 선수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은 동일 법 안에서 스포츠 에이전트의 등록과 일정 활동에 관한 규제가 함께 규정됨으로써 스포츠 영역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입법이 될 필요가 있다.

2. 스포츠 에이전트 법의 목적과 효력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이 제정되는 경우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필기시험을 치룬 후, 해당 보험에 가입하고 연수를

거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등록과 함께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 에이전트로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제재와 더불어 일정한 연수과정에서 스포츠 산업에 있어 해당 직업의 위치나 직업윤리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선수의 권익 보호와 동기 부여로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으로서 스포츠 선수들의 기량을 확대할 뿐 아니라 스포츠 영역에 있어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계약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러한 이유로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스포츠 에이전트 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스포츠 에이전트 에 관한 법의 제정은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근거로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스포츠 에이전트 법 제정시의 주의점

1.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지위

스포츠 에이전트는 일정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선수를 협회 또는 단체, 인도스먼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등에게 선수를 소개하고 원만하게 교섭하여 계약 체결을 성사시키는 대리인으로서 선수 에이전트의 업무가 대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수 에이전트의 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 에이전트 등 기타 스포츠 영역 전반에서 이러한 대리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위임을 받고 (위임계약적 성질) 일정한 계약의 성사로서 급부를 수령하며 (도급계약적 성질) 법인인 에이전시에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고용계약적 성질) 점에서 전형계약을 혼합한 성질을 가지며, 일정한 중개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비전형계약인 중개계약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예로서 국내에서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공인 중개사 제도와 등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법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통신판매 중개인의 의무를 앞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스포츠 에이전트가 스포츠 산업에서 차지하게 될 앞으로의 위치를 미루어 짐작할 때 공인 중개사 제도와 같은 등록과 규제를 함께 입법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요청된다. 다만 미국의 법제나 스포츠 고유법인 FIFA 규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정한 라이선스를 유효기간을 두고 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즉 스포츠 에이전트는 스포츠 산업 진흥의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스포츠 산업 진흥법(안)에 일부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자격 등록을 요구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적절하다.

이 때 스포츠 에이전트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라이선스의 통합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가 선수 에이전트 업무를 주로 이루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연봉 계약 대행 서비스, 인도스먼트 계약 대행 서비스와 자문 서비스가 주를 이룰 때 이러한 업무가 중복되는 현행 스포츠 마케터와 스포츠 경영관리사의 업무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 에이전트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할 때 스포츠 마케터와 스포츠 경영관리사의 라이선스의 명칭을 변경할 것인지 또는 스포츠 에이전트를 흡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건으로는 스포츠 마케터와 스포츠 경영관리사를 폐지하고 스포츠 에이전트를 자격화하되 기존의 스포츠 경영관리사를 스포츠 에이전트로 편입하는 식의 입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진다. 스포츠 경영관리사는 지나치게 스포츠 영역 전반에 있어 모든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복잡하여 실제 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지 아니할 수 없으며 스포츠 마케터는 스포츠 에이전트 업무 영역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스포츠 에이전트가 국제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점에도 무난한 점을 미루어 일정한 경과 규정을 두어 이를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이 때 각 대학의 대학 또는 대학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학계의 연구방향을 공고히 하는 등 스포츠 에이전트 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여러 가지 이익을 함께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 스포츠 에이전트 법 제정시 필수 포함 내용

스포츠 에이전트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할 경우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이 최초로 발생하였고 산업으로 가장 발전시킨 미국의 통일선수 에이전트법(2000)과 그 중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의 선도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The Miller-Ayala Athlete Act(2005)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주 행정당국이 스포츠 에이전트를 등록받아 직업적 인가를 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에이전트 업무를 할 경우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 에이전트 업무에 대해 계약의 형식을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첫 페이지에 일정한 내용을 획일적으로 프린트 해놓을 것을 요구하는 등 에이전트 계약을 신중히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에이전트에게 해당 기록을 철저히 보유하게 하고 교육기관과 학생 등 에이전트 업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 배상 의무를 지며 그밖에 형사 처벌 및 행정벌 등의 조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에도 이 법률의 명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뒤 해당 법률에서 언급되는 용어를 정의

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 규정을 두어 주 행정당국이 일정한 스포츠 에이전트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수수료 등 등록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계약의 방식은 서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정한 업무상 기록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밖에 학생선수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때 접촉, 계약의 체결 등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알려야 할 뿐 아니라 해당 학생선수의 권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미국 법률을 참고하여 학생 선수의 교육 기본권도 고려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스포츠 에이전트로서 금지된 행동을 한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 제재가 가능할 수 있으며 민사 손해 배상인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을 요구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표제, 정의, 등록, 계약의 방식, 학생선수에 대한 특별규정, 에이전트의 의무, 제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의 분류

특정 스포츠의 경우 국제기구로부터 부여된 에이전트 자격이 있는 경우 이를 국내의 법규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에이전트 중 선수 에이전트는 해당 종목의 룰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고유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각 종목마다 에이전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국내 스포츠 국가법이 이를 배척할 경우 해당 종목에 있어 혼란을 겪는 것을 감안하여 해당 종목에 있어서는 스포츠 에이전트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 월드컵 등 인기 프로 스포츠 종목인 축구에 대해 국제 축구 연맹(FIFA)의 권한은 상당히 강하며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선수 에이전트와 경기 에

이전트로 분리하여 규정을 두고 있고 각각 달리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제기구의 라이선스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종목별로 에이전트를 인정하는 일 외에도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의 업무내용을 분류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FIFA 는 이미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을 선수 에이전트와 경기 에이전트로 분류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법으로 스포츠 에이전트를 규정할 경우 선수 에이전트 외에 다른 에이전트의 영역도 인정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만일 선수 에이전트의 업무로만 스포츠 에이전트의 영역을 한정하게 되면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용어적 혼란이 없도록 미국 통일주법이나 캘리포니아주법과 같이 선수 에이전트에 관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에 스포츠 에이전트와 관련한 특별 규정을 두는 경우 선수 에이전트와 경기 에이전트로 에이전트의 업무 내용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국제스포츠기구의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국내법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견으로는 FIFA의 선수 에이전트와 경기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서비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이를 존중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의 범위가 두 서비스는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법제에서 각 라이선스를 분리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인정하는 자격의 경우 국내법에서도 이를 존중하여 일정한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시험절차를 간소화하여 스포츠 고유법을 규율하는 스포츠 자치기구를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특정 종목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스포츠 룰과 같은 것을 스포츠 에이전트 시험내용으로 편입하여 각 종목에 있어서 별개로 선수 에이전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4. 기타 고려하여야 할 사항

위의 주요한 내용 이외에도 스포츠 에이전트 법제를 제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프로 스포츠로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의 범위를 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아마추어 스포츠의 경우 스포츠 에이전트는 전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마추어 스포츠의 경우에도 스포츠 선수에 대한 선수 관리와 인도스먼트 계약 및 자문 서비스를 하는 선수 에이전트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지역과 지역 사이 또는 단체와 단체 사이의 경기를 주선하고 보증할 수 있는 경기 에이전트는 필요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의 분류에 대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살펴본 FIFA의 선수 에이전트와 경기 에이전트 자격이 분리되어 인정되는 것을 보면 프로 스포츠만을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 범위로 정한다면 선수 에이전트 법제만을 고려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고 프로 스포츠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스포츠도 업무 범위로 정한다면 선수 에이전트와 경기 에이전트 모두의 내용을 스포츠 에이전트 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프로 스포츠 만큼이나 실제 생활 체육에 있어서도 경기 에이전트의 필요성 등 전문성 있는 스포츠 중개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프로 스포츠 만으로 에이전트 업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스포츠의 종목을 열거할 것인지 단순히 스포츠의 경우에는 모두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역시 프로 스포츠에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 범위를 한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연결선상에 있다.

셋째, 독립된 기구의 필요성 여부이다. 만일 스포츠 산업 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스포츠 산업진흥원 내에 스포츠 에이전트와 관련된 등록

및 관리를 하는 업무 부서를 둘 것인지 그렇지 않고 독립적인 스포츠 에이전트 통합관리기구를 둘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행정정책상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예산상의 문제가 없다면 스포츠 에이전트 통합관리기구를 두어 스포츠 에이전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스포츠 산업을 진흥하는 측면도 있으나 일정하게는 무자격자에 대한 제재 등으로 스포츠 시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기구 규약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는 FIFA의 선수 에이전트 자격과 경기 에이전트 자격만이 있으나 각 국제적인기구 등이 이러한 유사 자격을 생성할 경우 국내 스포츠 업계가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즉 국제기구의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을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과 어떤 지위로 볼 것인지(동일한 지위에 있는지 흡수 관계에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규정이 있어야 이에 대해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이며 이 수수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수수료에 대해 해당 부서의 등록 및 제재 업무에 이용하는 행정기금으로 볼 것인지 세금의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며 등록시나 갱신시 어떠한 에이전트의 정보를 요구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하여야 한다. 특히 이미 배출된 스포츠 인력, 스포츠 마케터와 스포츠 경영관리사 등과의 관계도 이 법이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스포츠 관련 용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적 용어와 국내 용어의 격차는 없는지 등에 대해 고려하고 용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여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선수협의회 등에 에이전트 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선수 에이전트 등록을 행정당국 뿐 아니라 선수 노조가 별도로 에이전트에게 요구하고 있고 막강한 권한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프로 야구의 선수협의회 외에 다른 종목에는 선수 노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있는 프로 야구의 경우에도 국내 프로 스포츠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구단에게조차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제 5 장 결 론

스포츠가 이제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서 국가경쟁력을 갖게 하는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산업에는 이 산업을 일으켜 유통하는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에는 부가가치를 위하여 경쟁하는 경쟁논리가 존재한다. 프로 스포츠 시장에서 스포츠 에이전트의 주요 업무는 선수 에이전트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스포츠는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방식이나 유통 방식도 다르다. 특히 스포츠 산업 중 선수를 내세우는 산업의 경우 스포츠 자체의 마케팅이라기보다 스포츠 선수를 이용한 마케팅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게 된다. 즉, 선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를 필요로 하는 스포츠 산업에서의 계약에는 상당한 계약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관한 지식, 마케팅 지식, 외국어능력 등이 요구되는데 선수가 이것을 모두 담당하면서 경기에 몰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수행해 줄 에이전트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스포츠 에이전트가 담당하여야 할 주요 업무가 선수 에이전트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즉 스포츠 에이전트는 선수의 연봉 계약 대행 서비스, 인도스먼트 계약대행 서비스, 자문 서비스 등 선수의 권리보호 및 스포츠 산업의 질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요청되고 있다. 국내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는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고유법의 규제와 스포츠 마케팅 대기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 영역을 잃고 국내에서의 활동은 거의 할 수 없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스포츠 에이전트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선진 스포츠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일 뿐 아니라 선망 받고 있는 직업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고려로 『스포츠 산업진흥법(안)』은 스포츠 산업 발전의 과제로서 스포츠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스포츠 경영 관리사가 국가기술 자격으로 도입되어 2005년 1회 합격자

이후 스포츠 전문 인력(스포츠 경영관리사)이 매년 배출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 합격자들이 현장에 투입될 연수과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시장이 척박하여 실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 경영 관리사의 내용이 스포츠 에이전트와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스포츠 에이전트 특별법제가 마련되면 경과 규정을 두어 스포츠 경영 관리사를 스포츠 에이전트에 흡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각 주가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 선수 에이전트 법(2000)을 제정하였고 실제 각 주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입법화하고 있는데 그 중 선례가 캘리포니아 스포츠 에이전트 법제인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2005)”이다. 이는 선수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재조치를 통해 스포츠 에이전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FIFA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가 에이전트 자격에 있어 선수 에이전트 외에 경기 에이전트 자격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에는 선수 에이전트 외에 경기 에이전트의 업무도 고려하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학생선수와 스포츠 에이전트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학생으로서 취할 바에 대한 경고 규정을 두고 스포츠 에이전트에게 접촉 및 계약 체결에 관한 부분을 교육기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둘 필요도 있을 것이다. 국내에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법제를 도입할 경우 선수 에이전트 라이선스와 경기 에이전트의 라이선스는 분리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에이전트의 직업윤리와 등록 및 행정절차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 또는 통합관리기구의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선수 에이전트가 직업으로 그 영역을 확보하게 될 경우 선수와 에이전트간의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청사진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 중 하나로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법제 도입에 있어 본 연구의 내용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부 록 1 - [표] 차례

- [표 1] 스포츠 에이전트 관련 학위논문
- [표 2] 스포츠 에이전트 관련 학회지 논문
- [표 3] 프로야구 선수 협회회의 파동 일지
- [표 4] 국내 주요 회사의 스포츠 마케팅 사업 현황
- [표 5] 스포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 현황
- [표 6] 스포츠 경영 관련 대학 현황
- [표 7] 스포츠 경영 관련 대학원 현황
- [표 8]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 [표 9]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에이전트 규정 관련 단체
- [표 10] 미국 통일 선수 에이전트 법의 구성
- [표 11] 스포츠 에이전트가 주 행정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
- [표 12] 선수 에이전트에 대한 제재(미국 통일선수 에이전트법 제14조)
- [표 13] 미국 풋볼 리그 선수회(NFLPA) 에이전트 준수사항
- [표 14] The Miller-Ayala Athlete Act(2005)의 구성
- [표 15]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의 구성
- [표 16] FIFA 경기 에이전트 규정의 구성

◆ 부 록 2

미국 『통일 선수 에이전트 법(Uniform Athlete Agents Act, 2000)』

제 1 조 표제

이 법률을 통일 선수 에이전트 법이라 칭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에이전시 계약(Agency contract)”은 학생선수가 어떤 자에게 그 학생 선수를 위하여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 또는 인도스먼트 계약을 협상하거나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이다.
- (2) “선수 에이전트(Athlete agent)”는 학생선수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거나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생선수를 모집하거나 권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선수에이전트는 선수에이전트라고 公衆에 주장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용어는 학생선수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후견인 또는 오로지 프로 스포츠 팀 또는 프로 스포츠 단체를 대신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3) “체육 지도자(Athletic director)”는 교육기관의 전체적인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거나, 교육 기관이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면,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 남성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또는 여성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의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 (4) “접촉(Contact)”이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학생선수를 권유하거나 모집하기 위한 선수 에이전트와 학생선수사이의 직접 또는 간접의 연락을 의미한다.
- (5) “인도스먼트 계약(Endorsement contract)”이란 학생선수의 퍼블리시티, 평판, 후속 또는 선수의 능력과 성과로 인하여 얻은 명성으로 인해 학생선수가 가지는 가치를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학생선수가 고용되거나 학생선수가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다.
- (6) “대학 간 대항 스포츠(Intercollegiate sport)”는 학생선수의 참가자격요건이 대학 경기의 진흥 또는 규율을 위한 국가 협회에 의하여 정하여진 대학 수준에서의 스포츠를 의미한다.
- (7) “인(Person)”이라 함은 개인, 법인, 사업 신탁, 단지, 신탁, 조합, 유한회사, 협회, 조인트 벤처, 정부산하기관, 에이전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법적 상업적 실체를 의미한다.
- (8) “프로 스포츠 서비스계약(Professional-sports-services contract)”이라 함은 개인이 프로 스포츠팀의 선수로 고용되는 합의를 하거나, 프로 스포츠팀 소속의 선수로서 또는 프로선수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합의를 어떤 프로 스포츠 조직과 하는 것을 말한다.
- (9) “기록(Record)”이라 함은 유형의 매체에 기재된 정보 또는 다시 지각할 수 있는 형태로 검색가능하게 전자 또는 다른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말한다.
- (10) “등록(Registration)”이라 함은 이 법률에 의하여 선수 에이전트로서 등록된 것을 말한다.
- (11) “주(State)”는 미국의 한 주, 컬럼비아 자치구역(워싱턴 D.C), 푸에르토 리코, 미합중국 버지니아 아일랜드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영토와 섬들을 의미한다.

- (12) “학생 선수(Student-athlete)”는 어느 대학간 스포츠에 참가하거나, 참가할 자격을 가지거나, 장래에 참가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어떤 개인이 특정 대학간 스포츠에 참가할 자격을 항구적으로 가지지 않는다면 그 개인은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선수가 아니다.

제 3 조 소송절차의 집행 업무 ; 소환장

- (a) 이 주에서 선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개인은 [국무장관]*을 이 주에서 선수 에이전트로서의 개인 활동과 관련이 있는 모든 민사소송 절차의 서비스에 대한 대리인으로 정한다.
- (b) [국무장관]이 이 법의 집행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한다.

* 모델통일에이전트법 코멘트에 의하면 에이전트 담당행정기관을 국무부장관으로 하고는 있으나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괄호로 묶어두었다.

제 4 조 선수 에이전트 : 등록요건 ; 계약무효

- (a) (b)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증명서를 획득하지 않고서는 선수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없다.
- (b) 등록된 라이선스가 발급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계약에 서명없이 사실상 선수 에이전트로서 이 주에서 활동할 수 있다.
- (1) 학생선수 또는 학생 선수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
 - (2) 선수 에이전트로서 첫 활동 시작 후 7일 이내에 이 주에서 선수 에이전트로서 등록 신청을 해 놓은 경우

- (c) 본조에서 위반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에이전시 계약은 무효이며 선수 에이전트는 계약으로 인해 받은 어떠한 대가도 반환되어야 한다.

제 5 조 선수 에이전트로서 등록 ; 양식 ; 요건

- (a)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국무장관]에 의해 마련된 양식의 등록 신청서를 [국무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조에 의하여 보관되는 신청서는 공적기록이다.] 이 신청서는 개인의 성명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b)항에 다르게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증의 벌을 받는 다는 서명 그리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신청인의 성명과 신청인의 주 영업지의 주소
- (2)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사업명 또는 피용자의 성명
- (3) 신청서 제출 날짜 직전 5년 동안 신청인과 관련된 사업 또는 직업
- (4) 신청인의 기재사항
 - (A) 선수 에이전트로서의 정규 교육
 - (B) 선수 에이전트로서 실무 경력
 - (C) 선수 에이전트로서 신청인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적 배경
- (5) 신청인과 친척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신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되어 줄 수 있는 세 명의 이름과 주소
- (6) 신청서 제출일 직전의 5년 동안 개인을 위해 선수 에이전트로서 활동한 신청인이 일해 준 개인의 성명, 스포츠 마지막 소속 팀
- (7)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성명과 주소
 - (A) 선수에이전트 사업에 관하여는, 회사 법인이 아니라면 그 파트너, 멤버, 임원, 매니저, 공동경영자, 공동사업수익배분자
 - (B) 선수에이전트를 고용한 법인에 관하여는, 임원, 5% 또는 그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 (8) 신청인이나 (7)에서 정한 자가 이 주에서 부도덕한 행위 또는 중죄에 해당하거나 범죄와 동일시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형사적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
 - (9) 신청인이나 (7)에서 정한 자가 부실표시, 기만적 표시 또는 사기 표시가 있어서 행정적이거나 법적인 판단을 받았는지 여부
 - (10) 신청인이나 (7)에서 정한 자가 학교 대항 경기 등에 참여할 때나 학생선수나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대항간의 경기 이벤트를 제재, 중지하거나 그에 대한 부적격 선고가 있었는지 여부
 - (11) 신청인이나 (7)에서 정한 자가 직업적으로나 전문적 활동으로서 한 행동에 대해 있었던 제재, 중지, 징계조치
 - (12) 신청인이나 (7)에서 정한 자의 선수에이전트로서의 등록 또는 면허신청에 대하여 거부, 중단 또는 취소, 갱신 거부가 어떤 주에선가 있었는지 여부
- (b)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과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주에서 선수 에이전트로서 등록하고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 그 신청서의 복사본을 제출하면 위의 (a)에 기술된 형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간소화할 수 있다.
- [국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주에서의 증명을 이 주에서 등록을 위한 신청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아야 하고, 만일 다른 주에 지원하였다면 이 주에서 등록을 위한 지원으로 다른 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 (1) 이 주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6개월 내에 다른 주에서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최근의 것임을 확인하고,
 - (2) 다른 주에서의 신청서가 이 주에서 제출한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정보를 기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3) 위증죄의 벌을 받는다는 지원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

제 6 조 등록증 ; 발급 또는 거부 ; 갱신

(a) 아래 (b)에서 다르게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국무장관]은 제5조 (a)가 정하는 바를 갖춘 개인 또는 제5조(b)에 의한 신청이 받아들여진 개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b) [국무장관]은 신청인이 선수에이전트로서 한 행위가 다른 신청인들에게 중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라이선스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판정에 있어서, 국무장관은 신청인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이 주에서라면 도덕적 타락 또는 중죄가 되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인지;

(2) 신청인이 신청에 있어서 또는 선수에이전트로서, 자료에의 부실표시, 기만적 표식, 사기표시를 하였는지;

(3) 신임능력을 제공함에 있어 신청인이 실격 판정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는지;

(4) 제14조에서 금지하는 행동을 하였는지;

(5) 어떤 주에서든 선수에이전트로서 등록이나 라이선스를 갱신하는 것이 거절되거나 부인되거나 취소되거나 중단되었던 적이 있는지;

(6) 학생선수에게 또는 교육기관에게 부과된 (중등)학교간 또는 대학간의 경기에 참가할 때 부적격자로 공시되었거나 제재된 적이 있는지;

(7) 신청인의 신용, 정직, 청렴을 심히 거스르는 행동이 있었는지

(c) [국무장관]은 (b)에 의하여 판정하기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얼마나 최근에 일어난 일인가

(2) 행위의 성질과 그 행위가 일어난 사정

(3) 신청인의 관련된 다른 행위

(d) 선수 에이전트가 갱신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장관]에 의해 마련된 양식으로 갱신을 위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조에 의하여 보관되는 신청서는 공적기록이다.]

갱신 신청서는 위증죄를 받는다는 신청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처음 등록시에 요구되었던 모든 사항들에 대한 현재의 정보를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

(e) 등록이나 라이선스의 갱신을 위한 신청을 다른 주에 제출한 사람은 (d)항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갱신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범위에서 갱신 신청서 사본과 다른 주로부터 받은 등록과 라이선스의 유효한 증명서를 묶어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주에서의 갱신 신청을 이 주에서의 갱신 신청으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1) 이 주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6개월 내에 다른 주에서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최근의 것임을 확인하고,

(2) 다른 주에서의 신청서가 이 주에서 제출한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정보를 기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3) 위증죄의 벌을 받는다는 지원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

(f) 등록 증명서 또는 등록 갱신 증명서는 2년간 유효하다.

제 7 조 등록 갱신의 정지, 취소, 거절

(a) [국무장관]은 제6조(b)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갱신을 정지 취소 또는 거절한다.

(b) [국무장관]은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 후에만 등록 또는 면허 증명서의 갱신을 중단, 취소,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을 이 법에 적용한다.

제 8 조 임시등록

국무장관은 등록 신청 또는 갱신신청 중인 동안, 임시 증서를 발급한다.

제 9 조 등록과 갱신 수수료

등록 신청 또는 갱신에는 다음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1) 최초 등록 신청비용: 00\$
- (2) 다른 주에서 발급한 등록증이나 라이선스 증서에 기초한 등록 신청비: 00\$
- (3) 등록의 갱신을 위한 비용: 00\$
- (4) 다른 주에 제출한 등록이나 라이선스의 갱신을 위한 신청에 기초한 갱신 등록 비용: 00\$

제10조 계약에서 요구되는 형식

- (a) 에이전시 계약은 당사자들에 의한 기록, 서명 또는 다른 인증이 있어야 한다.
- (b) 에이전시 계약은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1) 계약에서 선수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학생선수가 지불하는 대가 그리고 선수에이전트가 받은 다른 대가 또는 계약체결 중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다른 이유로부터 받을 대가를 계산한 총액과 방법
 - (2) 학생선수가 그 에이전시 계약을 서명함으로써 보수를 받으나 등록신청서 또는 갱신신청서에는 기입되지 않는 자의 성명
 - (3) 학생 선수가 상환하기로 동의한 어떤 비용에 대한 기재내역
 - (4) 학생 선수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기재내용
 - (5) 계약 존속기간

(6) 실행일

- (c) 에이전시 계약은 학생선수의 서명란에 최대한 근접하여, 굵은 활자체의 대문자로 보기쉽게 다음의 경고(주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학생선수에게의 경고

학생선수가 이 계약에 서명 한다면,

- (1) 귀하가 하는 스포츠에서 선수학생으로서 경기할 수 있는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 (2) 귀하의 선수 지도자가 있다면, 이 계약체결 후 72시간 내에 귀하와 귀하의 선수에이전트는 선수지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귀하는 서명한 후 14일 내에 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계약체결의 철회는 선수로서의 적격성을 되찾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 (d) 이 조문을 따르지 않는 에이전시 계약은 학생 선수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voidable).
만일 학생선수가 에이전시 계약을 취소하면 학생 선수는 이 계약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불할 필요가 없고 계약체결을 하도록 학생선수를 권유한 선수에이전트로부터 받은 어떠한 대가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 (e) 선수 에이전트는 계약실행시 학생선수에게 서명된 기록을 교부하거나 다른 공증받은 에이전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기관에의 통지

- (a) 에이전시 계약 체결 후 72시간 이내 또는 학생 선수가 참가하여야 하는 다음 계획된 경기 이전에 선수 에이전트는 학생선수가 등록되어 있거나 선수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학생 선수가 소속되어 있다고 믿을 근거 있는 교육기관의 선수 지도자에게 계약의 존재에 대해 기록으로서 통지하여야만 한다.

- (b) 에이전시 계약이 체결된 후 72시간 이내 또는 학생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가장먼저 있게 되는 다음 경기 이전에, 학생선수는 자신이 등록된 교육기관의 선수지도자에게 에이전시 계약체결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학생선수의 철회권

- (a) 학생선수는 에이전시 계약을 계약에 서명한 이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선수 에이전트에게 철회의 통지를 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다.
- (b) 학생 선수는 에이전시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 (c) 만일 학생 선수가 에이전시 계약을 철회한다면 학생 선수는 이 계약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불할 필요가 없고 계약체결을 하도록 학생선수를 권유한 선수에이전트로부터 받은 어떠한 대가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제13조 기록의 보관

- (a) 선수 에이전트는 5년간 다음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1) 선수 에이전트가 대리한 각 개인의 성명과 주소
 - (2) 선수 에이전트에 의해 체결된 모든 에이전시 계약
 - (3) 에이전시 계약으로 성사된 학생 선수의 취업 또는 고용에 있어서 선수 에이전트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 비용
- (b) (a)에 의해 보관하도록 요구된 기록은 일반적인 업무시간내에 [국무장관]이 요구하면 조사되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제14조 금지되는 행동

- (a) 선수에이전트는 에이전시 계약의 성립을 위해 학생선수를 유도할 의도를 가지고 다음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1) 물질적으로 거짓 또는 오해할 정보를 주거나 물질적으로 거짓 약속이나 표시를 하는 것

- (2) 학생선수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학생선수에게 어떠한 대가(물)를 제공하는 것
- (3) 학생 선수나 다른 등록된 선수 에이전트 이외의 어떤 개인에게 대가물을 제공하는 것
- (b) 선수 에이전트가 의도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1) 이 법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선수와 접촉을 시작하는 것
 - (2) 제13조에 의해 보관하도록 요구된 기록의 보관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것
 - (3) 제4조에 의해 요구되는 등록을 하지 않는 것
 - (4) 등록신청이나 등록갱신신청에 있어 정보를 잘못제공하거나 오해하도록 제공하는 것
 - (5) 에이전트 계약 날짜를 실제보다 이르게 하거나 늦추는 것
 - (6) 학생선수가 특정 스포츠에 대한 에이전트 계약에 서명하거나 인증하기 전에, 서명(signing)이나 인증(authentication)이 학생 선수가 그 특정 스포츠에 학생선수로서 참가하는 것을 부적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것

제15조 형사처벌

제14조를 위반한 선수에이전트는 [경범죄], [중죄] 등 해당 죄에 의해 형사 처벌된다.

제16조 민사 구제

- (a) 교육기관은 선수 에이전트나 이전 학생 선수에게 이 법의 위반으로 야기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의 소송에서, 법원은 일반적인 당사자의 비용과 합당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 부 록 2 미국 『통일 선수 에이전트 법(Uniform Athlete Agents Act, 2000)』

- (b) 선수 에이전트의 행동의 결과 또는 이전 학생 선수로부터 야기된 결과로 인한 교육기관의 (a)항에 따른 손해 배상은, 교육기관이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해 해를 입거나 경기의 진흥과 규제를 위한 국가협회나 스포츠회의 등에 의해 제재를 받거나 자격박탈 또는 축출되는 결과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비용을 포함한다.
- (c) 교육기관이 밝히거나, 선수에이전트 또는 이전 학생선수에 의한 위반이 발견되는 정당한 시점까지는 이 법에 의한 소송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d) 본조의 선수 에이전트나 학생선수의 어떤 책임도 각자의 것이지 연대하지는 않는다.
- (e) 이 법은 법률이나 형평법에 따른 권리, 구제, 또는 사람에 대한 방어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17조 행정벌

[국무장관]은 이 법의 위반에 대해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수 에이전트에 대하여 과징금(civil penalty)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 적용과 해석의 일관성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제정하는 주 사이에서 생겨나는 일정한 문제에 대해 법의 일관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 국제 그리고 국내 상법에 있어 전자서명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록이나 서명에 이용되는 전자기록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실행력 그리고 그러한 전자기록이나 서명을 사용함으로써 형성되거나 이행된 계약의 법적인 효력, 유효성 또는 실행력은 ‘국제적 국가적 상행위에 있어서의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제102조

의 요구사항에 맞게 하고 대체하고 수정하며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20조 독립성(특정조항이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음)

만일 이 법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어떤 사람 또는 환경에서 유효성이 없다면 그 무효는 다른 유효한 법조문이나 무효인 규정없이 또는 적용 없이도 효력이 주어질 수 있는 이 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1조 법률의 폐지

다음 법률과 법률의 일부분은 이로써 폐지된다.

제22조 시행일

이 법은 _____부터 시행한다.

◆ 부 록 3

캘리포니아 주 “스포츠 에이전트 법”

[캘리포니아 주법 비즈니스와 직업에 관한 법률(California Codes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8895조

이 장은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로 알려져 인용되고 있다.

제18895조 2

이 장에서 사용될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a) “에이전트 계약”이란 어떤 자가 선수에이전트에게 하나 또는 더 많은 프로 스포츠팀 또는 단체들에 의한 그 자신의 고용에 관하여 하나 또는 더 많은 프로 스포츠팀 또는 단체들과 그 자신을 대신하여 협상 또는 신청에 대한 권한을 주거나 위임하는 것, 또는 어떤 자가 프로선수로서 그 자의 직업에 관하여 그 자신을 대신하여 협상 또는 신청에 대한 권한을 주거나 위임하는 계약 또는 합의를 의미한다.
- (b) (1) 선수에이전트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에이전트계약, 인도스먼트계약, 금융서비스계약, 또는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선수를 모집하거나 권유하는 자 또는 어떤 자의 구직을 위하여 프로 스포츠 팀 또는 단체와의 사이에 스포츠 선수로서 보수(급료)에 대한 주선, 제안, 약속, 시도, 또는 교섭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2) (A) “선수 에이전트”는 변호사, 상인, 금융입안자, 보험 에이전트, 부동산 브로커, 판매 에이전트 또는 세무사, 그 밖의 전문인

의 자격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한 직업은 전문적인 사람이 제공하거나 그 직업을 통해 상업적으로 각종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직업으로 선수 에이전트를 하는 것은 선수가 어떤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계약체결을 하고 프로 스포츠 용역 계약에 들어가기 위하여 또는 운동선수를 보충해 요구하는 범위까지 또는 상을 위해 획득하거나 제안하거나 약속하고 시도하는 등 프로 스포츠 팀 조직 또는 직업적 운동선수를 대신하여 고용을 체결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협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B) “운동선수 에이전트”는 전문스포츠 팀과 기관을 대표하여 독자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C) 이 절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선수에이전트는 노동법 제1700.4조의 (a)에서 정의되고 노동법 제2절 제6의 제4장(1700조부터 시작)에 의한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허가된 토티칼 에이전시는 포함하지 않는다.

선수에이전트는 (i)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에이전트 계약, 인도스먼트 계약, 재정 서비스 계약, 또는 프로스포츠 서비스 계약을 위하여 (ii) 프로스포츠팀 또는 단체에서 경기를 하는 자를 위하여 고용을 얻기 위하여 보상, 제안, 약속, 시도, 또는 협상을 위하여 학생선수를 모집 또는 권유하는 토티칼 에이전시를 포함한다.

(3) 제18896.6조, 제18897.6조 그리고 18897.63조는 오로지 그 또는 그녀의 배우자, 아이, 양자, 피후견인, 또는 손자를 위하여 선수에이전트로서 개인적 활동에 적용하지 않는다.

(c) “전문선수로서 고용”은 전문 스포츠 서비스계약 또는 인도스먼트 계약에 따르는 고용을 포함한다.

(d) 인도스먼트 계약은 경기 기량 또는 성취로 인한 퍼블리시티, 평판, 명성 등의 획득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어떠한 가치 또는 유용

- 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고용에 대한 계약 또는 합의를 의미한다.
- (e) “재정적 서비스”는 재정적 결정에 대해 상담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실행하거나 다른 재정적 결정을 하는 일을 의미한다.
 - (f) 협상이란, 어떤 선수를 위하여 접촉이 인편, 서면, 전자적 방법, 대리인 또는 피용자를 통하여, 어떤 다른 방법인지에 관계없이, 프로스포츠팀 또는 단체와 접촉하거나, 어떠한 자를 위하여 프로 선수를 장래에 고용할 수 있는 피용자와 접촉하는 것을 포함한다. 협상은 또한 인도스먼트 계약의 검토사이의 제안 또는 프로스포츠서비스계약을 프로스포츠팀 대표 또는 단체, 또는 잠재적 또는 실제 피용자에게 제안하는 것을 포함한다.
 - (g) “사람”은 개인, 회사, 기업, 기관, 파트너십, 제한책임회사 또는 그들의 대리인과 피용자를 의미한다.
 - (h)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은 프로스포츠팀 또는 단체 또는 프로 선수로서 활동하는 자에 의한 계약 또는 합의이거나 프로스포츠팀 또는 단체 선수로서 또는 프로선수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i) (1) 학생선수는 학생이 다른 교육 기관과의 경기에 관계된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 스포츠 프로그램에 선수로서 참여할 의사를 그 교육기관에 통지 또는 참여한다면, 초등 또는 중고등, 전문대학, 대학 또는 다른 교육 기관에 학생으로 등록된 자 또는 인정된 자를 말한다.
 - (2) 학생선수는 유효한 에이전트 계약, 유효한 인도스먼트 계약, 또는 유효한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학생선수는 학생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이 회원으로 있는 대학간 경기의 증진 및 규율을 위하여 주 또는 국내 협회의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대학간 스포츠에 참가할 자격이 종료된 전문대학 대학의 학생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18896조

이 장(선수 에이전트)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수 에이전트 사업에 종사 또는 수행하기 이전에, 각 선수 에이전트는 회사 또는 조합내에서 선수 에이전트로서 개별 활동을 함에 있어 국무장관이 마련한 서식에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여 국무장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a) 성명, 주소, 사회 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 (b) 선수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는 모든 지역의 거리와 주소 번호
- (c) 성명과 영업지 주소, 제18897.83조에 의해 캘리포니아에서 요구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정된 에이전트의 성명과 영업지 주소
- (d) 서류가 제출된 날짜 직전 2년간 관여한 사업 및 직업
- (e) 다음 중 어느 것에 대한 유죄판결
 - (1) 중죄
 - (2) 이 장에서 위반하여 연루된 경범죄, 1996년에 법의 제857장에 의해 폐지된 노동법 Chapter 1(commencing with Section 1500) of Part 6 of Division 2의 범죄, 또는 다른 주에서 선수 에이전트에 관련된 범죄
 - (3) 사기, 절도, 횡령, 사해행위 또는 재산 남용
- (f)(1) 만일 선수 에이전트가 제18897.87조 (a)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의해 보험의 약간 또는 모두를 제공한다면 제18897.87조에서 요구하는 보험회사명, 그리고 보험 수령액
- (2) 만일 선수 에이전트가 제18897.87조 (b)에서 요구하는 약간 또는 모두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면 제18897.87조에서 요구받는 담보물의 명확한 장소 및 교환가치
- (g) 징계 또는 임원이사회, 협회, 위원회 또는 선수에이전트 또는 개인에 대한 부당한 조치의 다른 주장들 또는 징계책임의 결과로서

다른 것들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이들 절차들의 과정

- (h) 어떤 학생선수나 어떤 교육기관이 제재하고 중단하게 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학교대항전 또는 학교대항 이벤트에 참가하는데 선수 에이전트의 조치와 관련하여 일으킨 일들에 대해 자격 없음을 인정했는지 여부
- (i) 선수 에이전트로서 대신하여 온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람들
- (j) 등록하고 있는 모든 선수노조(협회)의 이름
- (k) 적어도 세 명의 참고인
- (l) 모든 정규 교육의 증명서 또는 졸업 또는 다음의 특정영역에서의 실무경험 ; 계약, 계약교섭, 불만처리, 중재, 또는 계약분쟁의 민사 해결
- (m) 고용, 파트너, 투자자, 유관기관 또는 수익 배분자 또는 다른 방식에 있어 최종적으로 선수 에이전트 사업 경영에 재정적으로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 (n) 선수 에이전트 사업의 운영에 있어 요금 및 대가의 징수에 관한 수수료 일람표

제18896조 2

- (a) 제18896조가 요구하는 보관중인 정보가 변경된 시점부터 7일이 내에, 선수에이전트 국무장관이 규정한 형식에 변경된 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b) 제18896조의 (n)에 의하여 제출된 요금표의 개정은 이 조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제출될 때까지 효력이 없다.

제18896조 3

제18896조와 제18896.2조에 의한 국무장관에 의하여 정해진 서식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부 록 3 캘리포니아 주 “스포츠 에이전트 법”

“이 서식에서 거짓, 오해하거나 불완전한 신고들을 기록한자는 영업 및 직업에 관한 법률 제8부의 2.5장(제18895조부터)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에 의하여 형사 및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896조 4

제18896조 및 제18896.2조는 오로지 선수 에이전트의 다른 사업들과 오로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8896조 6

선수 에이전트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프로 선수, 학생 선수, 학생 선수의 배우자, 부모, 양부모, 후견인, 형제 자매, 숙모, 삼촌, 조부모, 자식, 친사촌, 혼인에 의하여 형성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 또는 학생 선수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 또는 이들 사람의 대리인, 선수 에이전트, 또는 그 또는 그녀의 종업원 또는 대표자를 처음 접촉 하자마자, 이들에게 서면 통지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 선수 에이전트는 영업 및 직업법률 제8부 제2.5장(제18895조부터 시작)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 제출된 자료에 있는 공표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선수를 위한 다른 보호들도 포함한다. 필요한 정보의 서류들은 선수에이전트의 권한을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 의한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통지는 국무장관으로부터 공표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특정한 지시(훈령)가 포함되어 있다.

제18896조 8

- (a) 선수에이전트는 제 18896조 및 제 18896.2조에 의해 요구되는 세금을 납부할 때, 정부법 제12195조의 (b)에 의하여 규정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 (b) 이 장 규정에 따라 국무장관에 의하여 수납한 모든 수수료는 재무부의 수입으로 되고, 국무장관의 상업 수수료 기금에 기입된다.

제18897조

모든 에이전트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에서 이행되는 서비스의 형태 및 부담하는 수수료 목록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897조 1

다음의 내용은 모든 에이전트 계약의 첫 페이지에 그 페이지의 어떤 다른 활자보다 적어도 2 포인트 큰 굵은 글씨체로 써야 한다. : “이 선수 에이전트는 영업 및 직업법 제8부 제2.5장(제18895조부터 시작)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자료에 있는 공표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선수를 위한 다른 보호들도 포함한다. 필요한 정보의 수집은 이 에이전트계약상의 용어나 조건에 관하여 또는 선수에이전트의 권한에 관하여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 의한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18897조 2

선수 에이전트가 선수의 급료를 수령할 때, 신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선수를 대신하여 어떠한 급료를 받은 선수에이전트는 그 주에서 또는 연방 공인 금융 기관에서 선수에이전트에 의하여 간수되는 신탁 기금 계좌에 즉시 그 지불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8897조 23

- (a) 모든 선수 에이전트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1) 선수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각 사람의 이름과 주소
 - (2) 그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는 수수료

◆ 부 록 3 캘리포니아 주 “스포츠 에이전트 법”

- (b) 선수 에이전트나 선수 에이전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들은 허위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는 최소한 7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 (c) 이 조문은 선수 에이전트 업무 이외의 선수 에이전트의 다른 업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8897조 27

선수 에이전트는 선수에이전트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인도스먼트 계약, 금융 서비스 계약,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을 협상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자 또는 프로 선수로서 잠재적 또는 실제적 고용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하는 자와 같은 스포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구(단체)에서 재산 또는 재정적 이익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18897조 3

선수에이전트 또는 선수 에이전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가 프로선수 또는 학생선수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금의 투자에 관련하여 선수에게 권한다면, 선수에이전트는 그 기관에서 선수의 투자로부터 선수에이전트, 대리인 또는 피용자가 받을 중개료 그리고 선수에이전트, 대리인 또는 피용자가 금융서비스 또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과 관계한 기관(단체)에서 선수에이전트, 대리인 또는 피용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지분을 선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897조 33

선수 에이전트는 법을 위반하는 일을 하거나 범위반으로 고용되어 도움을 주도록 시도하게 되는 등 고의로 어떤 약정 또는 조건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897조 37

선수 에이전트 또는 선수 에이전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는 어떤 과오, 부당이득 또는 오해할 만한 정보, 설명, 공지 또는 광고를 공

표하거나 야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선수 에이전트나 선수 에이전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는 어떤 잘못된 정보나 어떤 사람의 고용과 관련된 설명이나 그릇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제18897조 4

선수 에이전트가 이해하는 모든 광고의 형식에는 그의 이름과 영업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18897조 43

선수 에이전트는 파업, 공장폐쇄, 또는 다른 노사 문제가 발생한 곳에 이러한 사실을 선수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고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897조 47

선수 에이전트는 프로 스포츠 리그, 팀, 또는 다른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수수료를 분배해서는 아니 된다. 또는 선수 에이전트의 총수입이 얼마이든지 소유 또는 관계한 프로 스포츠와 연관된 선수 협회 또는 조합의 전임 노조원에게 제공 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897조 5

선수 에이전트는 장래의 취지 또는 효력을 위해 날짜를 실제로 늦춘 에이전트 계약, 인도스먼트 계약 또는 프로스포츠 서비스 계약 또는 어떤 에이전트 계약, 인도스먼트 계약 또는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도 협상하거나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18897조 6

선수 에이전트 또는 선수 에이전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는 돈이나 다른 이익이나 가치와 관련된 것을

학생선수에게 제공하거나 수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18897조 63

- (a) 본조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선수 에이전트 또는 선수 에이전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는 인편, 서면, 전자적, 또는 다른 방법이든 간에 학생 선수, 학생 선수의 배우자, 부모, 양부모, 후견인, 형제 자매, 숙모, 삼촌, 조부모, 자식, 친사촌, 혼인에 의하여 형성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 또는 학생선수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 또는 이들 사람의 대리인, 선수 에이전트, 또는 그 또는 그녀의 종업원 또는 대표자와 어떠한 접촉을 하거나 지속해서는 아니 된다.
- (b) 선수 에이전트 또는 선수 에이전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는 학생 선수 또는 (a)에서 언급한 다른 자들에게 서면자료를 보내야 한다. 선수에이전트가 이전에 보냈다면, 동시에, 학생선수가 입학하거나 등록된 초등 또는 중등, 전문대학, 대학교 또는 다른 교육 기관의 장, 학장 또는 다른 집행관에게 그 자료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 (c) 학생 선수 또는 (a)에 규정한 다른 사람이 선수 에이전트 또는 선수 에이전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와 처음으로 접촉한다면, 선수에이전트, 대리인 또는 피용자는 그 사람들과 접촉을 계속할 수 있고 새로운 접촉을 할 수 있다. 그 사람과 접촉이 처음으로 시작된 후 첫 영업일에 선수에이전트는 서면으로 학생선수가 입학하거나 등록된 초등 또는 중등, 전문대학, 대학교 또는 다른 교육 기관의 장, 학장 또는 다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접촉에 대한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계약을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 (d) (b)에서 규정한 서면자료 및 (c)에서 요구하는 통지는 제19996.6 조에서 요구되는 통지를 포함한다.
- (e) 접촉의 범위가 오직 학생선수가 입학하거나 등록된 초등, 중고 등, 전문대학, 대학교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의하여 접촉되었다면,

이 조항은 선수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와 학생 선수 또는 (a)에 규정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의 접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8897조 67

선수 에이전트 또는 선수 에이전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는 현금 또는 이익 또는 가치 있는 물건을 권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등 또는 중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학 또는 다른 교육기관, 또는 제18897.63조의 (d)에 규정한 어떠한 접촉의 시작 또는 의뢰인들의 연계에 대한 보답의 교육 기관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대한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서비스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18897조 7

에이전트 계약, 인도스먼트 계약 또는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선수에이전트 및 학생선수는 계약에 대한 서면통지를 학생선수가 입학하거나 등록된 초등 또는 중등, 전문대학, 대학교 또는 다른 교육 기관의 장, 학장 또는 다른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선수 에이전트는 계약 체결로부터 48시간 이내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학생선수는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하든지 간에, 학교(중고등)간 또는 대학간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전에 통지하거나 계약이 체결로부터 72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18897조 73

학생 선수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에이전트 계약, 인도스먼트 계약, 또는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은 학생선수의 서명란의 근접한 곳에, 적어도 10 포인트의 활자체로 주의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 학생선수에게의 경고

: 이 계약에 서명하게 되면 학교(중고등)대항 또는 대학간 스포츠의 자격을 즉시 그리고 영구히 잃게 될 수도 있다. 담임, 교장, 또는 다

른 학생의 교육기관의 주요 행정가는 또는 어떤 학교대항 또는 대학간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거나 실행하기 전, 즉 무엇이든 가장 먼저 시작하는 시점의 72시간 내에 이 계약에서 성립한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읽고 어떤 공란을 다 채울 때까지는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선수 에이전트나 이 계약의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당신이 속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 연방 또는 기관에 당신의 자격이 복귀되는 것은 아니다.

제18897조 77

학생선수가 에이전트 계약, 인도스먼트 계약, 또는 전문 스포츠 서비스계약에 대해 15일 이내로 학생선수는 선수 계약의 철회의사를 가지고 선수에이전트 또는 다른 계약을 한 상대방에 대해 서면으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학생 선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에 의한 계약의 철회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8897조 8

(a) 이 장을 위반한 선수 에이전트 또는 선수 에이전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프로 선수, 학생선수, 기관, 리그, 연맹, 협회, 또는 연합회의 회원, 또는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 프로선수, 또는 학생 선수, 또는 초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또는 다른 교육기관 또는 전술한 교육기관의 리그, 연맹, 협회, 또는 연합, 또는 다른 사람은 선수에이전트로부터 받은 손해전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학생선수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학교간 또는 대학간 스포츠 경기의 출전 박탈 또는 자격이 정지 되었다면 또는 학교간 또는 대학간

스포츠의 증진과 규정에 대한 주 또는 전국 연맹 또는 협회의 규칙에 의하여 또는 경제적 손해 또는 자격정지 또는 박탈 및 경제적 손해를 받았다면, 학생선수는 이 장을 위반한 선수에이전트,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추정된다.

교육기관 또는 그 교육기관에 입학하였거나 등록한 한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 선수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학교간 또는 대학간 스포츠 경기의 출전 박탈 또는 자격이 정지 되었다면 또는 학교간 또는 대학간 스포츠의 증진과 규정에 대한 주 또는 전국 연맹 또는 협회의 규칙에 의하여 또는 경제적 손해 또는 자격정지 또는 박탈 및 경제적 손해를 받았다면, 교육기관은 이 장을 위반한 선수 에이전트 또는 선수에이전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다는 것이 추정된다.

- (b) 본조에 의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어느 것이 더 많은 실제 손해를 전보 받거나 50,000달러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 ; 소송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선수에이전트는 본조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학생 선수에게 제공했던 가치 있고 이익이 되는 어떤 것도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 그리고 학생선수가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반대급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c)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장의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조를 규정함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제18897조 83

모든 스포츠 에이전트는 캘리포니아 민사소송 절차서비스를 위한 에이전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897조 87

모든 선수 에이전트는 다음의 하나 또는 모두를 통해 선수 에이전트의 사무로 인하여 발생한 행위, 과실, 또는 부작위에 근거하여 선

◆ 부 록 3 캘리포니아 주 “스포츠 에이전트 법”

수에이전트 또는 선수에이전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a) 각 소송이 적어도 100,000달러에 해당하는 청구가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책임보험이 선수에이전트에 대하여 강제된다.
- (b) 발생한 모든 소송의 손해배상이 적어도 100,000달러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지불에 대한 담보로서 신탁 또는 은행의 제3자 기탁금, 현금, 은행 예금 증서, 미국 재무부 채권(증권), 은행 신용장, 또는 보험회사의 증권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다.

제18897조 9

- (a) 이 장에 따르지 않거나 1995-96년 회기의 의안1987 에 의하여 폐지된 것으로서 노동법 제2부 제6편 제1장(제1500조에서부터 시작)에 따르지 않은 선수에이전트에 의하여 협의 된 선수에이전트 계약은 무효이고 효력이 없다.
- (b) 선수에이전트가 이 장에 따르지 않거나 1995-96년 회기의 의안 1987에 의하여 폐지된 것으로서 노동법 제2부 제6편 제1장(제1500 조에서 시작)에 따르지 않았다면, 선수 에이전트에 의하여 협의된 인도스먼트 계약, 금융서비스 계약, 또는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에 의하여 선수에이전트에게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선수 에이전트는 이 계약에 의하여 지불된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8897조 93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선수 에이전트나 선수 에이전트의 대표 또는 피용자는 경범죄로 \$5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1년의 징역 또는 병과 된다. 법원은 이 장의 위반으로 유죄가 선언된 자의 권리를 취소하거나 에이전트의 업무집행을 정지 하여야 한다.

제18897조 97

행정법(the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권 제3.5장(제1143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무장관은 이 장의 관리 및 이 장과 일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필요한 규칙 및 규정들을 승인, 개정, 폐지하여야 한다.

◆ 부 록 4

단순화를 위하여 이 규정에서는 남성형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단순화의 이유에서 “선수’에이전트”란 용어 역시 클럽과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한 에이전트에게도 사용하였다.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Player’s Agents Regulations, Spielervermittler Reglement)

FIFA 집행위원회는 2000년 12월 10일 회의에서 FIFA 정관의 적용 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규정을 승인하였다.

서 문

1. 이 규정은 한 국가 협회 내에서나 국가 협회간의 선수의 이적을 담당하는 선수 에이전트 업무에 적용된다.
2. 각국 협회는 다음의 지침에 기초하여 선수 에이전트에 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FIFA 선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의 규정들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각국 협회의 자국법(自國法)이나 국제조약뿐만 아니라 FIFA 정관과 규정도 참조하여야 한다.

1. 일반 원칙

제 1 조

제1항 선수와 클럽에게 다른 선수나 클럽과의 협상시 아래 제2조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가 협회에 의해 발급된 라이선스를 소지한 선수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 부 록 4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

선수 에이전트란 다음 규정과의 합치하에 규칙적으로 그리고 대가를 받으며 선수가 어떤 클럽과 노동 계약관계를 맺도록 하거나 두 개의 클럽이 선수이적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2항 선수와 클럽은 무자격 에이전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제16조, 제18조 참조).

제3항 위 2항에 명시된 금지조항은 선수를 대리하는 에이전트가 선수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이거나 선수나 클럽을 대리하는 에이전트가 주거국(住居國)의 법률에 의해 활동하는 변호사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I. 라이선스의 발급

제 2 조

제1항 선수 에이전트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국(母國)의 협회나 최소 2년 이상 거주지를 두고 있는 국가협회에 서면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지원자는 평판이 훌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지원은 무효 처리된다. 국가협회는 지원자가 관련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필수조건에 적합한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 자연인만이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으며 회사나 클럽은 취득하지 못한다.

제 3 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지원자는 FIFA, 연맹, 국가협회, 클럽 또는 이러한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기관의 직책을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제1항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지원서를 제출받은 국가협회는 그 지원이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된 전제조건에 따른 것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항 지원이 승인되면 국가협회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제3항 신청이 국가협회의 시험기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거부된 지원자는 FIFA에 그의 신청서를 보낼 수 있다. FIFA 선수신분위원회(FIFA Player's Status Committee)는 국가협회가 부당하게 지원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만일 위원회가 이의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자는 향후 2년간 국가협회에 지원할 수 없다.

제 5 조

제1항 국가협회는 일년에 두 번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제2항 시험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실시된다. FIFA는 매년 초, 3월과 9월중에 시험일을 정하여 국가협회에 통보한다.

제3항 국가협회는 적절한 시간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를 지원자에게 통지할 책임을 진다.

제4항 시험 진행의 기본 조건은 규정 부록 A에서 정한다.

제5항 국가협회는 시험에 들어가는 준비비용으로 적정한 수준의 응시료를 받을 수 있다.

제 6 조

제1항 지원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였을 경우(부록 A의 제 1항 제5호를 참조) 국가협회는 해당 지원자에게 자국 내의 보험사에 전문 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자는 국가 협회에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 록 4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

제2항 보험의 목적은 각국협회나 FIFA의 관점에서 선수 에이전트의 활동이 당 규정이나 각국 협회의 규정에 상반되었을 경우 다른 선수나 클럽 또는 다른 선수에게 에이전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보상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험은 선수 에이전트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보상을 포괄하는 문구를 담고 있어야 한다.

제3항 보험의 최대 보상액은 선수 에이전트의 총 매출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제4항 전문 보험은 보험계약 중에 발생하였으나 보험 만료 후에 야기되는 사건까지도 포괄하여야 한다.

제5항 에이전트는 보험의 만료시 이를 즉시 갱신하여야 하며 서류를 국가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제1항 에이전트가 시험에 통과한 국가에서 상기 6조에 의한 전문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에 십만 스위스 프랑(CHF 100,000)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보증서는 스위스 은행에서만 발급하며 취소는 불가능하다.

제2항 오직 FIFA만이 은행의 보증금에 접근할 수 있다. 은행 보증금은 전문책임보험(제6조 제2항 참조)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보증금(CHF 100,000)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에 대한 최고배상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3항 선수에이전트에 대한 보상의 청구로 인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어 보증금이 감소하였을 경우 에이전트의 자격은 보증금이 최소 금액 (CHF 100,000) 만큼 예치될 때까지 정지된다.

제 8 조

제1항 시험을 통과한 모든 지원자는 선수 에이전트로서 활동함에 있어 규정에 명시된 기본원칙들을 준수하겠다는 행동규범(Code of

Professional Conduct, 부록 B 참조)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2항 선수 에이전트는 행동규범(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는다.

제 9 조

제1항 국가협회로부터 공식인가를 받고 제1조의 규정에 의해 소속 선수들에게 직업알선서비스(Job Placement Service)를 제공하려는 선수 협회는 해당 국외 보험사와 공동으로 자체 공동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2 항

이러한 경우 보험은 5개 이하의 라이선스의 위험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이선스 소지자는 해당 협회의 소속 국민이어야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어야 하며 부록 A에 의한 행동규범(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의 서명자여야 한다. 자격을 취득한 지원자의 성명은 제1항에 언급된 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조

제1항 지원자가 전문 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였거나 은행보증금을 예치하고 행동규범(Code of Professional Conduct)에 서명한 후에 국가협회는 지원자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하여야 한다. 라이선스는 대여나 양도가 엄격히 금지된다. 각국협회는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수 에이전트의 명단을 작성하여 매 시험 후에 FIF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라이선스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에이전트는 세계 어디서나 활동이 가능하다.

제3항 FIFA는 세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에이전트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부 록 4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

제4항 국가협회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직후 에이전트는 자신의 이름 뒤에 “[나라이름]국가협회 공인 선수 에이전트(Players' Agent Licensed by [Country] national association)”라는 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III. 선수에이전트 자격자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공인받은 선수 에이전트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a) 클럽과 계약이 없거나 계약이 종료된 모든 선수들과 접촉할 수 있는 권리(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대한 FIFA 규칙 제12조, 제13조 참고)
- b) 협상이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선수나 클럽의 이익을 대표할 권리
- c) 권리를 위임한 선수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
- d) 권리를 위임한 클럽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

제12조

제1항 선수나 클럽과의 서면 계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11조에 의하여 선수나 클럽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보호할 수 있다.

제2항 그 같은 계약체결은 2년의 기간으로 제한되며 양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계약은 선수 에이전트의 부담주체, 수수료의 종류, 수수료 지급의 전제조건 등에 관한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항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만이 에이전트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지급할 수 없다.

제4항 선수를 대변하여 활동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보수는 에이전트가 선수의 고용계약 당시 맺은 연간 총 기본수입을 근거로 산출한다(자동차, 성과급, 보너스, 각종 특전은 배제된다).

제5항 에이전트와 선수는 선수를 대리하여 협상한 고용계약의 시작과 동시에 에이전트 수수료를 일시불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년도 말에 연단위로 분할 지급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제6항 선수와 에이전트가 일시불지급에 합의하지 못하고 에이전트가 대리하여 협상한 선수의 고용계약이 에이전트와 선수간의 계약보다 길다면 에이전트는 계약의 종료 후에도 연 단위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수의 고용계약 만료까지 또는 선수가 동일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을 때까지 유효하다.

제7항 선수 에이전트 및 선수가 지불하는 보수의 총계에 합의할 계약 체결이 있는 후 보수를 제공하지 않으면, 선수는 그를 대표하여 선수에이전트가 협상하였던 계약으로부터 받을 예정인 같은 등급 안에 기술되는 제4항의 기본 수입의 합계 5%에 해당하는 지불을 하여야 한다.

제8항 클럽에 의해 위임받은 선수 에이전트는 미리 합의된 대로 일시불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제9항 FIFA는 국가협회에 표준계약서(Standard Representation Contract, 부록 C 참조)를 교부한다. 모든 에이전트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들이 추가 조항이나 보조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해당 국가의 고용과 관련된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0항 계약서는 4통이 작성되어야 하며 양자가 공식적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선수나 클럽이 원본을 보관하며 에이전트는 두 번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에이전트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위하여 세 번째, 네 번째 사본을 자국 국가협회 내지 선수 또는 클럽이 속한 국가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록 4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

각국 국가협회는 제출받은 계약서의 등록부를 만들어 두어야만 하며 FIFA의 요구가 있을 시 이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항 미성년 선수의 경우 선수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명시적 동의 하에서만 에이전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

에이전트는 그의 피용자의 업무가 에이전트의 활동에 관한 행정업무로 제한한다면 에이전트 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 오직 에이전트만이 선수와 클럽의 이익을 대변하고 촉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한 협회에 1년에 한번씩 피용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각의 피용자들은 공식인정을 받기 최소 3개월 이전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에이전트는 피용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것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라이선스 있는 선수 에이전트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해당 국가협회, 연맹, FIFA의 정관과 규정에 맞게 활동할 것
- b) 에이전트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는 전항의 정관과 규정에 부합할 것
- c) 선수의 계약 만료 전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포기하도록 선수를 설득할 목적을 가지고 다른 클럽과 계약상태에 있는 선수에 대한 접촉 금지
- d) 이적 협상시 일방 당사자만을 대리할 것
- e) 국가협회나 FIFA의 해당 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 모든 필요정보와 서류를 제출할 것
- f) 에이전트가 관련된 모든 계약서에 그의 성명, 서명, 고객명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 g) 해당국가의 고용관련규정을 준수할 것

제15조

제1항 당 규정에 명시된 권리를 남용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에이전트는 제재를 받는다.

제2항 다음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a) 견책, 주의, 경고
- b) 벌금
- c) 자격정지
- d) 자격취소

제재 조치는 병합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

제3항 제재조치는 제재대상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 FIFA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책임의 범위는 아래 제22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4항 라이선스는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책임 보험 또는 은행보증금)에 명시된 라이선스 취득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취소된다. 이것이 일회성이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협회 해당부서는 에이전트에게 이 규정을 만족시킬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5항 제4항의 조건과 더불어 에이전트가 국가협회, 연맹, FIFA의 정관이나 규정을 반복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다.

제6항 라이선스는 그것을 발급한 협회에 의하여만 취소된다. FIFA는 협회에 강제적 자격 취소를 명령할 권리를 가진다.

IV. 선수의 의무

제16조

제1항 선수는 제1조 제3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규정에 따라 국가협회에서 발급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 에이

◆ 부 록 4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

전트의 서비스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항 선수 에이전트의 성명과 서명은 에이전트가 선수의 이익을 대변한 모든 활동의 계약서상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선수가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사실이 해당계약서에 명백히 기재되어야 한다.

제17조

선수가 라이선스없는 에이전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수가 등록된 국가협회(국가 내 이적인 경우)나 FIFA(국가간 이적일 경우)의 재량에 맡긴다.

a) 그러한 계약의 결과로 야기되는 분쟁에 있어 선수의 입장을 판단할 때에는 이 사실을 고려함

b) 다음과 같이 선수를 벌함

- 견책, 주의, 경고

- 최소 일만 스위스 프랑(CHF 10,000)의 벌금

- 최대 12개월 자격정지

제재조치는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V. 클럽의 의무

제18조

제1항 선수를 고용하려는 클럽은 다음의 사람들과 협상할 수 있다.

- 선수 자신 또는

- 제1조 제3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 규정에 따라 협회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에이전트

제2항 에이전트가 클럽의 이익을 대변하여 수행한 모든 거래시에 그의 성명이나 서명은 반드시 이적이나 고용계약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클럽이 에이전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

한 사실이 이적계약서나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3항 다른 클럽에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클럽은 금전을 해당 클럽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수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 금액의 일부분이나 전액을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클럽은 다음의 제재를 받는다.

- a) 견책, 주의, 경고
- b) 해당 이사회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자격정지
- c) 최소 이만 스위스 프랑(CHF 20,000)의 벌금
- d) 최소 3개월의 국내나 국제간 선수이적 업무 정지
- e) 국내나 국제간의 축구 활동 정지

이와 더불어 클럽이 제18조를 위반하여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제재는 병합하여 부과될 수 있다.

제2항 위의 조항에 명기된 제재는 클럽이 속한 국가의 협회(국내 이적의 경우)나 FIFA(국제 이적의 경우)에 의해서만 발표된다.

VI. 특별 조항

제20조

제1항 활동을 종료하고자 하는 에이전트는 라이선스를 발급한 국가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를 취소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협회는 활동을 종료하려는 에이전트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FIFA 및 관련연맹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에이전트 활동의 종료(라이선스 반납 또는 취소)시까지 책임 보험은 해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로 활동 하던 시기에 행해진 사건에서 야기된 보상요구에 대하여 보험혜

◆ 부 록 4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

택을 받을 수 있다(제6조 제4항 참조).

제21조

제1항 선수 지위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의 이행과 행동규범(Code of Professional Conduct)에 따라 에이전트 활동을 강제하는 책임을 지는 FIFA의 감독, 결정 기관이다.

제2항 각 협회는 라이선스를 부여한 에이전트의 활동에 책임을 지는 감독, 결정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부서는 국가 내에서의 에이전트 활동이 행동 규범(Code of Professional Conduct)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VII. 분 쟁

제22조

제1항 선수 에이전트와 선수, 클럽과 다른 선수 에이전트간에 분쟁이 있고 이들 모두가 동일 국가협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해당 협회가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건을 처리하며 결정을 내릴 의무를 지며 그 서비스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규정되지 않는 이의 제기들은 FIFA 선수 지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3항 에이전트의 활동에 관한 이의제기는 해당 사건의 발생 2년 내에 또는 에이전트가 활동을 종료한지 6개월 이내에 해당국의 축구협회 FIFA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VIII. 경과 규정

제23조

제1항 1995년 12월 11일자로 발효된 선수 에이전트 규정에 따라 이미 FIFA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국가협회에서 시행 6개월 내에 새로운 라이선스로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에이전트들은 당 규정 부록 A의 필기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

제2항 6개월의 과도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존 라이선스는 무효가 된다. 이때까지 라이선스를 교체하지 않는 에이전트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새 라이선스의 취득을 위해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제24조

제1항 1995년 12월 11일 발효된 선수 에이전트 규정 제9조에 따라 스위스 은행에 은행 보증금을 예치한 에이전트는 전문 책임보험 가입시 FIFA에 보증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에이전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국가 협회가 소속된 국가의 보험사에 의해 가입되어야 한다.

제2항 FIFA는 이 개정사항을 해당국가협회에 통보하고 보험에 관한 사항을 아려야 한다.

제25조

제1항 당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FIFA 선수지위위원회의 판결을 위해 FIFA에 제출된 선수와 클럽, 에이전트와 다른 에이전트간의 분쟁은 1995년 12월 11일 발효된 선수 에이전트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2항 이 규정이 발효된 이후 제출된 분쟁은 제22조에 명시된 담당 기구에 의해 결정된다.

IX. 부칙 규정

제26조

FIFA 집행위원회는 당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 부 록 4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

제27조

당 규정의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판에 불일치 조항이 있을 경우 영어판이 우선한다.

제28조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0일 로마에서 FIFA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의결된 후 2001년 3월 1일부로 발효된다.

로마/쥐리히, 2000년 12월 10일

FIFA 집행위원회 대신하여

회 장 Joseph.S.Blatter

사무국장 Michel Zen-Ruffinen

[선수 에이전트 규정] 부록 A : 시험의 절차

I. 제1항 시험은 객관식이다. 지원자는 FIFA에 의하여 규정된 최소한의 점수를 취득했을 때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제5항 참조).

제2항 지원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시험을 치른다.

- a) 현행 축구계의 규정(지원자가 시험에 응시한 국가협회, 연맹, FIFA의 정관규정)-특히 이적과 관련한-에 대한 이해 정도
- b) 민법(사적 권리의 기본원리)와 채권법(계약법)에 대한 이해 정도

제3항 각 시험은 국제 규정 15문제, 자국규정 5문제의 20문제로 이루어진다.

제4항 각국협회는 자국관련 문제를 출제하여야 하며 FIFA는 FIFA정관과 규정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지를 각국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항 FIFA는 합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수를 정할 수 있다. 각각의 정답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1점에서 3점으로 주어진다.

제6항 국가협회는 시험 실시 전 지원자에게 합격기준 점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II. 제1항 시험 종료 후 즉시 채점하여 지원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2항 최소 점수 획득에 실패한 지원자는 대기없이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지원자가 재시험에서도 점수획득에 실패하면 다음의 두 번의 시험일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이 대기기간의 경과후에만 세 번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때 지원자는 국가협회를 통해 다시 응시할지 또는 FIFA의 시험을 택할지

◆ 부 록 4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

선택할 수 있다.

제4항 3차 시험에서도 최소 점수 획득에 실패한 지원자는 향후 2년동안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선수 에이전트 규정] 부록 B : 행동 규범

- I. 선수 에이전트는 양심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그의 직업이나 다른 사업영역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II. 선수 에이전트는 고객과의 업무나 파트너 또는 다른 당사자와 협상시 항상 진실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 III. 선수 에이전트는 투명한 법적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준법과 공명정대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한다.
- IV. 에이전트는 반드시 협상 파트너와 제3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특히 그의 전문직업 동료의 계약관계를 존중하여 타방으로부터 고객을 유혹하는 어떤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V. 제1항 에이전트는 본인의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기록을 하여야 하며 특히 언제라도 서류나 기타 기록을 통하여 활동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2항 에이전트는 양심적으로 장부를 기재하며 활동사항에 대하여 거짓없이 기록해야 한다.
제3항 제재나 기타 다른 분쟁이 생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기구의 요구가 있을 시에 에이전트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에이전트는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수료나 경비 기타 다른 비용등을 나타내는 명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장소와 날짜 _____

선수 에이전트

국가협회

(도장 또는 사인)

[선수 에이전트 규정] 부록 C : 표준 계약서

당사자

(이하 에이전트-에이전트의 성, 이름, 정확한 주소와 회사의 명칭)

(이하 고객-선수의 성, 이름, 필요시 애칭, 생년월일 또는 클럽의 명칭,
정확한 주소)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합의한다.

1) 기간

이 계약은 (개월수, 최대 24개월)간 유효하다. 이 계약은 (정확한 일자)에 발표되어 (정확한 일자)에 종료된다.

2) 보수

오직 고객만이 에이전트 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a) 고객이 선수인 경우

에이전트는 자신이 협상에 참여한 고용 계약의 결과물로서 선수가 지급받는 연간 총 기본 수입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 부 록 4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

-고용계약의 발효시 일시불 지급 : _____

-매 계약년도 말에 분할 지급 : _____(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십시오)

b) 고객이 클럽인 경우

에이전트는 (정확한 금액과 통화 기재)의 금액을 수수료로서 일시불로 받는다.

3) 전속성

당사자들은 이적 중개권(placement right)을

독점적으로 _____

비독점적으로 _____

선수 에이전트에게 이양한다.(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십시오)

4) 기타 합의

FIFA의 선수 에이전트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추가 합의사항들은 이 계약서에 동봉하여 해당 국가협회에 보증을 맡긴다.

5) 의무 조항

당사자들은 국제법이나 조약뿐만 아니라 관련국에서 적용되는 직업과 관련된 법규와 다른 의무조항을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

6) 최종 사항

이 계약서는 4통으로 작성하며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1. 에이전트가 등록된 국가협회: _____(정확한 명칭)

2. 고객이 등록된 국가협회: _____(정확한 명칭)

3. 선수 에이전트

4. 고객

장소와 날짜 _____

선수 에이전트: 고객

계약서의 수령과 확인:

장소와 날짜: _____

선수 에이전트 국가협회

고객의 국가 협회

(도장 또는 사인)

(도장 또는 사인)

◆ 부 록 5

FIFA “경기 에이전트 규정”(Match Agent Regulations)

FIFA 집행위원회는 2002년 12월 17일 회의에서 FIFA 정관의 적용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규정을 통과하였다.

단순화를 위하여 이 규정에서는 남성형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된다.

서문

이 규정은 다른 연맹에 속하는 팀 사이의 경기를 주선하는 경기 에이전트의 업무를 규율한다.

독자의 경기에이전트 라이선스(자격증)를 발급하는 각 연맹(이 규정의 제3조 제2항 참조)이 독자의 규정을 만드는 경우에 이 규정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이 규정의 제4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그리고 제24조는 연맹수준으로 강제된다.

1. 원칙

제 1 조 경기를 주선하기 위한 에이전트 고용은 허가 된다.(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FIFA Statutes 제16조 제1항 참조)

제 2 조 서로 다른 연맹에 속하는 팀 사이의 경기를 주선하는 에이전트는 FIFA 라이선스의 보유자이어야 한다(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FIFA Statutes 제16조 제3항 참조).

제 3 조

제1항 동일한 연맹에 속하는 팀 사이의 경기를 주선하는 에이전트는 당해 연맹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FIFA Statutes 제16조 제2항 참조).

제2항 연맹은 독자의 라이선스를 발급할 권한을 갖는다.

제3항 연맹이 위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 그 연맹 내에 주소지나 사무실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기 에이전트는 당해 연맹으로부터 상응하는 라이선스를 이미 취득하고 있지 않은 한 FIFA 경기 에이전트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제4항 연맹이 위의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경기 에이전트는 FIFA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

II. FIFA 라이선스

제 4 조

제1항 경기를 주선하기 위해 FIFA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FIFA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자연인만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 또는 클럽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5 조

제1항 경기 에이전트가 될 예정자의 주소지 또는 사무실소재지가 있는 국가협회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아래 내용의 서면확인을 동봉하여야 한다.

- a)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후보자는 훌륭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
- b) 지원자의 에이전트로서의 활동에 대하여 반대가 없다.

제2항 신청에 대한 심사는 당해 국가협회의가 책임을 진다.

제 6 조

경기에이전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지원서에 그가 이 에이전트 규정 및 FIFA 정관 적용 규정 제16조를 신뢰하고 준수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 7 조

위에서 언급한 조건이 충족되면, FIFA 사무국은 FIFA 선수 지위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1항 FIFA 선수 지위 위원회에 의하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후보자는 그가 속한 국가의 보험회사에 전문(직업) 책임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주소지나 사무실소재지를 유럽연합/유럽경제공동체(EU/EEA) 내에 두고 있다면, 그는 EU/EEA 국가의 보험회사와 필요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FIFA 사무국에 그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보험의 목적은 경기 에이전트의, FIFA의 관점에서 이 에이전트규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통상의 업무로부터 야기된 경기에이전트의 계약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다(이 규정 제20조 참조). 그러므로 보험증서는 경기에이전트의 업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3항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최소금액이 200,000 스위스프랑(CHF) 혹은 다른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등가치 보다 적어서는 아니

◆ 부 록 5 FIFA “경기 에이전트 규정”

된다. 각 경기 에이전트는 그의 총매출에 따라 보다 높은 액수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제4항 전문책임보험은 보험의 존속기간동안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보험의 종료 후에 제기된 청구도 담보해야 한다.

제5항 경기에이전트는 보험이 만기에 이르면 즉시 이를 갱신을 하여야 하고 요구가 없더라도 FIFA 사무국에 관련 서류들을 보내야 한다.

제 9 조

제1항 지원자가 자신의 국가에서 위 제8조에 따른 전문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100,000 CHF을 은행에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보증금은 스위스 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취소할 수 없다.

제2항 FIFA 만이 이 은행보증금에 접근할 수 있고, 이것은 전문책임보험(이 에이전트 규정 제8조 제2항)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보증금액은 어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처리되어야 할 최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3항 보증금액이 경기에이전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여 은행으로부터 지급됨으로써 감소된 경우, 그 보증금액이 다시 처음의 금액(100,000 CHF)이 될 때까지 에이전트 라이선스는 정지된다.

제10조

FIFA 사무국은 전문책임보험증서의 수령 혹은 예외적인 경우에, 은행 보증금이 있는 한 라이선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래 제3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이 라이선스에 고유한 것이다.

제12조

경기에이전트 라이선스는 양도할 수 없다. 유통,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상업 재산이 아니다.

III. FIFA 라이선스 본래의 권리와 의무

제13조

경기를 주선하는 FIFA 라이선스는 그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여러 연맹에 속하는 클럽팀이나 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 또는 선수권 경기를 주선하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제14조

여러 국가협회에 속하는 클럽들 사이의 한 경기 또는 복수의 경기를 주선하고자 하는 클럽은 당해 국가협회로부터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15조

클럽들 그리고/또는 국가협회 사이에 직접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권한 있는 에이전트에 의하여 주선된 경기만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제16조

경기에이전트가 대리한다고 하는 개인이나 협회 또는 클럽은 그 위임된 권한 및 자신들을 대신하여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으면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17조

경기에이전트에 의하여 또는 경기에이전트를 위하여 맡겨진 임무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계약의 형식으로 두 통이 작성되어야 한다.

제18조

제17조에 따라 작성된 계약이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어야 한다.

- a) 계약당사자의 기초생활비와 여행비, 숙박비용
- b) 계약당사자들에게 발생한 순수배상금(모든 비용, 수수료, 세금의 공제 후)
- c) 경기가 불가항력으로 취소된 경우 적용하여야 할 합의
- d) 계약에 따라 경기에 참가하여야 할 선수가 팀에 출정하지 않는 경우(불가항력의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할 합의
- e) 관련 당사자들이 이 에이전트 규정의 조항에 대하여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 사실

제2항 전항 규정의 하나 또는 복수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다.

제19조

제1항 FIFA 경기 에이전트가 받게 되는 수수료는 그가 성사시킨 클럽 또는 국가 기구를 위해 협상한 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보다 많은 수수료를 내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전체계약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FIFA 경기 에이전트와 그의 고객 사이에서 수수료에 관한 어떤 약정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기 에이전트는 그가 대리한 클럽 또는 국가 협회를 위해서 협상한 금액의 10%를 보상으로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20조

제1항 FIFA 정관 적용규정 제16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FIFA는 에이전트와 계약한 의무가 지켜

지도록 경기 에이전트와 팀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항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경기 에이전트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명을 하게 되면, FIFA 선수지위위원회는 전문책임보험으로, 예외적인 경우, 에이전트에 의해 은행에 예치된 보증금으로, 당해 당사자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결정한다 (이 규정의 제8조, 제9조 참조).

제3항 경기 에이전트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FIFA 선수지위위원회는 그의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다.

제4항 자신의 업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 규정의 위반하는 협회나 클럽은 정관과 규정에 제재를 받는다.

제21조

이 에이전트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FIFA의 해당 감독·결정기구
는 FIFA 선수지위위원회이다.

IV. 분쟁

제22조

제1항 경기 에이전트와 국가 협회, 클럽 그리고/또한 다른 경기 에이전트와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FIFA 선수지위위원회가 분쟁을 조사해서 판정한 것에 따라야 한다.

제2항 (이 규정 제3조의) 경기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한 연맹은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연맹에 등록되었을 때에는 경기 에이전트와 국가협회, 클럽 그리고/또는 다른 경기 에이전트 사이에서의 분쟁을 다룰 책임이 있게 된다. 그러한 경우 해당 연맹은 각 사건을 조사하여 판정을 하여야 한다.

제3항 FIFA 선수지위위원회는 분쟁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후로 2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경기 에이전트가 자신의 활동을 끝내기

◆ 부 록 5 FIFA “경기 에이전트 규정”

로 한 후에 6개월이 지나게 되었다면 이 규정이 의미하는 어떤 분쟁도 다루지 않는다.

V. 활동의 종료

제23조

제1항 활동이 끝난 FIFA 에이전트는 라이선스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2항 에이전트 활동의 종료(라이선스 반납 또는 취소)시까지 책임보험은 해지되지 않는다.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시기에 행해진 사건에서 야기된 것이나 활동종료후에 청구된 배상에 대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규정 제8조 제4항 참조).

VI. 경과 규정

제24조

1995년 5월 2일자 경기 에이전트 규정 제8조에 의하여 스위스 은행에 은행보증금을 예치시킨 경기에이전트는 전문책임보험증서를 제시함으로써 은행보증금의 면제 신청을 FIFA에 할 수 있다. 이 보험증서는 당해 경기 에이전트의 국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보험회사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EU / EEA에 주소지 또는 사무실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기에이전트인 경우, 그는 EU/EEA 국가의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

이 에이전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FIFA에 제출된 경기에이전트와 국가협회, 클럽 그리고/또는 다른 경기 에이전트 사이에서의

분쟁은 1995년 5월 2일자 FIFA의 경기 에이전트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Ⅶ. 부칙 규정

제26조

이 에이전트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FIFA 선수 지위 위원회가 판단한다.

제27조

이 규정은 최초로 1991년 6월 13일에 채택되었고, 그 후, 1995년 5월 31일, 2002년 12월 17일에 수정되었다. 수정판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마드리드/쥐리히, 2002년 12월 17일

FIFA 집행위원회에 대신하여

회장 Joseph.S.Blatter

사무국장 Urs Linsi

참고문헌

- 김동훈,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의 법적 고찰, 스포츠와 법 제2권(2001)
- 김세웅, 국내프로야구의 에이전트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2006)
- 김용섭,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과제, 스포츠와 법 제6권(2005)
- 김인재, 이재현, 프로야구선수들의 선수 에이전트에 관한 인식조사연구, 한국스포츠산업 경영학회지(2004)
- 김 종, 최재원, 스포츠 에이전트와 인도스먼트 유형 및 현황 연구, 한국 스포츠사회학회지(1998)
- 노영태, 박영주, 스포츠 에이전트 인식과 역할 기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2002)
- 이정학, 전미양, 이재돈,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스포츠산업 경영학회지(2004)
- 장재욱, 스포츠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5)
- 한필수, 미국 스포츠 에이전트의 산업현황, 코칭능력개발지(2006)
- _____, 이석인, 스포츠 에이전트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고찰(2005)
- _____, 스포츠 에이전트의 현황과 전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_____(역), Robert H. RUXIN, 선수 에이전트 가이드, 명지출판사(2005)
- 스포츠산업진흥법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김문희, (2005.6)
- 스포츠산업비전2010, 문화관광부(2005.7)

참 고 문 헌

Timothy Davis, REGULATING THE ATHLETE-AGENT INDUSTRY: INTENDED AND UNINTENDED CONSEQUENCES, 42 Willamette L. Rev. 781(2006)

Melissa Steedle Bogad, MAYBE JERRY MAGUIRE SHOULD HAVE STUCK WITH LAW SCHOOL: HOW THE SPORTS AGENT RESPONSIBILITY AND TRUST ACT IMPLEMENTS LAWYER-LIKE RULES FOR SPORTS AGENTS, 27 Cardozo L. Rev. 1889 (February, 2006)

Richard T. Karcher, THE NCAA'S REGULATIONS RELATED TO THE USE OF AGENTS IN THE SPORT OF BASEBALL: ARE THE RULES DETRIMENTAL TO THE BEST INTEREST OF THE AMATEUR ATHLETE ?, 7 Vand. J. Ent. L. & Prac. 215(Spring, 2005)

Robert P. Baker,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 DEPRIVING STUDENT ATHLETES OF EFFECTIVE LEGAL REPRESENTATION, 12 UCLA Ent. L. Rev. 267(Spring 2005)

Eric Willenbacher, REGULATING SPORTS AGENTS: WHY CURRENT FEDERAL AND STATE EFFORTS DO NOT DETER THE UNSCRUPULOUS ATHLETE-AGENT AND HOW A NATIONAL LICENSING SYSTEM MAY CURE THE PROBLEM, 78 St. John's L. Rev. 1225(Fall 2004)

R. Michael Rogers, THE UNIFORM ATHLETE AGENT ACT [FN1] FAILS TO FULLY PROTECT THE COLLEGE ATHLETE WHO EXHAUSTS

HIS ELIGIBILITY BEFORE TURNING PROFESSIONAL, 2 Va. Sports & Ent. L.J. 63(Winter 2002)

Diane Sudia, Rob Remis, ATHLETE AGENT LEGISLATION IN THE NEW MILLENNIUM: STATE STATUTES AND THE UNIFORM ATHLETE AGENTS ACT, 11 Seton Hall J. Sport L. 263(2001)

Robert N. Davis, EXPLORING THE CONTOURS OF AGENT REGULATION: THE UNIFORM ATHLETE AGENTS ACT(Symposium : Regulating Sports Agents in the 21st Century), 8 Vill. Sports & Ent. L.J. 1(2001)

Bryan Couch, HOW AGENT COMPETITION AND CORRUPTION AFFECTS SPORTS AND THE ATHLETE-AGENT RELATIONSHIP AND WHAT CAN BE DONE TO CONTROL IT, 10 Seton Hall J. Sport L. 111(2000)

Gardiner/James/O'Leary/Welch, SPORTS LAW, Cavendish Publishing(2006)

Grayson/Hill, SPORT AND THE LAW(1999)

Fritzweiler/Pfister/Summerer, PRAXISHANDBUCH SPORTRECHT, C.H.Beck, (1998)

Martin Schimke, SPORTRECHR, Fisher · Heymanns(1996)

Ulrich Haas, SPORT, Deutscher Taschenbuch Verlag(2004)